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의견서

발 행 일 2019. 11. 4
발 행 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02-711-7292, spark946@hanmail.net
담 당 오미정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 (02-711-7293)

정오표 _ 2020.1.17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8쪽	중간 장성정원 조정계획 중 첫 번째 항목15명 감축은 <u>78명</u> 장성 직위를 감축해...	76명
18쪽	하단 표 구분	합계	합계/평균
22쪽	삭감 요구액 중 마지막 줄	<u>709</u> 억 원 등	708억 원
50쪽	세 번째 항목 첫 번째 줄	44만 5000m ² (약 <u>85</u> 만 평)	16만 평
80쪽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줄	핵잠수함(SSN)으로 <u>도입해야</u> 주장이 제기..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94쪽	두 번째 항목 첫 번째 줄	정의용 청와대 <u>비서실장</u>	안보실장
	5번째 항목 첫 줄	함대지, <u>잠대지</u> 공격 능력	함대지 공격 능력 ('잠대지' 삭제)
	밑에서 두 번째 줄	현재 남북한 해군력은	현재 남한 해군력은 ('북' 삭제)
96쪽	밑에서 두 번째 줄	탐지해 일본, 북과 실시간	미국

2020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국방부 분야 4

[국방부]

(1) 장교 인건비 (1101-151) 6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22

(155) 군수분야 (5131-304) 29

(154) 군사시설개선 (5131-302) 3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46

(11) 육군 부대개편 4차 (4131-476) 55

2020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방위사업청 분야 60

[방위사업청]

(181) 선행연구/분석평가 (2636-300) 중 대형수송함-Ⅱ(LPX-Ⅱ) 63

대형수송함-Ⅱ(LPX-Ⅱ) 70

(107)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77

(111) 보라매(R&D) (2431-302) 85

(93) 광개토-Ⅲ Batch-Ⅱ (2332-304) 92

확산탄 99

(128) F-35A (2433-300) 105

(128) F-X 2차 (2432-301)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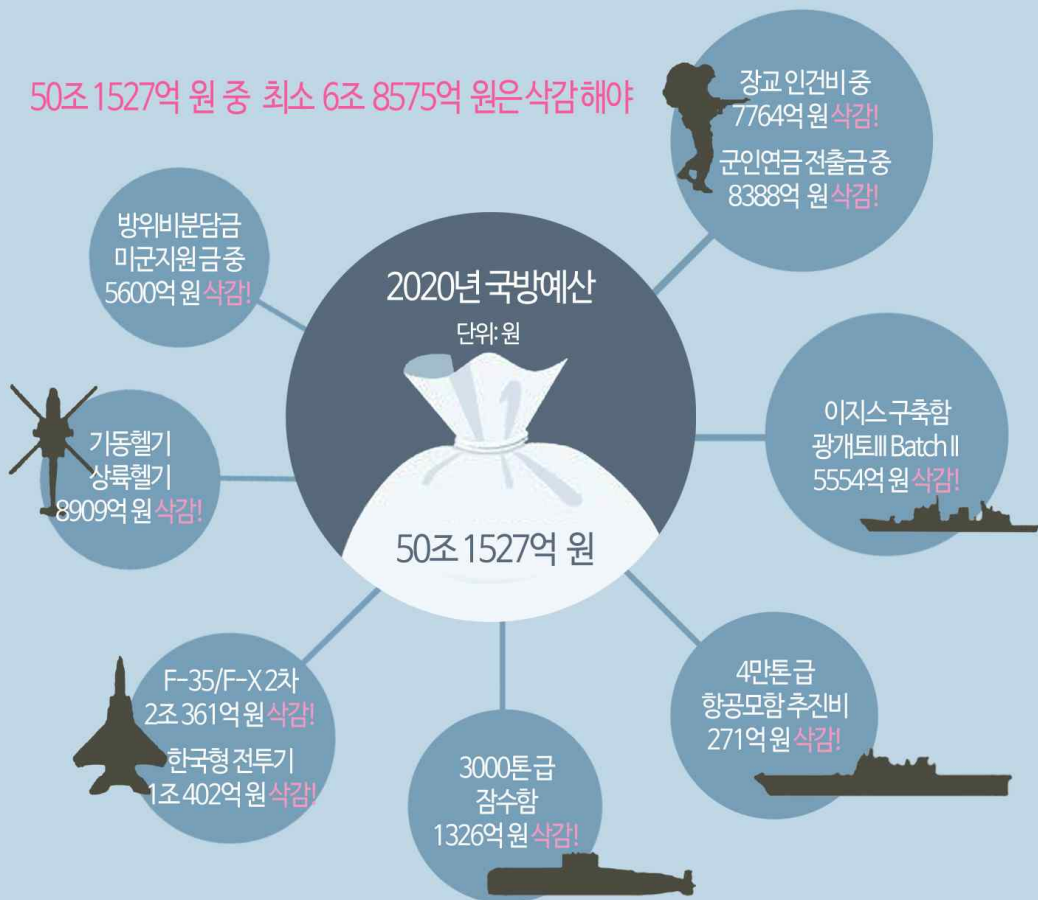
(115) 상륙기동헬기 (2432-307) 122

(116)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2432-308) 129

2020년 국방예산에 대한 평통사의견서

평화, 국익, 주권을 지키고 국방개혁 위해 2020년 국방예산 대폭 삭감해야

장성과 고급장교를 과감히 감축하고 특혜도 폐지해야. 방위비 분담금 등 불법부당한 미군 지원 중단해야
 대북 선제공격과 공세전략 위한 F-35 전투기, 기동헬기, 신속대응사단 예산 삭감해야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될 우려 큰 항공모함,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예산 삭감해야



[2020 국방예산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

- 국방부 분야 -

1.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불법부당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를 전액 삭감해 국익과 주권,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국방부도 “현시점에서 2020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배정액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인정하고 있듯이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미집행금액이 2018년 말 현재 2조 원입니다. 이는 내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1조 389억 원의 1.9배에 해당하는 돈으로 내년도 군수지원비와 군사건설비가 전액 삭감되어도 그 이상의 규모로 내년도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설(특수정보 시설) 건설을 비한국업체(미국업체)가 시공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는데 이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이고 군사건설 현물제공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 내년도 군수지원비는 국회의 부대의견과 달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나 한미소파를 위반해 해외주둔 미군 용도로 사용되고 또 역외(주일미군) 장비 정비에도 사용될 것이 확실하므로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 샬스케이(SALS-K, 한미단일탄약군수체계), 매그넘(한국 공군 시설 내 미 공군탄약 저장), 전쟁예비물자(WRM) 정비, 미군장비정비 등은 북한을 공격·점령하는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에 입각한 전시 군수지원체계들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므로 삭감되어야 합니다.
- 내년도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도,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원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우리 국민과 국회의 결의를 보여준다면 불법에 개의치 않은 채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과 한미연합연습 비용,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해 6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과 횡포는 그 기세가 크게 꺾일 것입니다.

2. 장성과 고급장교의 대폭 축소로 ‘장교 인건비’를 줄이고,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로 국방예산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 내년도 장교인건비를 보면 장성 감축이 부대 통폐합에 따른 자연감소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방만한 국방부 직할부대 축소·폐지, 국방부의 직제를 위반한 한시조직 해소,

방사청의 문민화 등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부대의 부지휘관을 장성으로 보임하고 새로운 부대 창설이나 증편 등의 방식으로 장성 직위를 늘리는 반개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초 2020년도 감축 목표 15명에 42명(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 16개, 국방부 직할부대 10개, 육군 인사사령부 4개, 한시조직 5개, 방위사업청 7개 등)을 더해 추가로 장성 정원 57명을 과감히 줄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방개혁 2.0의 76명 장성 감축 계획은 육군의 반발에 밀려 애초 구상했던 것보다 장성 감축 규모가 축소되는 등 개혁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장성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 내년도 장교인건비를 보면 장교 정원은 줄지만 고급장교가 느는 등 간부인력구조가 특권화 되고 있습니다. 고급장교는 2019년 현재 정원이 9,913명인데 이를 절반 이하(4,000명 수준)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 병력 50만 명 유지 계획은 작지만 강한 군대와 전혀 어울리지 않으며 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북한 점령을 상정한 병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도 역행하는 하책입니다. 병력을 30만 명 이하로 과감히 축소해야 하며 이에 맞게 장교도 감축해야 합니다.
- 일반 공무원에 비해 2직급이나 높은 과도한 군인 대우는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경우 국방예산을 줄일 수 있고 군인의 잘못된 특권의식도 없앨 수 있습니다.
- 2020년 장성 15명 감축 목표에 추가로 42명을 감축하고 대령·중령을 위주로 영관장교 6,390명을 추가 감축하고, 각종 특혜를 폐기하면 장교 인건비 약 7764억 원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3. 군인연금의 특혜를 축소하고 ‘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 비해 훨씬 국가재정에 대한 심한 압박을 줍니다. 연금지급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비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7.1%이지만 군인연금은 그 6.4배인 45.5%에 이릅니다.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이 다른 특수직역 연금보다 상대적으로 심한 것은 소급기여금 면제,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혜 때문입니다. 이들 특혜를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수급 개시 연령을 바꿔야 공정의 가치가 실현됩니다.
- 2020년도 보전금예산 1조 5779억 원의 절반인 7890억 원과 전투가산 부담금 498억 원을 합한 8388억 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1) 장교 인건비 (1101-151)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4,327,136	4,435,633	108,497	776,40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사업 목적> 장교 70,771명 및 무관후보생 4,510명의 봉급 및 제 수당,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 ② <2020년 장교인건비 증액 사유> “국방개혁 2.0”의 간부 계급구조 개편을 위한 장교 증감소요 반영(82억 원 감액) 및 공통처우개선 소요(1167억 원 증액)
- ③ <내년도 증원 및 감원되는 계급별 장교 상황> 장성 -15, 대령 -15, 중령 +47, 소령 +58, 대위 +147, 중소위 -491, 준위 -24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내년도 장성 감축 15명은 방만한 군 조직 간소화와 국방개혁 추동엔 턱없이 부족

• 내년도 장성 감축의 문제점

- 내년 장성 정원은 39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5명이 준다. 그러나 이 정도의 감축은 국방개혁 요구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대 통폐합이나 국방 문민화, 병력감축 등

으로 내년도에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장성 정원에 비춰서도 매우 소극적인 것이다.

- 한편으로 장성 직위를 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거나 증편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장성 직위를 늘리는 오래된 관행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는 점도 국방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표1> 장성 정원 변화 현황 (단위 : 명)

회계연도	1953	1957	1961	1975	2013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정원	109	333	239	360	441	437	436	427	405	390	360

- 팽대한 장성 정원의 과감한 감축, 특히 육군 장성의 감축은 국방개혁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장성 감축 없이는 비대한 상부구조의 간소화도, 병력의 대폭 감축도, 문민통제도, 3군 균형발전도, 국방예산의 효율화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성들은 군 기득권의 핵심세력을 이루기 때문에 국방개혁의 가장 큰 반발세력이다. 이 점에서도 장성 정원의 과감한 감축은 국방개혁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 기득권 세력 반발에 굴복한 국방개혁 2.0의 장성 정원 조정계획

- 내년도 장성 정원 15명 감축은 76명 장성 직위를 감축해 2022년에 360명의 장성 정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에 맞춰서 산정된 것이다. 그러나 장성 정원을 360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 자체가 국방개혁 요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 장성 숫자를 2017년 436명에서 76명을 줄인다는 국방개혁 2.0의 계획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60~100명 정도의 장성 감축안이 발표되거나 검토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방개혁 2.0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낮 뜨겁다.
- 국방개혁 2.0의 장성 76명 감축은 현재 진행 중인 부대 통폐합에 따른 자연감소나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스스로 밝히거나 검토한 장성 감축안, 국방문민화를 위한 장성 감축 요구 등에 훨씬 못 미친다.
- 2019년 초 1·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서 12명의 장성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12명의 장성 감축은 1·3군 사령부 통합으로 21~25명의 장성 감축이

가능하다는 언론보도에 비춰보면 그 절반밖에 안 된다. 언론은 “육군 1·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로 개편되며 여기에서만 육군 장성 21명이 준다”(연합뉴스, 2018. 7. 29)고 보도한 바 있다. 또 김대중 정부에서 1·3군 사령부 통합 논의 당시 대장 1명, 중장 2명, 소장 3명, 준장 19명 등 장성 직위 25개를 감축할 수 있다(한겨레, 1998. 1. 17)는 보도도 있었다.

- 육군은 '부군단장'과 상비사단의 '부사단장'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는 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76명의 장성 감축 안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덩달아 해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과 공군의 항공정보단장도 장성급으로 상향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기도 아닌 평시에 부군단장과 부사단장을 두고 거기에 장성을 보임하는 것은 국방개혁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잠수함 부사령관과 항공정보단장을 포함해 장성급으로 채워지는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자리가 모두 16개라고 하는데 이 역시 감축되어야 할 대상이다.
- 2025년까지 2개 군단이 해체되고 6개 사단이 줄 예정인데 이것만으로 최소 12명의 장성이 준다. 국방개혁 2.0은 사단을 33개로 유지한다는 계획인데 애초 노무현 정부 때 수립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20에서는 24개로까지 줄이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서는 원래 계획(24개 사단 유지)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가로 9개의 장성 직위를 줄일 수 있다.
- 국방부는 직할부대와 비전투부대의 지휘관(소장 또는 준장) 계급을 한 단계씩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모두 26개로 거기에 소속된 장성만 110명(국방부 본부 제외)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장성 수(2017년 기준 436명)의 1/4로 국직부대가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비대한 행정조직의 간소화 차원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들을 10개 이내로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직 소속 장성을 최소한 ⅓(73명)는 줄여야 한다. 국방부가 검토한 국직부대 지휘관의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안만 적용해도 단순 계산으로 국직부대의 준장직위 43명(합참과 한미연합사 포함)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국직부대 장성 직위를 73명 줄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 국방부 본부의 8명, 방사청의 장성 7명도 문민화 차원에서 민간인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 국방부의 한시조직에 소속된 장성 5명(대북 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 국회협력단 TF, 병영문화혁신 TF, 방위사업개선 TF)도 불법적인 정원 외 직위이므로 없애야 한다. 육군은 인사사령부 해체를 검토 중인데 이 경우 4명(소장 1명, 준장 3명)을 줄일 수 있다.

- 국방부는 2012년 7월 30일 각 군에 군상부구조의 슬림화를 뼈대로 하는 군 조직 개편 계획을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때 유력하게 검토된 안이 이른바 대과로의 통폐합(중간 결재라인 폐지)으로 육군본부의 경우 부장(소장)-차장(준장)-과장(대령)으로 되어 있는 결재라인 중 차장만 없애도 20명의 장성을 줄일 수 있다(내일신문, 2012. 7. 30)고 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특수전사령부는 6개 여단의 장이 모두 장성급인데 부풀려진 계급의 적정화를 위해 대령급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외에도 육군의 경우 교육사령부나 미사일사령부 등 해체하거나 간소화해야 할 부대들이 수없이 많다. 하지만 교육사령부나 미사일사령부 등을 제외하더라도 이상 언급된 장성 감축 가능 숫자만 따져도 180명의 장성을 줄일 수 있다. 76명 감축은 지극히 소극적인 계획인 것이다.
- 국방부가 2018년 초 국방개혁안을 짤 때만 해도 전체 장성 감축 규모는 100명이 넘었다고 한다(동아일보, 2018. 3. 13). 그러나 육군의 반발로 그 규모가 줄어들었고 그나마 '부군단장', 상비사단의 '부사단장'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는 안을 내고서야 육군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 2018. 7. 29). 국방개혁의 핵심은 육군의 개혁인데 육군(장성들)의 반발을 국방부가 수용하여 육군 장성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였다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조정계획이 애초 개혁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조정계획이 개혁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3군 균형발전을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군의 절대적 우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서도 보인다. 2022년 장성 정원의 감축이 완료된 뒤 각 군의 장성은 육군 247명, 해군 59명, 공군 54명이 된다. 비율로 따지면 육군 4.6 대 해군 1.1 대 공군 1.0으로 여전히 육군 장성 수가 압도적이다. 이처럼 장성 수에서 육군이 압도적이게 되면 상부지휘조직이나 행정조직 등을 육군이 장악하게 되어 사실상 3군 균형발전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 국방부가 제시한 2022년 장성 정원 360명 유지계획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5년 장성 정원 360명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송영무 국방장관, 2018. 8. 24, 국방위 답변) 국방부가 1975년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1971~1977년 베트남전 철수 이후 한국군 현대화 추진 시기에 제대별 규모와 지휘관 계급 등 현재의 편성 기준이 정립되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975년은 10월 유신 이후 군부독재 통치가 절정에 달했을 때로 군부통치의 기반 강화 차원에서 장성 정원이 크게 부풀어 있었다. 장성 정원은 1961년 239명(국방부 발표)에서 1964년 251명, 1969년 329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박정희가 집권한 뒤로 장성 정원이 1975년까지 무려 120명 이상이 늘었다. 이런 점에서 문민통제를 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이 군부독재 시절인 1975년의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국방부가 ‘국방인력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주변국과의 관계(한중 및 한러 관계), 장비수준, 문민통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정도 등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1975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 또한 시대착오적이다. 설사 1975년의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병력이 50만 명 일 때의 장성 정원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1975년 당시 병력이 6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장성 정원을 360명이 아닌 300명으로 했어야 그나마 일관성이 있었을 것이다. 국방부가 1975년 장성 정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360명이란 숫자를 미리 정해 놓고 여기에 꿰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바람직한 장성 정원 규모는 200명 수준

- 1988년 10월 6일 국방부는 ‘군 계급구조 개편’ 방침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 때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장교 대비 장성 비율이 0.62%(장교 69,733명 중 장성 정원은 433명)로 미군 0.34%(장교 309,000명 정원에 장성 1,057명)보다 높다고 하면서 군 계급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밝혔다(동아일보, 1988. 10. 7). 2018년 11월 기준으로는 미국의 장교(230,708명) 대비 장성(920명) 비율은 0.39%다(CRS 보고서, 2019. 2. 1). 미국은 의회가 장성 정원을 장교 총 정원의 일정한 비율 이내로 제한한다. 만약 미국의 장교 대비 장성 정원 비율 0.34~0.39%를 한국에 적용하면 한국군은 2024년에 장교를 67,112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므로 그 때 적정 장성 수는 228~262명이 된다. 그러나 2024년 장교 정원 67,112명은 병력 50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많은 병력으로 30만 명 이하로 줄어야 하며 그 경우 장교도 40,000~45,000명 수준이 적당하다. 만약 장교 수를 45,000명으로 상정하면 그 때 적정 장성 수는 180명이 된다. 김중로 의원도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몇 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군 수를 지금(2017년 436명) 반절로 줄여야 됩니다”(2017. 8. 21 국방위원회)라고 국회에서 발언한 바가 있다.

- 과거 한국군의 장성 숫자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1960년 4·19혁명 뒤 집권한 장면정부는 당시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60만이 훨씬 넘는 병력을 줄였다. 그에 따라 전체 병력은 72만 명(1957년)에서 60만 명(1960년)으로 감축되었고 장성 정원도 1957년 333명에서 1961년 239명(1960년 장성 정원 통계는 국방부가 발표하지 않음)으로 줄었다. 1961년 60만 병력 대비 장성 239명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병력에 대한 장성 정원

은 199명이 된다. 나아가 30만 병력으로 감축 시 장성 숫자는 더 줄어들어야 한다. 한 국군의 장성 수는 200명 수준이면 적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인데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국방개혁에 역행해 장성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한다.**

- 국방부와 육군은 스스로 국민 앞에 밝혔던 장성 감축 방안을 뒤집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성 직위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장성 감축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육군은 애초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를 없애겠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고 군단과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을 100% 장군으로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무려 14개의 장성 직위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전시도 아닌 평시에 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를 운영한다는 것은 전투력과 관련이 없고 인력 낭비이다. 부지휘관을 장성 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국방개혁에 역행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 해군은 정보단장과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을, 공군은 항공정보단장을 장성 직위로 상향 편성하기로 하였다. 이는 육군이 부지휘관을 100% 장성으로 편성하기로 한데 따라 해군과 공군에 대해서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의 조치로 보인다. 각 군이 기득권 지키기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육군 1개 사단을 신규 창설하고 또 2보병사단을 해체하면서 이들을 모태로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좁은 한반도 전구에서 신속대응사단은 불필요하다. 해군은 6항공전단을 항공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육해공이 여전히 경쟁적으로 몸집불리기를 하고 있다.

- 국방부는 부대 운영의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비전투분야 중간지휘구조를 감축하여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장(소장)-차장(준장)-과장(대령)으로 되어 있는 각 군 본부의 결재라인 중 차장을 없애 장성을 줄이고 방만한 조직운영도 간소화해야 한다. 육군 인사사령부도 방만한 육군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해체되어야 한다. 2006년 창설된 육군 인사사령부는 “육군 인사참모부의 권한 축소 등 창설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육군 조직만 방만해졌다는 비판”(동아일보, 2018. 3. 13)을 받고 있다.

- 국방부는 26개의 국직부대 중 8개만 남기고 나머지 8개 부대는 공단으로 전환하고 8개

부대는 국방부조직으로 통합하고 1개 기관(군사법원)은 폐지하고 1개 기관(합동군사대학)은 각 군으로 나눠서 내려 보낸다고 한다. 국직부대 중 해체되는 부대는 군사법원 한 곳에 불과하여 기존의 방만한 국직부대 운영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장성 직위가 6개인 합동군사대학은 국방대학교가 있는 만큼 폐지되어야 함에도 이를 쪼개서 각 군에 소속시키기로 한 것은 국방개혁에 역행한다. 국방조사본부의 직급을 대령으로 낮추려 했다가 소장직위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기득권 지키기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 검찰단장의 직위를 대령에서 준장으로 상향기로 하였는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줄어드는 장성 직위를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국방부는 국방부근무지원단과 국군체육부대, 군비통제 검증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장성 직위를 민간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조직의 수장을 육군지휘관만 맡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국직부대 10곳 중 국방정보본부, 국방대학교,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재정관리단, 국방시설본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등 9곳에 대해서는 직위의 한 단계 하향조정이나 장성 직위의 민간인으로 교체, 폐지 등의 개혁방안도 없다. 이는 육군의 기득권 지키기가 작용한 때문이다.

-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장성 직위 7개(현재 3명 운영 중)도 없어야 한다. 2017년 3월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를 대상으로 계엄령 선포가 필요하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 문건을 주도한 조직이 기무사이다. 최근에는 그 계엄령문서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까지 폭로되어 군의 쿠데타 등 내란음모를 꾀한 기무사의 민낯이 드러났다. 기무사가 그 이름을 바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할 조직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모두 7개의 장성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무사의 9개 장성 직위가 2명만 감축되었을 뿐이다.
- 국방부의 불법적인 한시기구의 운영이 관행화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남아도는 장성 정원의 자리보전을 위한데서 비롯된다. 감사원의 ‘국방문민화추진실태’(2018. 12. 26) 감사 결과보고서는 국방부(본부)가 직제 상 해당 업무 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한시기구(6개, 장성 등 군인 28명) 및 한시편제(준장 2명, 대령 1명, 중령 21명, 소령 15명 등 군인 39명)를 설치하고 각 군의 군인을 차출하여 국방부 내에서 장기간 운영하거나 상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직제에 없는 대북정책차장, 군구조개혁차장을 설치하여 장성급 군인을 보임하는 위법행위를 하였으며 병영문화혁신TF장, 제10차방위비분담금협상TF장 등 한시기구의 장(장성)에게 고위공무원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불법을 범했다고 지적하였다. 2019년 9월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직제에 없는 대북정책차장과 군구조개혁차

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직제에 위배되게 국회협력단TF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한시조직 운영은 넘쳐나는 장성을 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크다. 한시조직인 국방부의 국방개혁실(장성 직위 2명) 또 육군본부의 개혁실(장성 직위 2명)도 불필요한 조직으로 장성 자리 마련 성격이 크다. 국방부의 방만한 조직운영의 한 예인 불법적인 한시조직 운영을 없애기 위해서도 장성 직위의 대폭적인 축소는 불가피하다.

- 애초 방사청의 100% 문민화 원칙에 따라 장성 정원 76명 감축계획에 방사청의 현역 장성 7명도 포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019년 4월 19일 국방부 장·차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방사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정책 간담회에서 방사청 근무 현역 군인 비율을 현 30% 수준으로 동결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100% 문민화 방침이 철회된 것이다. 이런 국방부의 번복은 군 기득권세력의 반발이 매우 뿌리 깊다는 방증이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박 모씨가 무기도입사업을 총괄하는 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퇴임 1년 만에 미국 방산업체 보잉의 고문으로 취직했다’(SBS, 2018. 3. 9)는 사실에서 보듯 방사청 100% 문민화는 문민통제 원칙을 확고히 하고, 만연한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 장성 인력의 비대화를 용인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군인사법 제16조 2의 1항 단서 조항이다. 이 단서 조항은 정원 외로 장성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으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의 3항(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은 무려 7개 항목에 걸쳐서 정식 편제 정원 외로 운용할 수 있는 장성 직위를 열거하고 있다. 이런 부수병력을 광범하게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성 수가 불필요하게 팽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식 편제 정원 외에 장성 정원을 유지할 수 있게 허용한 이 군인사법 제16조 2의 단서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장성정원 조정계획’은 이 정원 외 장성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아무런 계획이나 언급이 없다.
- 참고로 문민통제가 일찍 확립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한다. 미국은 의회가 선발예비군 정원을 포함해 매년 현역 군인 총 정원을 인가하도록 규정한다. 또 부사관의 최상위 계급 정원의 상한을 정하고 장교 총 정원 크기에 따른 영관장교의 군별·계급별 상한, 장군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상한을 정해 군이 함부로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국방 조직과 정원을 대통령령과 국방부 훈령 수준으로 관리하는 데 비해 미국은 구속력이 강한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서울신문, 2015. 8. 16 참조).

② 고급장교의 상한규정을 명확히 하고, 영관급 장교 정원 감축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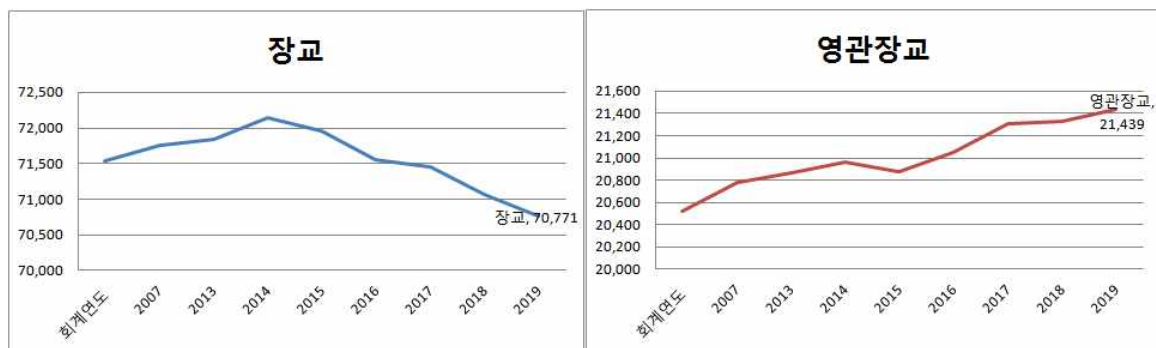
•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영관급 장교의 지속적 증원

-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는 하급장교와 달리 보수 수준이 아주 높고 수당, 군인연금 등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고급장교는 그 정원이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어 인건비 압박이 심하고 군조직의 비대화와 방만한 인력운영을 초래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과도한 진급경쟁으로 군의 건강성을 해치며 진급 적체로 군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고급장교의 과감한 감축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인 까닭이다.
- 내년 장교 정원은 미미하지만 2019년에 비해 293명 준다. 하지만 줄어드는 장교는 하급장교인 중소위(-149)가 대부분이다. 영관급 장교는 106명이 늘어난다. 영관급 장교 중에서 대령은 15명 줄어드는데 그치고 중령은 47명이 늘어나 고급장교가 줄기는커녕 영관급에서만 32명이 늘어난 것이다.

<표2> 장교 정원 및 영관급 장교 정원 추이 (단위 : 명)

회계연도	2007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장교	71,537	71,846	72,142	71,964	71,555	71,461	71,064	70,771
영관장교	20,517	20,865	20,964	20,875	21,050	21,310	21,333	21,439

<그림 1> 장교와 영관장교의 정원 변화 추이 비교



- 정원이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는 영관급 장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방만한 인력운

영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하나의 징표로써 국방개혁 2.0이 표방하는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과 선진적인 국방운영이 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영관급 장교 증원의 부당성

- 1·3군이 통합되어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었고 두 개 군단이 해체될 예정인데 영관급 장교가 계속 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 때 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1·3군의 통합이 검토되었는데 당시 이 안이 시행되면 장성 직위는 25개가 줄고 영관장교는 565명이 줄어든다(서울신문, 1998. 8. 26)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또 사단수도 39개에서 33개로 줄 예정이다. 1개 사단의 장교 수가 대략 561명 정도 되기 때문에 6개 사단 해체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자연감소도 1,000명 이상이 될 것이다.
- 2019년 2월 현재 국방부 본부에는 장성 8명, 대령 24명, 중령 188명, 소령 이하 86명이 있다. 그런데 감사원의 ‘국방문민화추진실태’ 감사보고서(2018. 12. 26)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직제를 위반해서 77명의 군인(장성 5명, 대령 5명, 중령 39명, 소령 28명)이 한시조직에 있거나 파견형태로 장기간 또는 상시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7명의 장성 및 영관급 장교는 정원 외의 불법적인 운용이므로 감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영관급 장교는 72명을 줄일 수 있다. 국방부 본부도 문민화 차원에서 현역 군인들(장성, 대령과 중령, 소령 등)을 전원 민간인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경우 영관급 장교를 최소 212명을 줄일 수 있다.
-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50여명의 대령보직이 30명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서도 20여명의 대령 감축 요인이 생긴다.
- 방위사업청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군인정원이 470명(장성 7명, 대령 53명 포함)이다. 이들 중 장성을 제외한 463명 대부분이 영관급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가 비록 유보하긴 하였으나 방사청의 100% 문민화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차원에서 460명 정도의 영관급 장교를 감축해야 한다.
- 이런 영관급 장교, 특히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 정원을 감축할 많은 요인이 있는데도 내년 영관급 장교가 106명 늘고 대령 감축이 15명에 그치는 것은 결국 국방부가 기득권에 사로잡혀 고급장교 감축 의지가 없으며 비대한 국방조직의 간소화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 국방부는 1993년 7월 6일 '군 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개선안은 대령 정원을 1,881명(당시 정원)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령과 중령과 소령의 비율을 1 : 3 : 5.5에서 1 : 2.5 : 4.5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다. 이 국방부의 군 정원 개선안(1993년)대로 하면 영관장교 정원은 15,049명(대령 1,881명, 중령 4,703명, 소령 8,465명)이 된다. 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2019년 9월 현재, 영관급의 정원은 대령 2,436명, 중령 7,057명, 소령 11,650명이다. 국방부의 정원 개선안에 비춰보면 대령은 555명, 중령은 2,354명, 소령은 3,185명 초과다. 2020년 예산편성 영관장교 정원 21,439명을 1993년 국방부의 개선안에 대비하면 6,390명을 초과한 것으로 6,390명 감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③ 작지만 강한 군대 건설에 역행하는 내년도 장교 정원 70,771명

• 내년도 장교정원 70,771명의 부당성

- 내년도 장교 정원은 70,771명으로 2019년에 비해 293명이 준다. 그러나 이런 장교 감원 규모는 부대의 통폐합이나 해체로 생기는 자연적인 장교 감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다. 보통 1개 사단(병력 11,500명 기준)의 장교는 561명 정도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개 사단이 해체되었으므로 이로부터 대략 1,122명의 장교 감축 소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면서 그 인원이 4,200명에서 2,900명으로 축소되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장교 수(감축된 1,300명의 절반을 장교로 추산)는 650명가량 줄어야 한다.
- 내년도의 미미한 장교감원은 1:3군 통합과 지작사 창설, 2개 군단 해체, 국방부 본부 및 방사청의 문민화, 국방부 국직부대 축소개편, 국방부 본부의 불법 운영되는 한시조직 해소 등에 따른 장교감축 소요 등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국방부가 비대한 군 조직을 줄이는데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 실제 운영인력을 훨씬 벗어난 과도한 정원 편성 문제

- 장교인건비는 연례적으로 대규모 미집행액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불용 235억 원과 이·전용 376억 원을 합쳐 611억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다. 2017년에도 불용액 487억

원과 이·전용 76억 원을 합쳐 563억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다. 2018년에는 이·전용 406억 원과 29억 원의 불용액을 합쳐 435억 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다.

- 이런 장교인건비의 연례적인 대규모 미집행금 발생은 그 주요 원인이 실제 운영인력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장교정원 편성에 있다. 국회 국방위 2017년 결산 예비심사검토 보고서(2018년 8월)도 “장교 인건비 예산 편성 시 기준이 되는 정원과 실제 운용된 인원이 불일치하고 있어 불용의 원인”(37쪽)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준위의 실제 운영률은 예산 편성 상 운영률보다 훨씬 낮다. 2017년 육군의 준위 정원은 3,770명이거나 실제 운영인원은 3,438명으로 무려 332명이나 정원이 높게 편성되어 있다. 실제 운영인력을 훨씬 뛰어넘는 과도한 장교정원 편성은 예산 낭비이고 방만한 인력운영으로 이어지므로 장교 정원을 실제 운영인력에 맞게 줄여야 한다.
- 부서관 증원 및 병 봉급 인상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내년도 장교 정원의 대폭 감축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부서관을 12만 7000명(2019년)에서 2024년 13만 5000명으로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병 봉급을 2024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병장 기준 월 67만 6100원)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부서관 증원을 위해서는 1조 원(2020년 5.7조 원, 2024년 6.7조 원)이, 병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는 2000억 원(2020년 약 2.1조 원, 2024년 2.3조 원)을 합쳐서 2020년 대비 2024년 병, 부서관 인건비가 추가로 1.2조 원이 필요한 것이다. 국방비가 재정의 14%(2019년 국가주요지표)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재정을 압박하기 때문에 1.2조 원의 추가재원을 위해 국방비를 인상해서는 안 된다. 장교정원은 대폭 줄일 수 있고 줄여야 마땅하므로 장교인건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1.2조원을 확보하려면 매년 장교 정원을 4,000명 이상 감축해야 한다.

<표 3> 2020년 국방예산(정부안)의 군인 인건비 비교

	장교	부서관	병	합계/평균
인건비(억 원)	44,356 (36.2%)	57,179 (46.7%)	20,965 (17.1%)	122,500 (100%)
정원(명)	75,281* (14.1%)	128,731 (23.2%)	348,491 (62.7%)	555,223 (100%)
1인당 연 인건비(만 원)	5,892	4,442	602	2206 (평균)
1인당 월 인건비(만 원)	491	370	50	184 (평균)

(*무관 후보생 4,510명 포함)

• 2024년 67,000명 장교 정원이 갖는 문제점

-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의하면 장교 정원을 2019년 70,874명에서 점차 줄여 2024년에 67,112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장교 정원 목표는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병력을 30만 명 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전면 재설정 되어야 한다.
- 전체 병력의 규모와 관련하여 특히 '20년대 이후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병력 50만 명 수준은 현실성이 없다. 저출산으로 20세 남자 인구가 2017년 35만 명에서 2022년 이후 22만~25만 명으로 급감하고 그에 따라 2023년 이후 현역 자원이 연평균 2~3만 명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방부는 현역판정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인다고 하지만 이는 미봉책이며 소수 정예군화 한다는 방침과 전혀 안 맞는다. 따라서 병력을 50만 명에서 최소한 30만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대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 30만 명 이하로의 병력감축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로 조성된 새로운 남북관계에 비춰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은 거의 20년 전에 마련된 것인데, 한미연합군이 북한을 공격하고 점령하는 군사전략의 바탕 위에서 입안된 안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공격적인 군사전략은 폐기되어야 하며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위협이 될 수 있는 공격적 전력은 감축해야 한다. 당연히 병력 규모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 방어에 충분한 전력으로 줄어야 한다. 한국군은 30만 명 이하로도 북한은 물론이고 주변국의 공격으로부터도 방어가 가능한 전력이다. 우리나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하거나 큰 나라들과 비교해도 50만 명의 병력은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타당하다. 『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일본 24.7만 명, 대만 16.3만 명, 프랑스 20.4만 명, 독일 18만 명, 영국 14.8만 명이다.
- 2024년 67,112명으로의 장교 감축 목표는 병의 감축 추세와 비교해서도 대단히 소극적이다. 병이 2019년에서 2024년까지 21.7%가 감축되는 것에 비해 장교의 감축 추세는 5.3%에 불과하다. 이는 방만한 군조직을 슬림화 한다는 국방개혁에 거스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병 감축 정도를 적용한다면 2024년 장교 정원 목표는 55,494명이 되어야 한다.

<표 4> 2020~2024 중 병력 조정 계획 (국방중기계획)

	2019년	2024년	감축률
장교	70,874명	67,112명	5.3%
병	380,917명	298,383명	21.3%

- 국방부는 ‘숙련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여 군을 고효율화’하기 위해 장교 정원을 67,000명 규모로 유지하고, 부사관을 7,200여명을 늘려 2024년 전체 병력에서 간부(장교와 부사관)가 차지하는 비율을 2019년 34.2%에서 40.3%로 늘린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숙련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50만 명의 대병력 구조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장교 감축도 필수적이다. 장교 수는 국방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 42,333명(2018년), 독일은 37,054명(2012년), 프랑스는 36,179명(2012년), 영국은 27,230명(2015년)이다. 이에 비하면 한국군의 2024년 67,112명의 장교 인력은 이들 나라의 1.6~2.5배에 달하는 대병력이다.

④ 군부독재 잔재인 직급 상향 대우 폐지로 형평성 기하고 예산낭비 막아야

-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를 근거로 군인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 2직급 상향 대우하는 특혜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감사원의 방위사업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2직급 상향 대우로 방사청에서만 연간 204억 원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
- 2019년 군인봉급표의 대령(15호봉) 기본급은 월 5,837,800원이다. 공무원 4급(21호봉)의 경우 기본급은 4,817,500원이다. 같은 과장급인데도 대령은 직급이 ‘2갑’이다. 기본급만 약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2018년 기준으로 하면 대령은 평균 연봉(수당 포함)이 1억 1117만 원(2018 국방통계연보 군인보수현황)이며 공무원 4급(21호봉) 연봉은 약 8300만 원이다. 대령은 같은 과장급 직급인데도 공무원과 비교해 월평균 235만원, 연 2817만원을 더 받는다.
- 군인과 공무원의 대우 차이는 전두환 정권 때 제정된 ‘군인에 대한 의전예우 기준지침’ (국무총리훈령 제157호, 1980. 7. 29. 제정) 및 총무처 예규 219호(1986. 6. 17)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은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진작 폐지되었어야 할 군사독재시대의 유물이다.

-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특수 계급 제도를 부인하는 헌법에도 위배된다. 군인의 2직급 높은 대우는 같은 직책이라도 군인 신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대한다는 점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한 헌법 11조 1항에 위배된다. 또 군인 예우지침은 군인을 특수한 신분집단으로 예우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11조 2항에 위배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장교인건비 예산 삭감 요구

① 2020회계연도 장성 정원은 390명이 아니라 348명으로 한다.

- 2020년 장성 정원 감축 목표를 정부 안 15명에 42명(부군단장과 부사단장 직위 16개, 국방부 직할부대 최소 10개, 육군 인사사령부 4개, 한시조직 5개, 방위사업청 7개 등)을 추가하여 57명으로 늘리고, 장성 정원을 390명에서 348명으로 조정한다. 42명의 추가 감축으로 절약되는 인건비 예산은 54억 8688만 원이다(2018국방통계연보의 소장 연봉 1억 2483만 원. 이에 2019년 봉급인상률 1.8%와 2020년 봉급인상률 2.8%를 적용해 계산하여 얻은 2020년 소장 연봉 약 1억 3064만 원 적용 시). 이는 봉급에 국한되는 비용이고 장성 유지 운영비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절약될 것이다.

② 대령과 중령을 위주로 영관장교 정원을 6,390명 줄인다.

- 2020년 대령 연봉은 대략 1억 1634만 원(2018국방통계연보의 대령 연봉 1억 1117억 원에 2019년 봉급인상률 1.8%와 2020년 봉급인상률 2.8%를 적용해 계산), 중령은 대략 1억 274만 원 (대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이다. 1993년 “군 정원 및 인력구조 개선안”을 기준으로 하여 대령, 중령 등 고급장교를 위주로 영관장교 6,390명을 감축했을 경우 대령과 중령의 평균 연봉 1억 954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는 연간 약 6999억 6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6390명*1억 954만 원=6999억 6000만 원)

③ 군인 예우 지침 폐기 시, 절약되는 장교 인건비

- 2020년 장교 정원(사관후보생 제외)은 70,771명이다. 군인 예우 지침에 따른 봉급 증가

효과가 월 100만으로 치면 군인 예우 지침을 폐기할 경우, 장교 인건비는 연 708억 원이 절약된다.

5. 삭감요구액

- 장교인건비 중 장성 인건비 삭감액 54억 8688만 원, 영관장교 인건비 삭감액 6999억 6000만 원, 각종 특혜 폐기로 인한 708억 원 등 약 7764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2,727,770	2,782,574	54,804	838,80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예산내역

- ① <사업목적>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소요(일반회계 전출금)”
- ② <2020년 예산 산출 근거> 물가상승률과 처우개선 및 인원 증가를 고려한 2020년도 군인연금 지급 소요. 물가상승률(연금인상률) 1.5% 및 처우개선 2.8% 반영. 국가부담금 1조 2,047억 원 및 보전금 1조 5779억 원(국방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9. 8, 155쪽 참조)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및 국방비 압박이 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 2020년 군인연금 예산(정부요구안)대로 하면 군인연금 지급금(3조 4657억 원)에 대한 국가보전금(1조 5779억 원) 비율은 45.5%가 된다. 군인연금 수급 당사자도 아닌 일반 국민이 군인연금 지급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셈이다.

<표1> 군인연금 국가보전금 추이

(단위 : 억 원)

연도	2017	2018	2019	2020
보전금	14,657	15,100	15,740	15,779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은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연금지급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비율은 공무원연금의 경우 7.1%이지만 군인연금은 그 6.4배인 45.5%에 이른다. 공무원연금은 2020년 국가보전금이 1조 2611억 원으로 2019년 1조 6812억 원에 비해 25.0%(4,201억 원)가 줄어든다. 하지만 2020년도 군인연금의 경우 국가보전금은 1조 5779억 원으로 2019년 1조 5740억 원에 비해 0.2%(39억 원)가 늘어난다.
-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0년 법 개정을 한데 이어 다시 2016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여금 부담률은 2012년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20년 9%로 점차 오르고 재직기간 당 연금지급률은 2010년 1.9%에서 2016년 1.878%, 2017년 1.856%, 2020년 1.834%로 낮아진다. 반면 군인연금은 2013년 미봉적 개혁에 그쳤고 그 뒤로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고부담·저급여 체계로 바꾸라는 국민의 개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2017년 군인연금의 1명 당 기여금 납부액은 연간 326만 원이고 1명당 퇴직연금월액은 257만 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1명 당 기여금 납부액이 연간 434만 원이고 1명 당 퇴직연금월액은 229만 원이다. 군인연금은 보험료 부담이 7.0%로 공무원연금 9.0%에 비해 낮고, 지급률(재직기간 1년당)은 1.9%로 공무원연금의 1.7%보다 높다. 즉 군인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기여금을 내고도 더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국방위서관) 분석』, 2018. 8, 240쪽 참조).

<표2>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 2017년

(단위: 병, 백만원)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자 수	182,204	1,120,458
	기여금수입 총액	594,602	4,867,633
	1인당 기여금연액(만원)	326	434
퇴역연금	수급자 수	71,055	419,968
	퇴역연금지급 총액	2,194,969	11,542,906
	1인당 퇴역연금월액(만원)	257	229

자료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국방위소관) 분석』, 2018. 8, 240쪽

- 군인연금에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이 군인연금 지급의 거의 절반을 책임지는 것은 불공정하다. 보전금을 국가가 주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군인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고부담·저급여 체계로의 군인연금법 개정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② 군인연금 적자의 주원인은 과도한 특혜다

- 군인연금의 국가재정 압박이 다른 특수직역 연금보다 심한 것은 각종 특혜 때문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급기여금 면제(군인연금법 제정 전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면서 소급기여금을 면제해 줌), 퇴역 즉시 연금 수급,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 일반 공무원보다 2직급 높은 대우 등의 각종 특권을 주고 있다.
- 그런데 국방부는 이런 군인연금의 특혜에 대해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격오지 근무, 짧은 정년, 사회 재취업 곤란 등 군 복무의 특성에 따른 보상이지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군인연금에 주어지는, 다른 공적연금에는 없는 특혜들은 군 복무의 특성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부분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군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시행된 것들이다. 즉 이들 특권은 문민통제가 확립되기 이전 군인 우위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상실에 따른 노후생활보장이라는 일반적인 연금의 복지적 성격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기반 강화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였던 것이다.
- 가령 전투 종사기간 3배 계산제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군인에게 지급되었던 군인 은급(연금)을 모방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다. 그리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

에 참전하였던 군인들은 매달 참전명예수당(2019년 월 30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다. 또 격오지 근무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임무 수행 등의 복무 특성을 내세우지만, 현직 때 군인들은 이미 격오지 수당이나 생명수당 등으로 보상을 받는다.

- 국방부는 '전역 즉시 연금 지급' 제도에 대해서 “짧은 정년으로 대부분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전역”하기 때문에 보장되는 것으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군인연금을 노동력 재생산비 개념인 봉급과 노동력 상실에 따른 노후보장개념인 군인연금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다.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에 전역한다면 이는 사회 재취업 등 일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책이며 이런 차원에서 국방부에서는 직업군인 전역자에 대한 재취업 등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3~2017년 전역자(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의 취업률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55.4%¹⁾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률 60.4%(통계청 조사)와 비슷하다. 그리고 군인연금의 가입대상자 가운데 생애 최대 지출기라고 하는 45~56세에 퇴직하는 군인은 2017년 퇴직자를 기준으로 할 때 퇴직자(5년 이상 복무한 전역자) 6,991명 중 2,347명으로 ⅓(33.6%)에 불과하다. 이런 일부 퇴직자의 이익을 위주로 군인연금의 제도를 설계한다면 군인연금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고 소수 특권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것이다.
- 군인연금의 특혜는 그 수혜가 고급장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고급장교(현역)는 그 수가 군 간부(2019년 초 기준 대략 18.2만 명)의 5~6%에 불과하지만 연금수급자의 30.5%(2017년 기준)를 차지한다. 또 고급장교는 월 연금 250만 원 이상 수혜자(24,393명)의 53.9%를 차지한다(국방부,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에서 산출).

③ 군인연금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

- 우선 개혁할 부분은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전역 즉시에서 65세로 늘리는 것이다. 군인연금은 도입된 이래 평균 수명이 52세(1960년)에서 2012년 81세로 연장되었고 그 결과 25년에서 많으면 35년 넘는 수급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있다. 장기기간의 수급으로

1)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2018년 10월 25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이 전역자의 취업 기준은 통계청의 취업기준과 비교해 훨씬 높다. 전역자의 취업기준은 취업을 원하지 않는 전역자라 해도 실업으로 간주된다. 또 통계청은 주당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하지만 전역자 취업률은 월 소득이 2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자를 취업자로 본다. 따라서 전역자 취업률은 통계청의 취업자를 기준으로 하면 조사된 취업률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인한 연금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65세 정도로 늦춰야 한다. 국방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무원보다 짧은 정년 설정, 연금은 퇴역 즉시 지급(미국, 프랑스, 대만 등)”한다면서²⁾ 2013년에 기획재정부 등의 65세 수급개시 요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전역 즉시 연금수급은 외국의 일반적 사례가 아니다. 스웨덴은 군인을 국가공무원으로 취급하는데 연금지급은 대령 이하는 60세부터, 장성급은 65세부터 지급한다. 일본, 이탈리아, 호주는 60세가 연금지급 개시연령이다. ‘전역 즉시’ 지급하던 호주와 영국은 각각 60세와 55세로 지급연령을 늦추었다. 독일은 계급별 정년이 보장된 직업군인(공무원과 같은 신분)은 정년 시(부사관은 55세, 위관급과 소령은 60세, 중령 61세, 대령이상 62세)에 연금이 지급되며 계약 군인(전체병력의 60% 차지)은 군인연금이 65~67세에 지급된다.³⁾ 프랑스는 최소 복무기간(장교는 27년) 충족 시만 퇴역 직후 연금을 지급하므로 20년 이상 복무 시 퇴역직후 연금을 지급하는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퇴역 즉시 지급에서 60세 지급으로의 연장을 검토 중이다.

- 또 개혁해야 할 부분은 전투가산 부담금 문제다. 군인연금법 제16조(복무기간의 계산) 4항은 “전투에 참가한 기간은 3배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다. 전투가산 부담금은 이 규정에 따라 군인연금 가입자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3배로 계산하는 제도다.
- <표3>을 보면 전투기간 3배 계산 규정에 따라서 국가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2015년 635억 원, 2016년 653억 원, 2017년 639억 원, 2018년 579억 원, 2019년 524억 원으로 해마다 기여금 부담금의 10% 안팎이다.

<표3> 전투가산금 추이 (단위 : 억 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부담금	전투가산부담금	653	639	579	524	498
	기여금 부담금	5,775	6,063	6,535	6,753	7,107
	기타 부담금	3,900	3,687	3,862	4,261	4,442
	계	10,328	10,389	10,976	11,538	12,047

자료출처 : 평화통일연구소에서 각 년도 국방부 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작성

2) 국방부 보도자료(군인연금법 일부개정 법률공포) 2013. 3. 27, 2쪽

3) 독일 군인조합(German Military Union)과 독일시민단체 등에 2014년 10월에 문의한 결과임. 김영태, “직업군인의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논문, 2012, 39쪽 참조

-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 군인은 65세부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월 30만 원(2019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다. 2018년 참전명예수당(국가보훈처 예산)은 총액이 7696억 원이다.
-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15년 6월 30일 현재 확인 가능한 숫자가 2,878명이다.⁴⁾ 전투가산 혜택을 받는 군인연금 수급자들도 매월 참전명예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중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투기간 3배 계산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군인연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군국주의의 유산이다. “전투에 종사한 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군국주의 국가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상적 시점에서 생명기간을 전시와 같이 볼 수 없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⁵⁾ 일본의 경우 패전 뒤 군국주의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공무원과 군인의 연금이 통합되었고 군인우대제도도 없어졌다.

④ 정부는 군인연금 전면개혁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 국회 국방위는 2015 회계연도 결산 회의에서 “군인연금에 대한 보전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방비 및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군 내부에서부터 군인연금 제도 개선 필요”(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정부안) 사업설명자료, 1,959쪽에서 인용)라고 지적하였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국방부는 “수익성이 낮은 기금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위 자료 1,959쪽)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답은 동문서답이다. 왜냐하면 국회가 요구하는 것은 제도개선, 즉 저부담·고급여의 군인연금체계를 고부담·저급여 군인연금체계로 개선하라는 것인데 ‘부동산 매각’이니 ‘이자수입 증대’니 하고 엉뚱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방부가 군인연금의 비할 바 없는 특혜에 심취한 나머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얼마나 안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군인)연금 전체가 현재도 정부 재정에서 거의 반 이상을 적자가 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적자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계

4)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국방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결과임. 국방부에 따르면 6.25 전쟁 및 공비토벌작전 전투가산자, 연금수급 후 사망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보유 중인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군인연금 수급자 중 전투가산자로 식별이 가능한 수준에서 파악된 숫자라고 함.

5) 오광석, “우리나라 군인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13, 12쪽

시지요?”라는 민홍철 의원 질문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군인연금은 GDP 대비 0.1%에서 0.12%(이며), 10년 동안 아주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8. 8. 24, 24쪽)라고 답변하였다. 이런 국방장관의 답변은 저부담·고급여로 인한 군인연금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매년 1조원이 훨씬 넘는 돈(2018년 1조 51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는 태도로서 군의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다. 이런 국방부의 자기중심적 태도는 공무원연금이 2016년에 기여율 인상, 연금지급률 인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연금액 한시 동결,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향 조정 등의 개혁을 실시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책임하다.

- 문재인 정부는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군인연금 수혜자의 반발을 두려워해 사실상 군인연금 개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8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지출 혁신 과제 후보를 고르는 과정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검토하였으나 그해 8월 10일 선정한 지출 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 개혁을 제외시켰다.
- 정부가 지출 혁신 과제 후보에서 군인연금을 제외시키고 국회에 지엽적인 조문정비 차원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특권 중의 특권인 군인연금의 전면적 개혁을 포기한 것이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국회는 군인연금법의 전면 개정을 끌어내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보전금의 절반을 삭감한다.
- 2020년도 전투가산 부담금(498억 원)은 과거 군사독재 잔재 청산, 이종특혜 폐기, 국가재정부담 완화 등의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다.

5. 삭감요구액

- 2020년도 보전금예산 1조 5779억 원의 절반인 7890억 원과 전투가산 부담금 498억 원을 합한 8388억 원을 삭감해야 한다.

(155) 군수분야 (5131-304)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147,714	167,400	19,686	167,40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군수소요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국방부, 『2020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9. 8, 1378쪽)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

-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은 그 법적 근거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두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군수분야 예산 편성은 그 법적 근거가 없다. 국방부도 2020년도 국방예산 사업설명자료 중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항목에서 “현 시점에서 `20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배정액이 부재한 상황”⁶⁾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6) 국방부, 『2020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9. 8, 1369쪽

- 정부는 10차 SMA 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액 1조 389억 원을 그대로 적용해 내년도 군수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10차 SMA협정 역시 내년도 방위비분담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10차 SMA 7조에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어 한미가 합의할 경우 10차 SMA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 절차는 10차 SMA 연장 합의도 없고 2020년 방위비분담 액수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불법임에는 변함이 없다.
- 법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2020 회계연도 군수분야 예산(안)의 국회 제출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 국회가 내년 군수분야 예산을 심의·의결하면 그로써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의결한 군수분야 예산은 11차 SMA에 의거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가 임의로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어서 11차 SMA가 체결되면 그에 맞춰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회가 심의·확정한 군수분야 예산은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헌법 상 예산심의 의결권이 훼손되는 것이다. 국회가 자신이 심의·의결한 군수분야 예산을 무효로 만들지 않으려면 11차 SMA 체결 및 국회비준동의와 동시에 또는 그 뒤에 군수분야 예산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 뒤에야 11차 SMA 국회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 만약 한미가 11차 SMA 협상 결과 10차 SMA를 그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훼손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10차 SMA 연장에 한미가 합의하더라도 2019년 방위비분담금액 1조 389억 원은 연장대상이 아니어서 2020년 방위비분담금액은 협상을 통해 새로 정해지게 된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액이 설사 2019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한 협상 결과인지에 대한 논의와 심의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2019년과 다르게 협상되었든 똑같이 협상되었든 국회는 이미 협상 타결 전에 예산을 확정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 타결된 방위비분담금의 타당성을 따질 기회를 봉쇄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다.
- 이에 국회가 예산심의 의결권을 지키고 우리 주권과 국익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2020 회계연도 군수분야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② 사업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

- 국방부는 군수분야사업의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군수 소요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방위비분담의 목적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이라는 논리를 뒤집으면 그 동안 한국이 방위비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하면서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강요해 왔다. 미군 철수 압박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해 왔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은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잘못된 사업 목적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은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이 점에서도 사업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주둔경비 문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 때문이지 주둔 경비 문제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동안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인상되지 않아서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나 영구적일 수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어디까지나 종속변수이지 독립변수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를 위해서 주둔하고 정전상태를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관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과 민족의 주체적 선택을 중심에 두지 못한 비주체적 태도다.

③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 규정으로 해외미군 지원의 길을 틔운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 위반이다

- 10차 협정 이행약정 제5절 '군수비용 분담' 항목에는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2항)라는 문구와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3항)라는 문구가 새로 포함되었다.
- 여기서 주한미군의 ‘일시적 주둔’이란 한미연합연습이나 한반도 역외작전 중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을 의미한다. 이로써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연습이나 한반도 역외작전 중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해외미군에 대해서까지 공과금과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게 된 것이다.
- 이에 따라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한 항모전단이나 핵잠수함 승조원의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우리가 부담할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 이행약정의 “주한미군의 … 일시적 주둔” 규정과 관련하여, 10차 협상 타결 후 장원삼 방위비분담 대사는 기자들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시 (해외미군이) 한국에 오면 주한미군 일부로 (훈련)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따르면 주일미군이나 괌, 하와이에 주둔하는 해외미군이 연합연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 주한미군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부를 수용하면서 이 합의의 위법성과 굴욕성을 덮기 위해 궤변적 문구를 만들어 낸 것이다.
- 이 같은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의 관련 규정과 방위비분담 본 협정 규정을 위반하는 궤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미소파 1조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의 정의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한미소파 5조 1항은 “**합중국은 …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협정이다. 이들 규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 배치되어 주둔하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으로 요약된다. 여기에는 연합연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해외미군을 주한미군으로 규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해외에서 증원되는 전력이지 주한

미군이 아니다. 일시 방문하는 해외미군을 주한미군이라고 우기는 것은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소파, 방위비분담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에 대해서까지 “기지운영지원의 일부”로 그동안 주한미군이 감면받아서 부담하던 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은 미국에 백지수표를 준 것과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의 길을 연 것이다. 특히 공공요금은 일본만 부담해오던 것이고,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은 미군이 주둔하는 그 어떤 나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굴욕적인 것이다.
- 따라서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여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미군에게까지 공공요금과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군수지원비 항목의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④ 해외미군 장비 정비는 방위비분담협정, 한미소파, 국가재정법 위반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초래할 수 있다

- 방위비분담금이 해외(역외) 미군 장비의 보수·정비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9차 협정 기간(2014~2018년) 동안 주일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을 보수·정비하는 데 954억 원이 사용되었다.
- 그 법적 근거는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이행약정의 부속문서인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시행합의서(이하 시행합의서)’의 ‘별지 1’의 제3항이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내에 배치된 미군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 장비의 보수 및 정비 또는 예외로서 양 당사자 간의 특정합의가 있을 때, 대한민국 영토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업무”이다.
-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1조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즉 방위비분담금의 지원 대상 장비는 주한미군의 보유 장비에 한정된다.
- 특히 위 시행합의서 제3조 제4항은 “양 당사자는 모든 군수분야 방위분담금 사업이 대

한국 또는 그 영해에서 실행해야 하며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합의서의 별지가 방위비분담협정과 그 시행합의서 본문에 규정된 범위를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기관 간 약정에 불과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행합의서 별지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본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불법이다.

- 더욱이 시행합의서는 9차 방위비분담 협정의 국회 비준동의(2014. 4. 16)가 이뤄진 지 18개월 뒤인 2015년 10월 14일에 체결되었다. 관련 부분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무력화하는 규정을 국회 비준동의 후 한미당국이 밀실에서 합의하고 이를 국회나 국민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적 합의에 대한 고의적 은폐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이 규정은 한미소파 5조 위반이기도 하다. 한미소파 제5조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와 관련하여 시설과 구역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역외 미군 장비가 한미 연합작전계획에 따라 한국에 증원될 수 있는 장비라 하더라도 이는 **주한 미군 주둔 경비**와 직접 관계가 없는 **역외 장비**에 관한 것이므로 한국이 이에 대한 보수·정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다.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역외 미군 장비 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 9차 협정 기간(2014~2018년) 동안 해외미군 장비의 보수·정비에 불법 전용된 954억 원은 같은 기간 전체 군수지원비 7985억 원의 11.9%에 이른다. 불필요한 비용이 불법적으로 954억 원(연평균 190.9억 원)이나 낭비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분담협정의 근간을 무너뜨려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을 뛰어넘어 세계패권전략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10차 협정과 그 이후에도 계속 허용되면 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 국회는 10차 협정을 비준동의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관련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그 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지속되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

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는 군수지원비를 전액 삭감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용도에 방위비분담금이 쓰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⑤ 사업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을 환수하라는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 국회는 10차 SMA 비준동의 때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합치하여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9차(2014~2018년) 협정 기간 군수지원비 불용액은 131억 원에 이른다.(2014년 41억 원, 2015년 6억 원, 2016년 8억 원, 2017년 52억 원, 2018년 24억 원) 이는 같은 기간 군수지원비 편성액 7761억 원의 1.7%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불용액을 환수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또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그러나 이런 국회의 요구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한미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차 SMA를 위한 이행약정’(제5절 군수비용 분담 7항)을 보면 “입찰 공고가 되지 않은 군수비용 분담 잔여 재원은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공요금에 지출될 수 있다. 입찰공고란 계약이 광고된 것을 의미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군수지원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면 이를 우리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미국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쓸 수 있게 허용한 것이다. 이 규정대로 하면 불용액이 생길 경우 미국은 그 불용액을 공공요금 등으로 지출할 것이기 때문에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런 점에서 국회의 부대의견은 맹점이 있다.
- 우리 정부가 불용액이 생겨도 그것을 환수하지 않고 미국이 재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며 불용액이 생기면 국고로 환수하라는 국회의 의견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더욱이 군수지원은 전액이 현물지원 원칙인데 불용액을 공공요금에 쓸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한국이 불용액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꼴이 된다는 점에서도 이행약정 제5절 7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되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이중, 삼중으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국익 훼손이고 재정주권 침해다.
- 군수지원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국가재정법에 합치되게 국고로 환수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이 아니라 10차 SMA 협정 자체를 부결했어야 옳았다. 이제라도 군수분야 방위비분담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미국이 우리 국가재

정법을 위반하여 군수지원비를 집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⑥ 2020년도 군수분야 예산을 능가하는 금액이 미집행인 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군수분야 예산을 또 다시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 낭비다

- 2018년 말 현재 각종 명목의 군수지원비 미집행 잔액은 불용액을 빼고도 1534억 원이다. 그 내역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비 현물 지원분 562억 원, 2019년도 이월액 236억 원, 감액 누계 736억 원이다.⁷⁾ 미집행금 1534억 원은 2020년도 군수분야 예산 1674억 원에 가까운 액수다. 내년 군수분야 예산에 버금가는 금액이 미집행된 채 남아있다는 것은 연간 군수지원비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집행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군수분야 예산을 미국에 지급한다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 정부 어느 부처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각종 명목으로 남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의 재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국회는 우리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 군수분야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⑦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군수지원은 종료되어야 한다

- 군수지원 사업은 1970~1980년대 냉전이 한창이던 시대에 미국의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을 군수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 남북 정상이 종전을 선언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의하였고 북미양국도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로 한만큼 과거 냉전시대의 산물인 군수지원 사업들은 폐지되는 것이 정상이다.
- 군수지원은 9개 항목으로 되어있다. 이 중 샬스케이(SALS-K, 한미단일탄약군수체계), 매그넘(한국 공군 시설 내 미 공군탄약 저장), 전쟁예비물자(WRM) 정비, 미군장비정비 등은 북한을 공격·점령하는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에 입각한 전시 군수지원체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군수지원금(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기준으로 879억 원에 이르며 전체 군수지원비 1674억 원의 52.5%를 차지한다.
- 샬스케이는 미 육군 전용탄약(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예비탄약 포함)을 한국군이 저장·관

7) 국회 외통위,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4 / 박기학, “방위비분담금과 국가재정법”, 김경협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발제문, 2018. 5 / 2020 국방예산 사업설명자료 종합

리해주는 것으로 다른 미 동맹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또 샬스케이는 한국군 20개 사단의 45일분의 탄약을 전쟁예비탄으로 저장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물량의 탄약 비축 의무화는 대북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명분 밑에 사실은 미국이 자신의 넘쳐나는 잉여탄약을 한국에 반입시키려는 계산이 작용한 것이다. 한국군이 저장·관리하는 미 육군 전용탄이나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 예비탄약은 거기에 우라늄 탄이나 지뢰제거용 폭약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서 보듯이 그 성격이 방어적으로 사용하는 탄약이라기보다는 대북 공격전략 이행을 위한 탄약이라 할 수 있다. 샬스케이의 근거가 되는 ‘한국 내 재래식 탄약의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는 그 불평등성이나 대북 공세적 성격, 엄청난 탄약물량 비축의 비효율성에 비추어 진작 폐기되었어야 할 협정이다.

- 한국군이 미 태평양공군의 탄약을 저장·관리하는 매그넘 또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불평등조약이다. 전시 증원되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사용하도록 평시에 한국군이 미 공군 예비탄약을 저장·관리하는 매그넘은 북한 공격과 점령을 목표로 하는 작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축내는 사업이다. 전쟁예비물자 정비도 전시에 증원되는 미 공군 작전부대가 사용하기 위해 COB(공동운영기지)로 지정된 한국군 공군기지 내 저장된 각종 물품을 우리 돈으로 정비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북한 공격 및 점령을 위한 미 군사전략 이행을 군수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다. 장비정비사업도 북한과의 전면전 시 증원되는 해외주둔 미군장비 등을 정비해주는 사업으로 이 역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장비에만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위배된다. 샬스케이나 매그넘, 전쟁예비물자 정비, 미군장비정비 등 네 가지 사업은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 또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바뀐 한반도의 정세에 비추어 당장 폐지되어야 할 사업이다. 대북 공격과 점령 시나리오에 따른 전시지원 사업들에 1000억 원에 가까운 국민세금을 매년 축내는 것은 낭비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진전을 위협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역행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2020년에 적용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아직 부재한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군수분야 예산을 책정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 것은 불법이다.

- 해외미군에게까지 공공요금과 저장, 위생·세탁·목욕, 폐기물 처리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한미소파와 방위비분담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군수지원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 해외미군 장비 정비는 방위비분담협정과 한미소파,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군수지원비의 기하급수적 확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군수분야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 불용액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미국이 재사용하게 허용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배한 것이고 또 우리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 군수지원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 냉전적이고 대북 공세적인 성격의 군수지원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역행하므로 종료되어야 한다.

5. 삭감요구액

- 내년도 군수분야 예산 1674억 원 전액을 삭감한다.

(154) 군사시설개선 (5131-302)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452,671	371,000	-81,671	371,00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국방부, 『2020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9. 8)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다

- 방위비분담금 예산 편성은 그 법적 근거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두고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적용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국방부)가 군사시설개선(군사건설비) 예산을 편성할 법적 근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2020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은 법적 근거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불법이다. 국방부도 2020년도 국방예산 사업설명자료 중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항목에서 “현 시점에서 `20년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협정과 배정액이 부재한 상황”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 법적 근거에 의거하지 않은 임의적인 2020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안)의 국회 제출은 국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침해한다. 국회가 내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심의·의결하면 그로써 정부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 의결한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11차 SMA에 의거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부가 임의로 산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어서 11차 SMA가 체결되면 수정되지 않을 수 없다. 즉 2020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이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이다. 또 국회가 11차 SMA 국회비준을 거부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회가 그 전에 심의·의결한 군사시설개선 예산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국회가 11차 SMA 체결(국회비준) 전에 2020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심의·의결할 경우 자신이 확정된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국회 스스로 무효로 만드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11차 SMA 체결 및 국회비준과 동시에, 또는 그 뒤에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2020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의결한 뒤에야 11차 SMA가 체결되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 이에 국회는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자가당착적인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2020 회계연도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법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국익 훼손을 막는 길이다.

② 사업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

- 국방부는 군사건설사업의 목적이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일부 시설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을 사업목적으로 하게 되면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방위비분담의 목적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조성’이라는 논리를 뒤집으면 그 동안 한국이 방위비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특히, 트럼프 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하면서 한국에 대해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도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강요해 왔다. 미군 철수 압박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미국의 가장 큰 지렛대 역할을 해 왔다. ‘주한미군의 안정

8) 국방부, 『2020년도 국방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19. 8, 1369쪽

적 주둔여건 조성'이라는 사업목적은 애초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잘못된 사업 목적을 위한 방위비분담금 지급도 중단되어야 한다.

- 주한미군 주둔은 기본적으로 방위비분담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 이 점에서도 사업목적에 잘못 설정되었다. 주한미군 주둔은 미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주둔경비 문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한다면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 때문이지 주둔 경비 문제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동안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인상되지 않아서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 입장에서나 미국 입장에서나 영구적일 수 없다. 주한미군 주둔은 어디까지나 종속변수이지 독립변수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를 위해서 주둔하고 정전상태를 전제로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남북관계가 바뀌면 그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을 사업 목적으로 설정한 것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대한 우리 국민과 민족의 주체적 선택을 중심에 두지 못하는 비주체적 태도다.

③ 내년도 군사건설 예산의 5배에 달하는 돈이 미집행인 채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군사건설 예산을 또 다시 지급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 낭비다

- 2018년 말 현재 각종 명목의 군사건설비 미집행 잔액은 1조 8469억 원이다. 그 내역은 미집행 현금 2884억 원, 설계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않은 군사건설비 현물 지원분 9302억 원, 2019년도 이월액 548억 원, 불용액 누계 901억 원, 감액 누계 4834억 원이다.⁹⁾ 미집행금 1조 8469억 원은 2020년도 군사건설비 예산 3710억 원의 꼭 5배 되는 액수다. 미집행 된 채 남아있는 군사건설비의 20%만 사용해도 내년도 군사건설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년 군사건설 예산을 미국에 지급한다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우리 정부 어느 부처도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각종 명목으로 남길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우리의 재정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년 군사건설비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9) 국회 외통위,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4 / 박기학, “방위비분담금과 국가재정법”, 김경협 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발제문, 2018. 5 / 2020 국방예산 사업설명자료 종합

- 내년 군사건설 예산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 미집행 된 채 남아있다는 것은 연간 군사건설비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집행도 매우 불투명하다는 증거다. 국회는 방위비분담금이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어 우리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 내년도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 평택미군기지 이전 건설 사업은 2017년까지 85%(국방부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8. 8. 223쪽)가 완료되었고, 국방부에 따르면 2018년 9월 현재 89% 완료되었으며 2018년까지 93% 완료된 것으로 알려진다. 『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23년에 종료되고, 2020~2023년간 소요 예산은 4081억 원이다. 미집행잔액을 활용하면 2023년까지 군사건설비를 전혀 배정하지 않아도 충분하다. 내년도 군사건설예산을 정부(안)대로 확정하면 또 다시 많은 미집행액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해 우리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④ 특수정보시설 건설을 비한국 업체가 맡는 불법을 원천 봉쇄하는 길은 군사건설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다

- 국회는 10차 SMA 비준동의 때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 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하라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런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10차 SMA 이행약정(4절 4. 다.)에 ‘특정 시설 건설’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한국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 “계약업체는 비한국 업체가 이용되어야 하는 특정 시설 건설을 제외하고, 미합중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부가 사전에 선별한 계약업체 목록에서 선정된 한국 업체로 한다”는 이행약정(4절 4. 다.)의 규정은 특정시설 건설의 경우 비한국 업체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본 협정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3조와 이행약정 4절 2.를 위반한 것이다. 10차 SMA 제3조는 “군사건설은 현금 지원 및 현물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군사건설 현금 지원분은 설계와 시공감리에 사용 된다”고 되어있다. 이행약정 4절 2.는 “한국 국방부가 제공하는 현금은 군사건설 사업의 설계 및 시공감리비로만 사용된다.”고 되어 있다. 한국이 설계와 시공감리에 한정해 현금을 미국에 지급하고 그 외 시공은 한국기업이 맡도록 한 것은 미국에게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미국의 사정을 배려해 설계와 시공감리로 현금지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한국 업체가 시공을 맡는 것은 미국에 대한 현금지급을 최소화해 우리 국민세금이 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한국으로 환류 되게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비한국 업체(미국업체)가 설계와 시공 감리만이 아니라 시공까지 맡게 허용하면 우리는 이 건설사업의 통제권을 사실상 완전히 잃고 비한국 업체에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주한미군사가 설계와 시공감리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건설의 계약 대상 업체를 결정하고, 계약문서 초안을 준비하며, 공사감독 책임을 맡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 한도에 대한 통제도 어려울 것이다. 또 우리 국민 세금은 미국 시공업체로 유출되기 때문에 3조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또 미국 시공업체가 시공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하여 미국 기업이 영업이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게 사업적 또는 영업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과 한미소파 7조를 위배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을 국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한국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부대의견을 낸 것이다. 10차 협정에 대한 외통위 심사보고서도 “군사건설 지원부문의 예외적 현금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조건부로 비한국 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나, 그 요건 중 하나인 가용 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볼 때, 한-미 양측 간 현금 가용성에 관한 엄격한 협의와 합의를 거쳐 비한국 업체 지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¹⁰⁾라고 이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하지만 한미 당국이 국회의 부대의견을 따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왜냐하면 국회의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가 10차 SMA를 비준동의 해 주었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이를 국회가 특수정보시설에 대해서 비한국 업체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여길 수 있다. 이 점에서 국회가 10차 SMA를 비준동의하면서 비한국 업체를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말 국회가 특수정보시설에 비한국 업체가 사용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마땅히 10차 SMA를 비준동의하지 말았어야 한다.
- 10차 SMA가 비준동의 된 상태에서 미국이 비한국 업체에 시공을 맡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평택미군기지의 핵심지휘시설인 작전센터가 2013년 7월 기공식을 올린 후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작전센터의 핵심시설이라 할 수 있는 ‘특정 시설 건설’ 비용 충당을 위해 주한미군은 11차 SMA에도 비한국 업체가 예외적인 경우 특정 시설건설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에 국회는 내년도 군사건설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이 미국 시공업체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미 당국은 미국 시공

10) 국회 외통위, 10차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15쪽

업체가 시공을 맡는 불법행위를 단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 업체의 참여를 꺼리는 군사건설사업의 경우 미국 자신의 예산으로 집행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민의 부담을 더는 일이 될 것이다.

⑤ 불법으로 점철된 군사건설비의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내년 군사건설비 전액 삭감은 불가피하다

- 군사건설비는 집행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사용하는 것은 LPP개정 협정 위반이며 또 목적 외 사용을 금한 국가재정법 제45조 위반이다. 이 점은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이 현금으로 지급된 군사건설비를 빼돌려 다년간 축적하고 제멋대로 집행해온 것은 당해 연도의 예산은 그 해에 집행되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현금 2884억 원 중에는 한국으로부터 설계 및 감리비 조로 지급받은 현금과 2002년 이후 미집행 군사건설비 현금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데, 사용하고 남은 불용액은 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계속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 원칙과 불용액의 국고환수를 규정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또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수취도 영리활동을 금지한 한미소파 제7조 위반이다.
- 이런 불법적인 군사건설비 집행에 대한 국회, 시민사회단체,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의 평택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 방위비분담금을 이용한 이자수취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액수가 연간 300억 원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시사저널, 2016. 5. 18)도 있다.
-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자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10차 SMA 협상 때 방위비분담 총액에 반영하겠다고 국회에서 답변해 놓고서도(국회 외통위, 2014. 4. 15) 이를 지키지 않았다. 미국 또한 이자소득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궤변만 늘어놓았다. 한미 당국이 불법적인 이자 발생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국회는 내년도 군사건설비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이런 불법적인 군사건설비 집행을 묵과하지 않고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한미 당국에 보여주어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군사시설개선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 각종 명목의 군사건설비 미집행 잔액이 1조 8469억 원이나 되므로 군사건설비는 전액 삭감하여 재정주권을 침해하는 군사건설비 배정과 집행의 불법적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 특정 시설 건설을 비한국 업체에 맡기도록 한 것은 군사건설비 현물 제공 원칙에 어긋나므로 불법 부당한 미국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군사건설비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
- 불법으로 점철된 군사건설비의 집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내년 군사건설비 전액 삭감은 불가피하다.

5. 삭감요구액

- 2020년도 군사시설개선 예산 3710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가 (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8,980	21,679	12,699	21,679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또는 필요성

① 사업목적

-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및 치유

② 예산 내역

- 부평 캠프마켓(DRMO), 원주 캠프 룡, 동두천 호비(쉐아) 사격장, 의정부 캠프 에세이온 주변지역 4곳 정화비(206억 원) 등에 소요
- 4곳 각각의 총사업비는 부평 캠프마켓(DRMO)이 612억 원(오염량 123,362m³의 정화비), 원주 캠프 룡이 113억 원(오염량 55,012m³ 정화비), 동두천 호비(쉐아) 사격장이 23억 원(오염량 11,365m³ 정화비), 의정부 캠프 에세이온 주변지역 정화비 5.5억 원(오염량 2,686m³ 정화비)임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미국이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치유를 시작한 문제

- 캠프 에세이론은 이미 반환이 완료된 미군기지로 2020년도 5.5억 원의 예산 편성은 반환된 에세이론 주변지역을 정화하는 사업이다. 캠프 마켓과 캠프 롱, 호비(쉐아) 사격장은 미반환 26곳(반환대상 80곳 중 54곳은 반환완료) 중의 일부로 이들 3곳은 기지반환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환경협의 단계에서 반환절차가 멈춰 있다. 이 환경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주한미군이 환경오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미 사이에 이 세 곳의 환경오염치유 책임과 비용에 합의하지 않은 채 내년도 국방예산에 환경오염치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상 우리 정부가 우리 비용으로 반환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치유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들 기지(반환절차를 밟고 있는 19개 미군기지 중 캠프헴프리스로 이전해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미군기지)는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놓고 한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대부분 환경 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반환이 승인돼야 기지를 이전할 수 있는데 환경협의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거꾸로 기지부터 이전해 놓은 셈이다. 한국 정부와 환경단체는 기지별로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 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동아일보, 2019. 9. 19)
- 그동안 정부는 반환 완료된 미군기지 54곳에 대해서 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반환미군기지 18곳과 기지주변지역 12곳 등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였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만 2400억 원에 이른다. 이 2400억 원의 비용에 대해서 미국이 사후적으로나 사전적으로나 낸 돈은 전혀 없다.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치유 비용이 고스란히 한국 부담으로 된 것이다. 이런 경과를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반환예정기지 세 곳의 환경오염치유 비용은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이전 사례를 따라 결국 우리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다.

② 캠프마켓 사례로 본 정부 대응의 문제점

- 내년도 환경오염 치유예산 217억 원은 그 대부분(208억 원)이 부평 캠프마켓(DRMO)의 정확에 들어간다. 이에 캠프마켓 DRMO(미군군수품재활용센터)를 중심으로 내년도 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 예산 편성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 2020년도 국방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부평 캠프마켓 DRMO의 정확 총사업비(2019~2022년)가 613억 원으로 산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총사업비의 산출기준이 과연 어떤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위 국방부 사업설명서를 보면 오염량은 다이옥신 류 9,428㎥와 중금속 및 유류 113,934㎥를 합쳐 123,362㎥로 되어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오염량과 그 치유 비용에 대해서 미국과 어떻게 논의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다. 즉 오염량이 위해성 평가 결과인 것인지 아니면 한국의 독자적인 조사와 판단 결과인지, 또 주한미군이 이 오염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총사업비 중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0원인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따라서 총사업비가 600억 원이 넘는 캠프마켓 DRMO 정확비 예산의 적정성을 국회와 우리 국민이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 환경부는 2016년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이를 비공개하였다. 이에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2018년 3월)로 환경부는 오염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공개된 결과 캠프마켓 DRMO에서의 다이옥신이 미국 기준치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등 환경오염이 매우 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작 핵심적인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해성 평가는 미국이 주장한 방식에 따라 한미가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미국도 그에 대해 구속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게 오염치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짐작된다. 위해성 평가 결과가 미국에 매우 유리하게(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은 클 것이고 이를 두려워한 까닭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위해성 평가 결과 오염정도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이다. 후자 경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환경오염치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환경오염치유 책임을 인정한 적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하야리아의 경우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토양에 대해서도 치유책임을 지지 않았다. 위해성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이 비공개를 한국에 압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위해성 평가 결과를 환경부가 비공개하는 것은 잘못이다.

- 환경부가 부평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대미 협상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KISE)을 내세워 환경오염치유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여론은 미국이 환경오염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정하게 하는 유력한 힘이다.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를 지금이라도 공개해서 우리 국민과 국회가 부평미군기지 오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근거해 미국의 환경오염 치유책임을 묻고 우리의 환경주권을 지켜 국민 세금 낭비가 없게 해야 한다.
- 환경부가 캠프마켓 DRMO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의 중요성은 DRMO가 캠프마켓의 아주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캠프마켓 DRMO의 환경오염치유 책임이 어떻게 협상되느냐에 따라 나머지 캠프마켓의 오염치유 책임, 나아가서는 앞으로 반환될 25곳의 환경오염 치유책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캠프마켓 DRMO의 위해성 평가를 공개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함으로써 부평 캠프마켓의 환경오염치유 책임을 미국에게 묻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 캠프마켓의 DRMO 면적은 10만 9957㎡으로 캠프마켓 전체 면적 44만 5000㎡(약 16만 평)의 24.7%에 불과하다. 그런데 환경조사와 위해성 평가가 DRMO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2020년도 국방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DRMO만 정화대상으로 되어 있다. 부평 미군기지 남측 부지(B구역)와 주변지역은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부평 주민들은 정작 미군기지 남측 부지 토양의 오염농도가 비교적 낮고 오염물량이 4~5개 지점으로만 흩어져 있어 동시 정화할 경우 예산 절감과 정화 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남측 부지의 정화 대상 부지는 넓이 1만 6420㎡, 부피 2만 280㎡ 규모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미소파 환경분과위에서 논의되지 않아 미군기지 전체와 주변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정화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방부가 부평 주민 나아가서 우리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미국의 입장을 추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캠프마켓 주변지역이 정화대상에서 빠진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2009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오염조사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장 주변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33배에 이르는 등 캠프마켓 일대가 발암물질로 오염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5월 환경부가 실시한 캠프마켓 주변지역 조사에서는 2013년의 오염면적 3440㎡의 두 배에 이르는 6317㎡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평

주민들이 캠프마켓 때문에 환경, 교통, 개발 등 여러 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캠프마켓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은 캠프마켓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치유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미군기지 자체의 오염치유 책임도 지지 않았지만 주변지역의 오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한미소파 제23조(청구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무 중 제3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배상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한미소파 제5조 2항 단서 조항-“한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근거로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이 있는데도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법원이 판정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국 쪽 손해배상금액이 2011~2019년 8월까지 무려 83억 원에 이르는데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아 고스란히 우리 국민 부담이 되었다. 우리의 사법주권과 환경주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평 캠프마켓 전체 반환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치유문제도 한미소파 분과위의 의제로 올려야 하고 또 그에 대한 주한미군의 치유책임을 물어야 한다.

③ “미군기지 정화비용 한미소파로 해결 어렵다”는 정부 주장의 문제점

- 정부는 한미소파체제로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분담 문제 해결이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국무조정실,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네 곳(캠프마켓, 원주의 캠프 롱, 캠프이글, 동두천의 캠프호비)의 반환자연문제를 논의했고 그 결과를 NSC에 건의했으며 2019년 8월 30일 NSC 상임위 회의에서는 이 건의를 수용하여 현행 한미소파체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한미소파에는 미국의 오염정화 책임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고 한미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중재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 현행 한미소파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책임을 미국에게 묻기 어렵다는 정부의 결론은 우리의 환경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다. 이런 결론은 우리의 환경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을 한미소파라는 제도상의 허점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써 환경주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가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 한미소파의 불평등성을 거론하기 이전에 먼저 정부가 과연 우리의 환경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노력하였는가를 반성하는 것이 순서다. 단적으로 부산 하야리아의 경우 주한미군이 주장하는 오염평가방식(위해성평가)에 따라서 평가한 결과 비록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오염을 확인해 놓고서도 미국한테 그 치유비용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가 매우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뚜렷한 증거다. 우리 정부는 한미소파 환경분과위의 한미 양측 위원장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조사 결과를 비롯한 논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2017년 4월 대법원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는데도 환경부는 캠프마켓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겨우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서야 일부를 공개하였을 뿐이다. 이런 철저한 비밀주의는 우리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로써 이런 대미 굴종적 자세로는 결코 환경주권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다.

- 물론 한미소파의 환경관련 조항(7조 접수국법령 존중,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JEAP 등)이 우리의 환경주권을 뚜렷이 하지 못하고 또 침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미소파의 환경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한미소파 환경조항이 우리 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부가 아예 한미소파체제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런 단정은 그 동안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의무 면제(한미소파 제4조1항)나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한미소파 제5조 2항 단서조항 등을 근거로 환경오염치유 책임이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온 미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반환 자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미국에 부담시킬 정화 비용을 비교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태도 역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우선 환경오염치유 책임 문제는 단순히 비용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문제다.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문제를 비용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환경주권 침해 사태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 주권은 그 비용이 크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반환 자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하면서 정작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미국 측과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DRMO에 대해서만 환경조사와 정화 절차를 밟고 나머지는 정화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반환자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미국에 부담시킬 정화비용을 비교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은 미국에게 환경오염치유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한 결정이 국민의 결정이라는 외피를 입힘으로써 정부 자신의 무책임함을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

-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한미군 측이 자기의 비용으로 오염을 치유하여 한국 정부에 반환을 완료한 사례도 있다. LPP와 관련하여 최초로 반환된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2003. 12. 30)와 오산 베타사우스 탄약고 부지(2004. 8. 27)가 바로 그런 사례다. 이 미군기지는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미군이 오염을 치유한 뒤 반환하였다. 외교통상부는 한 자료에서 “용산 아리랑 택시부지는 한미 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한측과 미측이 공동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부분을 미측이 치유하여 한측에 제공한 성공적인 반환사례로, 작년(2003년) 말에 용산구청에 매각하였으며, 용산구청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다.”¹¹⁾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과거 사례는 현 한미소파 체제로는 미국에게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부담시키기 어렵다는 정부의 결론이 무책임의 발로라는 하나의 방증이 된다.
- 세계적으로 미국에게 환경오염치유 책임을 물은 사례가 없다는 주장도 변명이다. 독일의 경우 나토소파 독일보충협정 제54조 A는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적합성을 독일 ‘환경법’에 따라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 오염의 경우 확인·평가·치유 비용을 파견국(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이 환경오염치유 책임이 없는데도 1억 달러를 들여 오염된 미군기지 토양오염을 정화한 사례(1998년)가 있다.¹²⁾

④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상계한다는 방침의 문제점

- NSC가 현 한미소파체제로는 반환미군기지 정화비용을 미국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리고 부평의 캠프마켓과 원주의 캠프 룡, 캠프 이글, 동두천의 캠프 호비를 비롯한 미반환 26개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언론은 이런 정부의 조기 반환 방침에 대해서 정부가 미국과의 향후 방위비분담 협상을 통해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을 방위비분담금 인상과 상쇄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 만약 언론의 전망대로 정부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방위비분담금과 상계하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문제다. 방위비분담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를 상계하겠다는 것은 곧 우리 국민 세금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정화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주권국가로서 한국이 미국에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책임을 묻지 못하

11) 외교통상부,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2004. 11.

12) 박기학, “미국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책임에 대한 법적 시각”, 2011, 23쪽 참조

는 것도 분통 터지는 일인데 한국이 자청해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를 해주겠다고 나선다면 그런 굴욕도 없다. 또 우리 국내법(환경관련법)은 오염원 인자 부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상계하려는 것은 우리 정부가 국내법을 스스로 어기는 불법 행위다.

-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반환미군기지 정화비용을 상계하는 방안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오히려 이 상계방안은 또 다른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한국이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비용 상계를 요구해 온다면 그것까지를 감안하여 자신들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액(또는 인상률)을 정할 것이다. 그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기지의 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이상 상계를 바라는 한국의 오염정화 비용의 범위(또는 수준)를 될 수 있는 한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오염 정화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상계 금액을 방위비분담금의 한 항목으로 신설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자신들의 기지를 한국의 돈으로 오염을 정화할 수 있어 예산 절약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의 상계안은 방위비분담금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시켜 주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① 국회는 내년도 환경오염 치유비를 전액 삭감하고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한미 공동환경조사 결과 심각한 오염수준을 확인하고서도 그 치유비용을 전부 한국이 떠맡은 캠프마켓 사례가 그대로 용인된다면 캠프마켓을 제외하고서도 주한미군한테 반환 받을 기지가 25곳이 더 남아있는 바¹³⁾, 이들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우리 국민이 몽땅 부담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20년부터 반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곳의 환경오염은 다른 미군기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정도가 광범하고 심할 것으로 여겨져 정화비용만 최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LPP개정 협정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른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모두 80곳이다. 이 가운데 2017년 현재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모두 54곳이다. 그런데 54곳 중 25곳은 국내 환경보전법 상 오염기준을 초과하여 우리 정부가 비용을 들여 정화를 실시하였다. 2018년 현재 24곳의 오염정화에 든 비용만 2193억 원에 이른다.

이에 국회는 2020년도 캠프마켓 등의 환경오염치유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 ② 국회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환경오염 정화사업 대상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사후 회수할 비용과 한국이 부담할 비용이 각각 얼마가 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캠프마켓 DRMO 등에 대한 한미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③ 현 한미소파체제로는 미국에게 환경오염치유 비용을 분담시키기 어렵다는 정부의 결론은 성급하고 잘못된 것이다. 이에 내년도 환경치유 예산이 그대로 한국 부담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액 삭감해야 한다.
- ④ 미군기지 정화비용을 방위비분담금과 상계하는 방안은 미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자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인이 되므로 국회는 내년도 환경오염 치유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정부가 미군기지 정화비용을 방위비분담금과 상계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5. 삭감요구액

- 216억 79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11) 육군 부대개편 4차 (4131-476)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10,837	34,082	23,245	341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18년 결산	2019년(2019. 7월 말)		2020년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요구안
공정사단 본부/A여단	-	992	246	123
공정사단 B여단	-	506	438	218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 '19년부터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는 지작사 직할 3개 부대, 1군단 직할 1개 부대, 3군단 직할 5개 부대, 5군단 직할 1개 부대, 1군지사 직할 3개 부대, 8·22·35·36사단 예하 13개 부대, 강릉병원 등 27개 부대의 증·창설 관련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 (공정사단 본부/A여단 개편) 신작전개념인 공세적 전투를 위해 신속 대응사단을 창설하

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

- (공정사단 B여단 개편) 신속 대응사단의 예하부대로 창설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신작전개념’과 이에 의거한 ‘공세적 전투’는 국방개혁 2.0에서 이미 폐기된 개념임

- 국방부가 밝힌 공정사단 본부/A여단 개편 및 공정사단 B여단 개편은 신작전개념 하 공세적 전투를 전개하기 위한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기 위한 사업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신작전개념’은 이미 2018년 7월 국방개혁 2.0을 발표하면서 폐기된 개념이다.
-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취임 직후(2017. 7)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부대, 해병대,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내용의 ‘공세적 작전개념’을 세우라고 지시했다.”(중앙일보, 2018. 7. 27)
- 이에 국방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 주도의 신작전수행개념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작전수행개념이란 “(북한이)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과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적 도발 시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 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주요표적을 신속히 제압하고, '공세적인 종심 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해 '최단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승을 달성하는” 개념으로 “공세적 종심 기동전투는 유사시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개념의 전투를 의미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속한 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 기동부대(공정/기동/상륙부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뉴시스, 2018. 1. 19).
- 하지만 2018년 7월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보고하며 공세적인 신작전개념 대신 입체기동작전 개념을 보고했다고 한다. 군은 “공세적 신작계는 대화 무드 속에 북한을 자극할 우려 등 때문에 폐기됐다고 봐도 된다”며 “입체기동작전에는 평양 조기점령 등의 개념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18. 7. 28).
- 그런데도 국방부와 군은 이미 폐기된 ‘공세적 신작계’ 또는 ‘신작전개념인 공세적 전투’

를 위한 공정사단 개편 또는 ‘신속대응사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폐기한 개념인 ‘공세적 신작계’가 하위 부대 구조와 장비 도입 등 전력 구조에서는 엄연히 살아있는 부조리한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 ‘신공세적 작전개념’이 폐기되었다면 이 개념을 이행하기 위한 부대 창설이나 전력 도입도 폐기되어야 한다. 이에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② 대북 침투용 공중강습을 주 임무로 하는 “공정사단”은 판문점 선언·평양 선언 이행과 군사분야 합의서 진전을 위해 해체되어야 한다

- 국방부는 ‘신속대응사단’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 “올해 말까지 운용 개념 연구와 교리 정립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이데일리, 2019. 4. 16). 그러나 국방부의 이런 주장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국방부와 군이 교리와 운용 개념도 정립하지 않고 부대를 창설하고 전력을 도입하는, 그야말로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부대 및 전력 운용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신속대응사단’이 ‘신공세적 작전개념’ 수행을 위한 부대임이 명확하다. “2작사 예하 2개 특공여단을 기반으로 화력과 장비, 인력을 보강해 공수부대로 키우겠다는 것”(중앙일보, 2018. 8. 26), “신속대응사단은 항공기로 최단시간에 적진 중심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 부대 격멸 등 전략·전술 작전을 수행 …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는 역할 … 경북 경산 및 경남 사천에 주둔하고 있는 201 특공여단과 세종 및 계룡에 위치한 203 특공여단이 예하에 배속될 예정”(이데일리, 2019. 4. 16), “(수리온 헬기를) 2020년대 초반 4차 양산 이후 추가로 130여 대를 생산해 새로 창설될 신속대응사단에 배치하는 방안 … 최근 개편이 시작된 제2보병사단을 헬리콥터를 주로 운용하는 공중강습사단으로 재편할 계획”(서울경제, 2019. 6. 4), “전후방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즉각 대응 가능”(국방일보, 2019. 9. 4), “소수의 병력을 유지하되 특수작전용 헬기 등 기동장비로 무장”(연합뉴스, 2019. 9. 21) 등은 신속대응사단이 헬기를 이용하여 적진 깊숙이 고속 기동해 공중강습을 통한 적지 침투 등 초공세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상정하고 있다.

- 송진현 2군단 작전계획처장도 “기동군단은 합참의 ‘미래 합동작전 기본개념’인 ‘입체중심기동작전’ 수행을 위한 ‘비선형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공격과 방어 동시 작전으로 적 공격을 격퇴하고, 조기 공세 이전으로 합동전력, 헬기·기갑·공병전력,

드론봇 등을 활용하여 적 방어지대를 신속히 극복하여 중심기동 여건을 조성하며, 기동 부대에 의한 비선형 입체기동을 실시하여 적 중심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개념에 의해 신속대응사단을 편성하고, 아파치 헬기 등 기동성 있는 무기체계를 전력화하여 완전성을 갖추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입체기동작전이 초공세적인 ‘신 공세적 작전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군사연구 제147호』, ‘지상작전사령부 창설에 따른 지상군 발전방안연구’, 2019. 6. 30).

- 초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는 부대를 창설하는 것은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평양 선언에 위배된다.

③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군 구조 슬림화를 지향하는 국방개혁에 역행 한다

- 국방개혁의 핵심목표 중 하나는 방만한 군 구조를 슬림화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 국방부가 1, 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작사를 창설하고, 군단과 사단의 수를 줄이는 등 군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다.
-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은 여전히 전체 병력감축의 목표를 50만 대군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이에 연동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고급장교 정원의 의미 있는 감축이 이뤄지지 않는 등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되고 있다.
- 초공세적 입체기동작전 수행을 앞세운 신속대응사단 창설은 부대와 병력 유지로 장성과 고급장교의 직위를 보장하기 위한 육군의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시대 흐름과 군 구조 슬림화 및 국방개혁에 역행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신속대응사단 창설을 위한 공정사단 본부와 공정여단 A 개편, 공정여단 B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

5. 삭감요구액

- 관련한 3억 4100만 원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

[2020 국방예산에 정부안에 대한 평통사 의견서 개요]

- 방위사업청 분야 -

1.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폐기된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에 그대로 반영한 반문민통제적, 반국방개혁적, 반평화적 예산안입니다.

- 국방부는 2018년 7월 국방개혁 2.0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폐기하였으며, 선제공격의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도 “핵, WMD 위협 대응체계”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공세적 신작전개념’과 3축 체계를 실행하기 위한 부대와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킬체인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 F-35 도입,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도입 및 개발(R&D), 합동직격탄(JDAM) 도입을 계속하고 있으며, 정밀타격능력을 갖춘 지대지(현무 B), 공대지(타우러스), 함대지(해성 2), 잠대지(해성 3) 등의 전력도 강화하고 있고, 특히 SLBM 능력을 갖춘 전략무기 중형 잠수함(3000톤)도 9척이나 도입할 계획입니다.
- 나아가 중항공모함인 대형수송함-II 건조와 상륙기동헬기, 상륙돌격장갑차 II(R&D) 등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 강화 등 입체적 고속상륙작전이라는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고성능 최첨단 공세전력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전과 함께 평양에 투입될 공정사단 성격의 신속대응사단도 창설할 예정이며, 이들을 수송하기 위한 한국형 기동헬기 추가 양산과 대형 수송헬기의 추가 도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렇듯 국방부는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폐기해 놓고 작전적 차원과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에서는 이를 그대로 온존시키는 얽은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평화 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를 거스르며 구시대 냉전적 대결 의식과 기득권 사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군부의 이해관계가 관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성격의 2020년 국방예산은 반문민통제적, 반국방개혁적 예산이자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제 4조, 5조 1항)과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발동을 허용한 유엔헌장 51조에 반하는 반평화적 예산입니다.
- 대북 공세전략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군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군부를 문민통제하고, 국방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방예산의 대폭 삭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남북 군사적 신뢰, 군축,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2.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역외/원양작전을 위한 전력 구축 비용이 대거 반영되어 있어 한국군이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을 높이고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안입니다.

- 국방부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한다거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한다며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항모(대형수송함-II)와 중형잠수함 건조,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광개토-III Batch-II) 도입, 사거리 1500km의 순항 미사일(현무 3) 배치, 사거리 800km의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 개발, 작전반경이 2200km에 달하는 잠수함 탐지용 해상초계기 II(P-8A)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 등도 이미 도입했거나 추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무기체계들은 한국 방어보다는 한반도 작전반경을 넘어서 중국을 겨냥하고 나아가 남중국해나 중동까지를 작전지역으로 하는 역외/원양작전용 무기체계들입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체 구성과 항행의 자유 작전 참가 요구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중 봉쇄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주도의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 참가 등은 한국군이 이지스 구축함에 SM-3 블록II A 등을 탑재해 북중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미국방어에 동원될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미국은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개정해 한국군의 미국 방어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국 방어를 넘어서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중국 포위, 미국 방어를 위한 군사력 건설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불모로 한 위험한 역외/원양작전을 막기 위해서 관련 예산의 삭감이 절실합니다.

3. 2020 국방예산 정부안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보강’을 명분으로 약 2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예산입니다.

- ‘국토방위와 평화통일, 지역안정과 세계평화 기여’라는 국방목표와 합리적 방어 충분성

에 기초한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개념을 수립하고 이에 부응한 방어 전력을 구축한다면 한미연합군의 초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항공모함, 대형수상함, 중형잠수함, F-35 등 선제타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는 필요 없게 됩니다.

- 전략과 작전에서의 대미 종속은 고성능의 공세적 미국산 무기 도입을 강요하며 공세적 무기 도입은 역으로 전략과 작전의 공세성을 강제합니다. 결국 전략, 작전, 무기체계의 대미 종속은 전작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전작권 환수를 구현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탈피하려면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181) 선행연구/분석평가 (2636-300) 중
대형수송함-Ⅱ(LPX-Ⅱ)**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신규		4,130		4,13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¹⁴⁾

- 다목적 합동 전력으로 단거리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수송함(LPX-Ⅱ)을 확보해 해군의 상륙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기동부대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
- 북한의 군사적 위협,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요인의 다양화와 범위 확대에 대비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해상 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은 불필요한 과도 전력

- 남한 해군력은 함정 240척에 총 21만 7천 톤, 북한 해군력은 함정 770척에 총 11만 1천 톤으로 남한이 북한을 총 톤수에서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 한

14) 해군본부, 「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2019. 10. 10

편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35척에 48만 8천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60척에 189만 9천 톤으로 일본은 총 톤수에서 남한의 2배 이상, 중국은 총 톤수에서 남한의 9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군비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일본 방위백서 2019』, 46쪽).

- 한국군은 이미 상륙 병력 700명과 승조원 330여 명, 헬기 7대, 수륙양용차 7대, 전차 6대, 야포 3문, 공기부양상륙정(LCAC) 2대, 트럭 10대 등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영하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주변국들은 이들 대형수송함을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 부르고 있는데, 유사시 대북 공세적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전력들이다.
- 그러나 이들 대형수송함들이 한국군의 공세적 작전개념에 따라 개전 초기에 북한의 지대함 등의 사거리 안에서 공세적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해·공군의 엄호사격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공모함, 그것도 4만 톤의 중항공모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해군의 과도한 욕심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중심작전 등 대북 공세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 지상 기지에서 전투기나 헬기 등 각종 항공기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진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도 있다. 중항공모함 역시 12~20대의 전투기와 8~10대의 공격헬기를 탑재하더라도 휴전선 이북 동해나 서해에서 작전할 경우 북한의 포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호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북한군의 사거리를 벗어난 휴전선 이남 해상에서 작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군사적 효용성은 매우 낮다.
- 이에 다코다 우리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2019. 10. 3)에서 “한반도 동·서해의 과밀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대형 상륙함(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주변국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대형수송함-Ⅱ’는 배수량 4만 톤으로 720명의 승조원에 12대의 전투기와 8대의 헬기 등 20기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항공모함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세전력으로 주

변국들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비한다는데 도대체 군은 어떤 (성분) 작전에 중항공모함을 투입하려는 것인가? 주변국 본토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전투기로 공격하기 위해 투입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가 함정들과 수상전이나 대잠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항공모함을 투입할 것인가?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 해상 교전이 발생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거리, 시간, 보유 척수의 제약과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수가 작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 항공모함이 원양에서 주변국 함정과 교전하는 것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상정해서도 안 된다.
-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위협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침공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무력침공을 하더라도 남한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인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한반도와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할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항공모함을 파견할 것도 아니다.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미국도 구축함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도 대 이란 군사 연합체 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항공모함을 파견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대 이란 군사 연합체 구성을 함의하는 파견을 요구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처럼 한국군이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이라크 침공에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희생시키고 중동국가들과 등을 지게 하는 파병은 국익을 손상시킬 뿐으로, 이런 작전에 항공모함 등의 해군 전력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 이렇듯 남한 해군의 그 어떤 한반도 역외 (성분) 작전에도 항공모함을 파견해 대응해야 할 사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군이 중항공모함 소요를 제기하는 것은 힘자랑하기 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③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뿐, 오히려 군축에 나서야

- 한국은 이미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2척의 경항공모함을 운영하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으며, 세 번째 항공모함 도입에 착수했다. 동북아에서 항공모함 도입은 미국의 아태 지역 해군력 증강과 항공모함 등의 전진 배치에 맞서 중국이 선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그 뒤를 따르면서 한·중·일 간 항공모함 등 해군력을 둘러싼 군비경쟁이 치열하다.
-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남·북·일·중 간 해군력 격차는 국가들 상호 간 군비경쟁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군비경쟁은 각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출혈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 나아가 군비증강에 따른 군사적 대결의 격화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 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더욱 고착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게 된다. 따라서 대북 압도적인 해군력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이 중항공모함의 도입 등으로 동북아의 해군력 경쟁에 가세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에 맞춰 해군력 감축을 단행해 동북아 국가들의 군축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뿐

- 그렇지 않고 중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그에 따른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이 전력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이다. 미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는 중국을 인도-태평양의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의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과거 부시 행정부의 소위 ‘악의 축’ 개념을 되살리는 한편 더 나아가 부시 행정부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와 패권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미 7함대 사령부는 지난 10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복서 상륙준비단(ARG)과 해병 11원정단(MEU)이 지난 9월 23일 5함대에서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7함대에 항모급 강습상륙함 ‘복서함’과 해병 원정단을 합류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7함대 작전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2019년 말까지 7함대에 미 해군의 최신형 항모급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함’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도 아태 지역에 대한 해군력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의)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VOA, 2019. 9. 3).
- 한국 해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동부대 및 해역 함대의 작전능력 강화와 주요 핵심전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형수송함-Ⅱ(LPX-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도 있어

- 중항공모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미중, 북미 유사시 항모 전단의 전투기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ICBM 기지를 타격함으로써 미국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항공모함 전단의 KDX-Ⅰ, Ⅱ, Ⅲ 구축함, KDDX 사업으로 도입될 구축함, 장보고-Ⅲ 잠수함 등은 수직발사관 등을 탑재해 사거리 800km 이상의 현무-2C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의 현무 3B나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 순항미사일(천룡)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중국의 동·북 연안과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도 한국 중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나 함정들의 함대지 공격능력은 미국에게 아주 매력적인 공세전력이다. 대북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군이 남아나는 전력을 주변국, 특히 중국 상대로 행사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미, 미중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을 공격할 중국군과 북한군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때 한국군의 1차적 공격 대상은 중국군과 북한군의 ICBM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가 될 것이다. 또한 발사 직후의 중국과 북한의 ICBM을 이지스함으로 요격하는 작전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중국,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군의 미국 방어에의 참여는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가져올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 한편 한국이 미국 방어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적용 범위)와 관련 미 상원의 양해사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짓이다.

⑥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예산낭비가 우려됨

- '대형수송함-Ⅱ'는 건조에만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9. 10. 10). 이 항공모함에 탑재될 F-35B 12대와 헬기 8기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2조 원에 상당한다(일본의 F-35B 도입 비용과 한국의 수리온, 마린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또한 운영유지비도 10년에 1조 5000억~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항공모함 도입은 2~3척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정비, 고장, 사고 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3척을 도입하게 되면 무려 20조 원 안팎의 비용이 들게 된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국방예산의 증액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2~3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할 만큼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이 결코 어렵지 않다.
- 한국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기동함대의 모함이 될 대형 수송함-Ⅱ를 비롯해 장보고 III Batch-I, II, III 사업, KDX-3 Batch-I, II 사업이나 KDDX 사업 등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들과 수송함 등을 도입하여 2개 기동전단을 새로 편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무려 20조 원을 훨씬 넘어선다.

-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는 실로 숨 가쁘다. 한국 GDP는 일본 GDP의 1/3에도 못 미치는 데 반해 국방예산은 일본과 비슷하다. 또한 한국 GDP는 중국 GDP의 약 1/8인데 반해 국방예산은 1/6을 넘는다.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이 일본은 1.0% 안팎, 중국은 1.9%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2.6%나 된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국방비 증가의 이유로 내세우나 일본도 중국과 북한 위협을 내세우고,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인도 위협을 내세운다.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면서도 소위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숨 가쁘게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핵무장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재래식 전력 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50조 원을 넘어선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중형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등의 도입 계획부터 폐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한반도 안보환경이나 남북 간, 남·북·일·중 간 해군력 비교, 항공모함 도입과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항공모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과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 정세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미일 연합군의 뒤를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되고 미국 방어에도 동원될 수 있는 등 국가안보에 미칠 부작용은 원하지 않는 전쟁 가담으로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또한 과도한 비용으로 사회복지비를 잠식하고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실로 크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5. 삭감요구액

- 대형수송함-Ⅱ(LPX-Ⅱ) 예산 41억 30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대형수송함- II (LPX- II)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신규		27,100 ¹⁵⁾		27,100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¹⁶⁾

- 다목적 합동 전력으로 단거리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대형 수송함(LPX- II)을 확보해 해군의 상륙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기동부대 작전수행 능력을 향상
- 북한의 군사적 위협,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요인의 다양화와 범위 확대에 대비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해상 전력으로서의 항공모함은 불필요한 과도 전력

- 남한 해군력은 함정 240척에 총 21만 7천 톤, 북한 해군력은 함정 770척에 총 11만 1천 톤으로 남한이 북한을 총 톤수에서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 한

15) 국방부, 「2020년 국방예산 정부안 보도자료」, 2019. 8. 28 / 방위사업청,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2019. 10. 21.

16) 해군본부, 「2019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2019. 10. 10.

편 일본의 해군력은 함정 135척에 48만 8천 톤, 중국의 해군력은 함정 760척에 189만 9천 톤으로 일본은 총 톤수에서 남한의 2배 이상, 중국은 총 톤수에서 남한의 9배, 일본의 약 4배에 달해 상호 간 군비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일본 방위백서 2019』, 46쪽).

- 한국군은 이미 상륙 병력 700명과 승조원 330여 명, 헬기 7대, 수륙양용차 7대, 전차 6대, 야포 3문, 공기부양상륙정(LCAC) 2대, 트럭 10대 등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운영하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주변국들은 이들 대형수송함을 사실상 경항공모함으로 부르고 있는데, 유사시 대북 공세적 상륙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전력들이다.
- 그러나 이들 대형수송함들이 한국군의 공세적 작전개념에 따라 개전 초기에 북한의 지대함 등의 사거리 안에서 공세적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것은 해·공군의 엄호사격 등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항공모함, 그것도 4만 톤의 중항공모함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해군의 과도한 욕심이다. 한반도 유사시 중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중심작전 등 대북 공세작전을 전개하는 데서 아무런 군사적 효용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남한 지상 기지에서 전투기나 헬기 등 각종 항공기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진할 수 있는 조건에서 항공모함은 전투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아예 불필요할 수도 있다. 중항공모함 역시 12~20대의 전투기와 8~10대의 공격헬기를 탑재하더라도 휴전선 이북 동해나 서해에서 작전할 경우 북한의 포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호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북한군의 사거리를 벗어난 휴전선 이남 해상에서 작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 군사적 효용성은 매우 낮다.
- 이에 다코다 우리 미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2019. 10. 3)에서 “한반도 동·서해의 과밀한 전장 환경을 고려하면 대형 상륙함(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② 주변국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 증가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대형수송함-Ⅱ’는 배수량 4만 톤으로 720명의 승조원에 12대의 전투기와 8대의 헬기 등 20기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항공모함이다. 그렇다면 이런 공세전력으로 주

변국들의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비한다는데 도대체 군은 어떤 (성분) 작전에 중항공모함을 투입하려는 것인가? 주변국 본토에 해병대를 상륙시키고 전투기로 공격하기 위해 투입할 것인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가 함정들과 수상전이나 대잠전을 수행하기 위해 중항공모함을 투입할 것인가?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 해상 교전이 발생해 이에 대응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다. 거리, 시간, 보유 척수의 제약과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수가 작기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매우 낮다. 항공모함이 원양에서 주변국 함정과 교전하는 것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상정해서도 안 된다.
- 주변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는 위협관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이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남한과 적대관계에 있지 않으며,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침공 할 가능성이 없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무력침공을 하더라도 남한 전력으로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다. 중국은 육·해·공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할 수 있는 승수를 갖추고 있지만 러시아, 인도 등 16여 개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한반도와 무력분쟁 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을 무력침공 할 전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남중국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항공모함을 파견할 것도 아니다.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는 미국도 구축함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도 대 이란 군사 연합체 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항공모함을 파견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대 이란 군사 연합체 구성을 함의하는 파견을 요구한다면 이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공처럼 한국군이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이라크 침공에 동원되어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희생시키고 중동국가들과 등을 지게 하는 파병은 국익을 손상시킬 뿐으로, 이런 작전에 항공모함 등의 해군 전력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 이렇듯 남한 해군의 그 어떤 한반도 역외 (성분) 작전에도 항공모함을 파견해 대응해야 할 사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군이 중항공모함 소요를 제기하는 것은 힘자랑하기 위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③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게 될 뿐, 오히려 군축에 나서야

- 한국은 이미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2척의 경항공모함을 운영하거나 전력화를 앞두고 있으며, 세 번째 항공모함 도입에 착수했다. 동북아에서 항공모함 도입은 미국의 아태 지역 해군력 증강과 항공모함 등의 전진 배치에 맞서 중국이 선도하고 일본과 한국이 그 뒤를 따르면서 한·중·일 간 항공모함 등 해군력을 둘러싼 군비경쟁이 치열하다.
-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남·북·일·중 간 해군력 격차는 국가들 상호 간 군비경쟁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군비경쟁은 각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출혈을 강제하게 될 것이다.
- 나아가 군비증강에 따른 군사적 대결의 격화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 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을 더욱 고착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가로막게 된다. 따라서 대북 압도적인 해군력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이 중항공모함의 도입 등으로 동북아의 해군력 경쟁에 가세하기보다는 오히려 남북관계의 발전에 맞춰 해군력 감축을 단행해 동북아 국가들의 군축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④ 필연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될 뿐

- 그렇지 않고 중항공모함 등 대형 함정들을 잇달아 도입하고 그에 따른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이 전력들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전략에 동원되는 것은 필연이다. 미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는 중국을 인도-태평양의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재래식 전력의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과거 부시 행정부의 소위 ‘악의 축’ 개념을 되살리는 한편 더 나아가 부시 행정부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와 패권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미 7함대 사령부는 지난 10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복서 상륙준비단(ARG)과 해병 11원정단(MEU)이 지난 9월 23일 5함대에서 7함대 작전구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7함대에 항모급 강습상륙함 ‘복서함’과 해병 원정단을 합류시켜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려는 것이다.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7함대 작전 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으며, 2019년 말까지 7함대에 미 해군의 최신형 항모급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함’과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함’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도 아태 지역에 대한 해군력 증강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의)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VOA, 2019. 9. 3).
- 한국 해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동부대 및 해역 함대의 작전능력 강화와 주요 핵심전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형수송함-Ⅱ(LPX-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도 있어

- 중항공모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미중, 북미 유사시 항모 전단의 전투기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ICBM 기지를 타격함으로써 미국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항공모함 전단의 KDX-Ⅰ, Ⅱ, Ⅲ 구축함, KDDX 사업으로 도입될 구축함, 장보고-Ⅲ 잠수함 등은 수직발사관 등을 탑재해 사거리 800km 이상의 현무-2C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의 현무 3B나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 순항미사일(천룡)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중국의 동·북 연안과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때도 한국 중항공모함 탑재 전투기나 함정들의 함대지 공격능력은 미국에게 아주 매력적인 공세전력이다. 대북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군이 남아나는 전력을 주변국, 특히 중국 상대로 행사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미, 미중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을 공격할 중국군과 북한군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때 한국군의 1차적 공격 대상은 중국군과 북한군의 ICBM 기지나 이동식 발사대가 될 것이다. 또한 발사 직후의 중국과 북한의 ICBM을 이지스함으로 요격하는 작전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이 중국,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군의 미국 방어에의 참여는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가져올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 한편 한국이 미국 방어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적용 범위)와 관련 미 상원의 양해사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짓이다.

⑥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예산낭비가 우려됨

- '대형수송함-Ⅱ'는 건조에만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9. 10. 10). 이 항공모함에 탑재될 F-35B 12대와 헬기 8기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2조 원에 상당한다(일본의 F-35B 도입 비용과 한국의 수리온, 마린온을 기준으로 할 경우). 또한 운영유지비도 10년에 1조 5000억~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항공모함 도입은 2~3척으로 확대되기 마련이다. 정비, 고장, 사고 시 전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을 앞세우기 때문이다. 3척을 도입하게 되면 무려 20조 원 안팎의 비용이 들게 된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국방예산의 증액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2~3척의 항공모함을 운영해야 할 만큼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이 결코 어렵지 않다.
- 한국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기동함대의 모함이 될 대형 수송함-Ⅱ를 비롯해 장보고 III Batch-I, II, III 사업, KDX-3 Batch-I, II 사업이나 KDDX 사업 등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들과 수송함 등을 도입하여 2개 기동전단을 새로 편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무려 20조 원을 훨씬 넘어선다.

-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는 실로 숨 가쁘다. 한국 GDP는 일본 GDP의 1/3에도 못 미치는 데 반해 국방예산은 일본과 비슷하다. 또한 한국 GDP는 중국 GDP의 약 1/8인데 반해 국방예산은 1/6을 넘는다.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이 일본은 1.0% 안팎, 중국은 1.9%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2.6%나 된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국방비 증가의 이유로 내세우나 일본도 중국과 북한 위협을 내세우고,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인도 위협을 내세운다.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면서도 소위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숨 가쁘게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핵무장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재래식 전력 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50조 원을 넘어선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중형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등의 도입 계획부터 폐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한반도 안보환경이나 남북 간, 남·북·일·중 간 해군력 비교, 항공모함 도입과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검토해 보았을 때 항공모함 도입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대결과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번영 정세에 역행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미일 연합군의 뒤를 따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되고 미국 방어에도 동원될 수 있는 등 국가안보에 미칠 부작용은 원하지 않는 전쟁 부담으로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우려해야 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또한 과도한 비용으로 사회복지비를 잠식하고 국민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실로 크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5. 삭감요구액

- 대형수송함-Ⅱ(LPX-Ⅱ) 예산 271억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107) 장보고-Ⅲ Batch-Ⅱ(2332-323)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 (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30,148	132,614	102,466	132,614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자주국방 구현과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장보고-Ⅲ Batch-Ⅰ 보다 성능이 향상된 중형 잠수함을 국내 설계 및 연구개발로 확보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 및 삭감 이유

① 자주국방 구현이라는 사업목적의 허구성 : 북한 잠수함 위협의 허구성

- 남북 잠수함 전력은 양적 비교에서는 24 대 70으로 북한이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은 다수가 300톤 미만의 잠수정으로, 잠수함은 로미오급(1800t) 20척과 신포급(2000t) 1척으로 남한 보유 잠수함과 숫자와 비슷하다.
- 그러나 질적 측면을 보자면 북한 잠수함의 주력인 로미오급은 1973년 중국으로부터 2척을 들여와 1976~1995년에 자체 건조한 구형 잠수함이다. 반면 남한의 주력함인 214급(1800t) 잠수함은 2006~2017년에 진수된 최신예 잠수함이며, 1993~2000년에 취역한 209급(1200t) 잠수함도 비교적 신형이다.

- 남한의 214급 잠수함은 수중 최대속도가 20노트로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의 수중 최대속도 13노트보다 훨씬 빠르다. 또한 214급 잠수함은 공기불요추진(AIP) 체계를 탑재해 약 2주간 잠항(4노트 운항 시)할 수 있고 소음이 작아 정숙한 반면, 로미오급은 하루에 2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스노클링을 해야 하고 소음이 매우 커 작전수행능력에서 214급이 로미오급보다 훨씬 뛰어나다. 또한 214급은 16기의 21인치 어뢰를 장착할 수 있는 반면에 로미오급은 8기밖에 장착할 수 없어 무장력에 있어서도 214급 잠수함이 로미오급을 압도하고 있다. 특히 214급은 사거리 500km 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 천룡을 장착할 수 있으며, 209급도 함대지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북한 잠수함의 함대지 공격능력은 신포급(2000t) 1척으로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위키백과 등).

<표1> 남북 잠수함 전력비교(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 『해군 2018』)

	북한		남한	
	구분	수량	구분	수량
SSB	신포-C급(2000톤)	1		
SSK	로미오급(1800톤)	20	209급 (장보고-I)(1200톤)	9
			214급(장보고-II) (1800톤)	9
SSC	상어급(350톤)	32	코스모스(70톤)	6
	상어급-II		돌고래(150톤)	
SSW	유고급(90톤)	20		
	연어급(130톤)	약간		

- 구형의 북한 잠수함들은 소음이 매우 크고-로미오급은 ‘바다의 경운기’로 불림-잠수 깊이가 낮아 동해나 서해로 남하할 경우 P-3C, P-3CK, P-8A(도입 중) 대잠초계기나 수중에 설치된 집음장치 등에 의해 대부분 탐지해 낼 수 있다. 아울러 북한 잠수함은 잠수 깊이가 얕아 폭뢰 등의 공격에 취약하며 탐지 장비의 성능도 낮고 무장력도 떨어져서 작전 능력이 매우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방일보 등).
- 이렇듯 북한 잠수함 위협론은 근거 없는 과장된 주장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북한 잠수함 위협론을 명분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9척이나 도입하는 국방부의 계획은 터무니없다.

② 핵잠수함(SSN) 도입 군불 지피기 : 핵잠수함 도입 근거의 허구성

- 남한 사회 일각에서 3000톤급 잠수함 도입 사업(장보고 III Batch-I, II, III) 중 Batch-III 사업을 핵잠수함(SSN)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SLBM (북극성-1, 2, 3) 수중발사에 성공하고 이를 탑재할 신포급 잠수함을 개량해 발사관을 늘리거나 신포급보다 큰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를 근거로 내세우며, 이를 탐지·추적·공격하기 위해서는 남한도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남한 해군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TF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뉴시스, 2019. 10. 10).
-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SSN)을 보유해야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SSB)을 탐지·추적·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해서 디젤 잠수함보다 탐지·추적·공격 능력이 우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디젤 추진 잠수함이 핵추진 잠수함보다 탐지·추적·공격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잠수함의 다른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핵추진 잠수함이 디젤 추진 잠수함보다 유리한 것은 추적 시 스노클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 추진 잠수함보다 일반적으로 소음이 더 크고 회전 반경도 커서 추적에 불리한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이 추적에 유리,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작전으로 한정해서 보면 동·서·남해에서의 작전은 항행 거리가 짧고 작전 기간도 짧아 최대 2주 잠항능력을 갖는 장보고-II나 3주 잠항능력을 갖는 장보고-III라면 얼마든지 북한 잠수함에 대한 탐지·추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굳이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SLBM 대응 핵추진 잠수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일 예비역 해군 대령, 2016. 10. 12 ;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효용성 검토」, 장진호, 정제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2017. 8. 12 등 참조)
-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면 이는 필히 예산낭비로 이어진다. 장보고-III 잠수함 도입에 7~8,000억 원의 비용이 든 반면 동급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거의 2배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건조 실패나 안전성의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또한 미국, 일본 등의 견제와 국제사회의 비판도 감수해야 하는 등 정치적 부담도 결코 적지 않다. 그런데도 굳이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매달리는 것은 소위 대양해군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③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처라는 사업목적의 허구성

- 김영삼 정부에 의해 차기 중형 잠수함 소요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 그 명분은 냉전 해체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붕괴된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중국의 강력한 대량살상무기 전력에 대응하여 최소한 중국의 핵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격능력을 갖춰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수단을 구축하고자 했”으며, 이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중국의 선제타격이 불가능한 잠수함 탑재형 순항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밀리터리 리뷰, 2011. 6. 21).
- 그러나 상호 불가침 등을 천명한 한중 외교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과 수교(1992년), 그리고 한중 경제관계가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시기에, 그것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주관적 희망에 기대 김명삼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정세 판단 하에 사생아처럼 태어난 것이 다름 아닌 차기 중형 잠수함 소요 제기였다.
- 따라서 차기 중형 잠수함 사업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감행하면서까지 건재를 과시하고 한중 경제협력도 본 궤도에 오른 김대중, 노무현 정권 하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오히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원양 해군 건설을 강조하며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 등 기동전단 구축에 힘을 실었다. 원양 해군 건설은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힘을 잃는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발발하고 북한 핵실험이 계속되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북 위협 우선 대응 주장에 힘을 실어 원양 해군 건설 주장은 잠시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해군이 공개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TF 팀까지 구성하는 등 대형 함정 건조와 원양 해군론은 다시 적극적인 힘을 받고 있다.
- 그러나 다양한 해양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해군 주장은 근거 없는 맹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군이 해양위협의 사례로 드는 것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상수송로 위협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해상수송로를 위협 당하면 생명줄이 끊긴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미국은 중국을 상정한다. 그러나 중국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로, 스스로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까닭이 없다. 만약 중국이 해상수송로 차단에 나선다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한국 해군이 제아무리 원양 해군을 양성해도 이를 돌파할 수 없다. 중국 해군은 한국 해군보다 전력이 훨씬 우위에 있고 연안과 근해에서

싸우는 반면 한국 해군은 원정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승산이 없다. 한미일 연합 해군이 대응해도 육지의 화력 지원을 받는 중국 해군을 상대로 승리하기는 어렵다.

- 사실 해양수송로란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미국의 '침략 경로'다. 곧 미국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패권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허구로 밝혀진 '소련 위협론'을 명분으로 일본열도 '불침 항모론'과 '1000해리 해양수송로 방어'(?를 위한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관철시킨 바 있으며, 지금은 '중국 위협론'을 명분으로 제주도 '불침 전함론'과 제주도 남방 해상수송로 보호를 위한 한국 해군력 증강과 동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상수송로 차단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상함과 잠수함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1800톤 214급 잠수함이면 원양 원정 작전을 수행하는 데 전혀 손색이 없다.
- 군은 또한 독도나 이어도 수호를 위해 대형 함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나 이어도는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군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해결되지도 않는다. 일본이 독도를, 중국이 이어도를 군사적으로 점령한다면 오히려 패착이 되어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패배하게 된다. 독도와 이어도의 육지와 육지 군사시설 위치에 따른 군사적 유, 불리를 굳이 따지자면 독도는 일본이 유리하며, 이어도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 유리하다.
- 이렇듯 해양수송로 위협을 구실로 한 원양 해군 건설과 항공모함을 비롯한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 도입 주장은 해양위협을 왜곡, 과장한 무책임한 주장이다.

④ 대중 포위와 인도·태평양 패권전략에 동원될 위험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을 잇달아 도입하고 기동부대를 창설하게 되면 이들 전력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되리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미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전력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과거 부시 행정부의 소위 '악의 축' 개념을 되살리는 한편 부시 행정부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와 패권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제적, 군사적 부상에 따른 중국의 인도·태평양 패권 도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 이에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해군력을 동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며 “(미국이) 도련선을 앞세워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에 홀로 맞서기는 어렵다”면서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고의 조선 역량을 갖고 있고,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에 (남중국해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 등에 대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VOA, 2019. 10. 10).
- 한국 해군은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 구현되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기동부대 및 해역함대의 작전능력 강화와 주요 핵심전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⑤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

- 중형 잠수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미중, 북미 유사시 중형 잠수함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이용해 중국과 북한의 ICBM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미국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장보고-Ⅲ 잠수함은 수직발사관 등을 탑재해 사거리 800km의 현무-2C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km 현무 3B나 사거리 1500km의 현무 3C 순항미사일(천룡)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중국의 동·북 연안과 내륙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북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한국군이 남아 있는 전력을 주변국, 특히 중국 상대로 행사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

성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미국은 한국에 이른바 ‘한미 동맹 위기관리 각서’를 개정해 현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북미, 미중 간 유사시 한국군은 미국을 공격할 중국군과 북한군을 공격해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때 한국군의 1차적 공격 대상은 중국군과 북한군의 ICBM 기지나 이동 발사대가 될 것이다. 장보고 III Batch- I, II, III 사업으로 도입될 중형 잠수함의 잠항 능력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은 미국 방어를 위한 대중, 대북 공격에서 북중이 방어하기 어려운 가장 위협적인 공격력으로 될 것이다. 더구나 중형 잠수함은 일정 규모의 특수부대를 탑승시킬 공간도 있어 은밀하게 기동한 후 북중 전략시설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는 전략무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발사 직후의 중국과 북한의 ICBM을 이지스함으로 요격하는 작전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성공 여부와 관계 없이 한국이 중국, 북한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군의 미국 방어 가담은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것으로, 국가적, 민족적 절멸을 가져 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 한편 한국이 미국 방어에 개입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적용 범위)와 관련 미 상원의 양해사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와 관련 양해사항은 조약의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한국을 미국 방어에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짓이다.
- 장보고 III Batch- I, II, III 사업은 중형모 도입 사업이나 KDX-3 Batch- I, II 사업, KDDX 사업 등과 함께 사실상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과 미국 방어에 동원 될 자산들로 모두 남한 방어에는 효용성이 거의 없는 무기체계들이다.

⑥ 무한대 군비경쟁과 국방예산 폭증과 예산낭비가 우려됨

- 장보고 III Batch- I, II, III 사업은 그 자체로만 최소 10조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장보고 III Batch-III를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남한 방어에 그다지 효용성이 없는 무기체계 도입에 이 많은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
- 한국이 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승격시키기 위해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는데 드는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장보고 III Batch- I, II, III 사업, 대형수송함 II, KDX-3 Batch- I, II 사업이나 KDDX 사업, 등 대형 수상함과 중형 잠수함들과 수송함 등을 도입하여 2개 기동전단을 새로 편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무려 20조 원을 훨씬 넘어선다.

- 한국의 국방예산 증가는 실로 숨 가쁘다. 한국 GDP는 일본 GDP의 1/3에도 못 미치는데 반해 국방예산은 일본과 비슷하다. 또한 한국 GDP는 중국 GDP의 약 1/8인데 반해 국방예산은 1/6을 넘는다. GDP 대비 국방예산의 비율이 일본은 1.0% 안팎, 중국은 1.9%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2.6%나 된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을 국방비 증가의 이유로 내세우나 일본도 중국과 북한 위협을 내세우고,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인도 위협을 내세운다.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면서도 소위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숨 가쁘게 재래식 전력의 증강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 더 핵무장에 매달리게 된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재래식 전력 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 50조 원을 넘어선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중형 항공모함, 대형 수상함, 중형 잠수함 등의 도입 계획부터 폐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장보고-III Batch- II 사업은 남한 방어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전략 수행에 동원되거나 심지어는 미국 방위에 동원되어 중국이나 북한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을 해야 하는 국가적, 민족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북미, 미중 간 대결을 격화시켜 판문점·평양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싱가포르 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장보고-III Batch- II 사업은 즉각 중단되고, 관련 예산도 전면 삭감되어야 한다.

5. 삭감요구액

- 장보고-III Batch- I 예산 1326억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111) 보라매(R&D) (2431-302)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가(B-A)	삭감 요구액
국방부	계속	664,191	1,040,255	376,064	1,040,255

2. 국방부(방사청)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사업 목적

-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F-4, F-5)를 대체하기 위해 2020년대 전장 환경에 적합한 미 디엄(Medium)급 다목적 전투기(KF-X)를 연구개발로 확보
-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나, 탑재되는 전자장비, 레이더 등 우수한 기종 개발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을 위해 보라매 (KF-X)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국방부는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라 우리나라 전투기 보유 대수가 2017년부터 2029년 까지 최대 370대를 넘지 못할 것으로 파악돼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남북 공군 전력 비교는 남한이 일방적인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19년ミリ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남한 전투기는 525

대, 북한 전투기는 465대로 남한이 양적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 전투기는 대부분이 3~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1950~19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질적으로도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 질적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북한 전투기 중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18대의 MIG-29뿐이다(『2019년ミリ터리 밸런스』). SU-25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행 속도가 아음속으로 공중전에는 매우 취약하다. 그런데 MIG-29는 F-35는 물론 F-15K와 비교해도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KF-16과 비교해서도 공대공 교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무기체계 양적·질적 평가』,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17~18쪽).
- 양적 측면을 좀 더 들여다보면 FA-50 양산 사업으로 60대의 로우(Low)급 전투기가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하였다. FA-50 실전배치로 남한 공군의 로우급 전력은 훨씬 향상되었다. 아울러 국방부는 F-4 팬텀은 2025년, F-5 타이거는 2030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KF-X 사업 지연에 따른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는 국방부가 그동안 운영 가능한 기종의 도태시기를 앞당겨 전투기의 수량 부족을 과장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아울러 F-35 40대 도입 확정 에 이은 20대 추가 도입 계획 등으로 하이(High)급 전투기만도 F-15K 60대를 포함 120여대에 달할 예정으로 하이급 전투기도 양적·질적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전력이 강화되었다. F-16, KF-16 등 미디엄급 전투기도 공대지 무장과 전자장비 등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미디엄급 전투기의 전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남한 전투기는 급격한 질적 위주의 전력 증강을 이루고 있으며, 설령 양적 감소가 있더라도 남한 전체 공군 전력의 공백을 우려할 사항이 전혀 아니며, 오히려 남북 공군 전력 간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② 과도하게 설정된 보라매(KF-X)의 작전 능력 요구

- 국방부는 KF-X 전투기 작전 능력에 대하여 기동성은 KF-16과 유사하나, 쌍발엔진에다 탑재 장비는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IRST(적외선 탐지·추적 장치), EG TOP(전자광학 표적추적장치), RF 재머(전자파 방해 장비) 등을 비롯한 항전 장비에다 부분적이거나 스텔스 기능까지 4.5세대 전투기를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이는 최초로 KF-X 소요를 결정한 합동참모회의 방침(2002년)을 위배한 과도한 작전 능력 요구다. 당시 합동참모회의 결정은 “첨단전투기(하이급)는 직구매하고 기반 전투기(미디엄급 또는 로우급)는 국내 생산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방사청과 공군은 KF-X를 F-15K(4세대)의 성능을 뛰어넘어 F-35(5세대)에 필적하는 하이급 전투기로 건조하려고 하고 있다. 로우급의 FA-50 60대 이외에 모든 전투기를 하이급으로 보유하려는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 KF-X에 대한 과도한 작전 능력 요구 중 대표적인 것이 스텔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스텔스 기능은 현시점에서는 5세대 전투기를 상징한다. 그러나 KF-X가 양산되는 시점에서는 대스텔스 기능의 일반화로 더 이상 5세대 전투기를 상징하는 기술이 아니다. VHF 대역(150~300MHz) 전파는 그 파장이 1~2m로 길어 스텔스 형상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단순한 신호처리 개선과 대형 탄두미사일을 결합하면 스텔스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다(“F-22/F-35 요격될 수도 있는 이유 : 저주파 레이더, 스텔스기 탐지 가능 … 신호처리 개선으로 미사일 유도까지”, 『월간 항공』, 2018. 2, 80~81쪽). 스텔스 기능을 저평가하다가 스텔스 기능을 내세워 F-15SE를 F-35로 졸속 바꿔치기하는 데 앞장선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2013. 9. 3)고 밝혔으며, 전 미 해군 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레이더 기술 속에서 스텔스나 레이더 회피 기술의 가치가 의문”(2012. 7. 10)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 국방부도 “대스텔스 기능이 확산되어 전투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2014 QDR, 7쪽”)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기술 수준은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워 KF-X 블록-I에서는 구현도 하지 못하고 블록-II, III 등에서 단계적으로 구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른 개발 지연과 비용 증대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듯 KF-X에 스텔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제작비를 2조 원(?)이나 늘리고 개발 시기를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 미디엄급 전투기라면 굳이 스텔스 기능, 그것도 몇 년 후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사라질 스텔스 기능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 공군은 또한 KF-X에 F-15K 등 하이급 전투기의 공대지 무장능력을 탑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쌍발엔진에 F-16보다 큰 동체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견고한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AGM-142, GBU-28, 타우러스 미사일 같은 고중량의 공대지 무기를 장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하시설 공격을 기본 전제로 한 공세적 군사전략은 남북 대결과 군비경쟁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남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투기가 파괴력이 큰 고중량의 공대지 무기를 탑재할 필요는 없다.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한 SEAD 작전이나 종심작전을 수행하는 F-15K와 F-35 같은 하이급 전투기만 장착하면 된다. 미디엄급 전투기들은 영토를 침공하는 적기를 요격하는 임무가 주된 임무이며, 따라서 요격능력을 기본 성능으로 갖춰야 한다. 그러나 남한 공군은 F-16 미디엄급 전투기도 성능 개량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을 늘려가고 있다. FA-50 로우급 전투기는 CAS(근접항공지원) 임무를 주 임무로 한다. 그러나 FA-50 무장 능력은 현 로우급 전투기들에 비해 월등하며 CAS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공대지 무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 공군 전투기들은 넘쳐 나는 공대지 능력을 지니고 있다. KF-X 전투기가 굳이 고중량의 공대지 무기 탑재를 이유로 쌍발엔진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이유다.

- AESA 레이더는 남한의 하이급 전투기인 F-15K에도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도입중인 F-35에만 장착되어 있다. AESA 레이더를 장착한 전투기는 미국의 F-22, F-35, FA-18E/F와 유럽의 라팔, 타이푼, 일본의 F-2, 러시아 MIG-35, SU-57, 중국의 J-20 등 남한의 하이급에 해당하는 전투기들이다. F-16 블록 60도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 KF-X는 레이더로 보더라도 하이급 전투기에 해당한다. F-35에 필적하는 4.5세대 KF-X 전투기를 미디엄급으로 한다면 하이급 전투기는 F-22와 같은 최신예 고성능 전투기이어야 하는데, 이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또한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F-22에 필적하는 고성능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KF-X를 하이급으로 개발하려는 국방부와 공군의 작전 능력 요구는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KF-X를 미디엄급으로 개발한다면 북한 공군 전력으로 볼 때 탐지거리를 늘리고 피탐 단면적을 줄인 기계식 레이더로 충분하다.

③ 핵심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업이 지연되고 부실하게 추진될 가능성 커

- KF-X 사업은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첨단 고성능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면허생산 방식을 통한 전투기 확보 과정에서 미국의 견제와 제약으로 첨단기술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방연구원(KIDA)이나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KISTEP) 등도 수차례의 사업 타당성 평가와 재평가에서 기술부족, 수출 가능성 희박 등을 이유로 KF-X 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냈었다.
- 한국은 1970년대 후반 최초로 전투기 국산화 사업으로 제공호를 조립 생산했다. 기체의

68% 정도를 국내에서 만들었지만 항공기 가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핵심 부품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고 하는 고등훈련기 T-50 사업, 경공격기 FA-50도 플랫폼만 한국이 만들었을 뿐 핵심 부품은 블랙박스화해서 미국 장비를 그대로 장착했기 때문에 첨단기술의 획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KF-X 사업도 이른바 4대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 F-35도 국방부의 스텔스 기능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으로 수의계약과 FMS 방식의 불리한 협상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절충교역 실패를 자초했다. 미국 정부의 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기술 이전 거부가 이를 말해 주며, 이전에 합의한 21개 항목에 대해서도 세부항목에서 새로운 E/L 승인 조건을 내세우거나(?) 이전 범주와 시기 등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으로 절충교역 이행이 순탄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F-35의 절충교역이 2026년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방위사업청장 발언(국회 「국방위 속기록」, 2016. 6. 30)과 이미 KF-X의 상세설계가 마무리되어 부품이 생산되고 있고 시제기가 2021년 상반기에 출시되어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F-35 절충교역에 따라 이전된 기술이 KF-X 사업에는 거의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F-35 절충교역으로 확보한 첨단기술로 KF-X를 제작하겠다는 그간의 정부 주장은 공염불이 된 것이다. 이렇듯 1~3차 차기 전투기 도입이 모두 (첨단) 기술 이전에 매우 인색한 미국 전투기를 선택함으로써 절충교역을 통한 첨단기술 확보 실패라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 AESA 레이더의 개발은 선진국도 20~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한국의 단기간에 걸친 AESA 레이더 개발은 실패하거나 부실 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성공하더라도 지체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예산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AESA 개발 사업자로 10년 동안 AESA 레이더를 개발해 온 LIG 넥스원이 탈락하고 한화 탈레스가 선정됨으로써 개발 지연과 예산 낭비(정부 연구, 개발 투자비 490억 원)는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KF-X 레이더, 선수교체로 사라진 490억 원, 그리고 ...」, SBS, 2016. 5. 1). 그럼에도 2020년 하반기에 첫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하고 시험항공기를 활용해 비행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등 AESA 개발에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입증 시제에서 탑재 시제에 이르기까지 400억 원을 들여 이스라엘 ELTA의 지원을 받는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이미 AESA 국내 독자 개발 공식은 깨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AESA를 비롯한 4대 핵심기술 개발은 체계 개발 자체보다는 개발된 체계 및 무장을 통합하는 체계통합이 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관문 또한 외국 업체의 지원 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④ FA-50 양산사업, 차기전투기(F-X) 사업 등과 중복 투자로 예산 낭비만

- 국방부는 노후 전투기 도태에 대비해 로우급 전투기 FA-50 양산사업을 추진해 60대를 도입, 실전 배치했다. 또한 F-15K 1차 40대, 2차 20대 도입에 이어 F-35 1차 40대와 F-35 2차 20대 도입 계획 등 하이급 전투기도 대량 도입하고 있다. 한편 미디엄급 F-16 전투기의 성능개량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과잉의 전투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400여 대의 전투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기준을 내 세워 개발 위험이 큰 KF-X 사업에 18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중복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전력증강사업으로 국민세금을 짊어주는 군의 전형적인 ‘묻지 마 식’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 개발비용으로 약 8조 5000억 원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국방연구원이 해외 전투기 개발업체에 문의한 결과 보잉사는 약 10조 원, EADAS는 13조~17조 원을 예상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업비가 1.5~2배가량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등 독자 개발에 나선 모든 국가들도 개발비용이 도입가를 훨씬 상회한다. 과도한 중복투자에도 기술력 없이 무리하게 첨단 전투기 개발에 나선 결과 국민 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 것이다.
- 미국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 사업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일본도 록히드 마틴사의 지원을 받아 F-2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최초 130대 생산 계획에서 최종적으로는 100대 생산에 그쳤다. 국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기술 기반은 구축했지만 최초 계획보다 2배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초에 계획했던 성능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대만도 IDF 개발을 추진했지만 개발비용의 과다와 성능 구현의 한계로 최초 260대 생산을 계획했지만 120대 생산에 그쳤다.

⑤ 수출 가능성이 낮아 손익분기점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 커

- 수출 전망도 밝지 않다. 쌍발엔진 채택-공대지 무기 등 무장능력 탑재를 늘리기 위해 -등으로 타국 전투기에 비해 단가가 높고 운영유지비도 F-15K에 달할 정도로 많이 드는데 반해 미국을 제외한 타국,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공대지 무장능력보다는 요격능력을 중시하고 막대한 운영유지비를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나 영국

등도 전투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웨덴만 낮은 단가와 운영유지비를 활용해 그나마 숨통을 트고 있을 뿐이다.

- 국내 소요로만 손익분기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300여 대의 KF-X 전투기를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보유 전투기 대부분을 하이급 전투기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과잉 전력이며, 운영유지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 따라서 개발 비용 폭증, 기술 등 생산 인프라 미비, 수출 난관 등 KF-X 사업은 타국의 사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KF-X 사업은 F-35 절충교역 실패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추진되고 있다. 이 리스크를 극복하고 국내 기술로 4.5세대 첨단 고성능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못 그리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 고양이를 그리는 데도 9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용과 양산비용까지 포함해 18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게 된다.
- 부정적 결과가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KF-X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KF-X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ROC를 낮추고 국내 기술 수준에 따른 명실상부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5. 삭감요구액

- 2020년도 예산 1조 402억 55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93)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 (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514,684	555,459	40,755	555,459

2. 국방부(방위사업청)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 효과

- ① <사업목적>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 대북 전면전 및 주변국과 해양 분쟁 등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대왕급보다 탄도탄 대응 및 대잠전 능력이 향상된 이지스급 구축함을 국내 건조로 추가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효과> 최신 이지스급 함정 확보를 통해 북의 위협으로부터의 국민 안전 보장 및 주변국으로부터 해양 주권 수호 가능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광개토-III Batch-II의 이지스 구축함 도입 목적의 허구성과 위험성

-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북한의 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해 고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허구적 주장이다. 남한은 미사일 전력에서 북한보다 우

위에 있다. 북한은 노동 미사일 200기를 포함하여 약 930기~1,25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한은 ATACMS 탄도미사일 200기와 탄도와 순항을 통틀어 현무 미사일을 800기~1,700기를 보유하고 있다.

-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 “미사일 요격·방어능력은 우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9. 11. 2). 임호영 전 합참 전략 기획본부장은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경우 총량적 측면에서 이미 북한과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만이 보유한 순항 미사일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다량의 공대지 유도 폭탄 미사일은 상당 부분 대북 우위를 점하고 있다”(경향신문, 2017. 9. 9)라고 확인한 바 있다.
- 한반도는 중심이 짧아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는 외대기권 요격용으로 대부분 내대기권을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니다. SM-3 요격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 요격용이다. SM-3블록B의 경우 요격 고도가 150~500km이며 개량형인 SM-3블록IIA의 경우 요격 고도가 1,450km에 달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탄 요격 능력 등이 향상된 이지스함을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사업 목적은 허구다.
- 더욱이 북미,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9·19 평양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핵·WMD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다는 이지스함 추가 사업은 그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 한편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해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전략표적 타격 임무를 맡기려는 발상은 전혀 타당성이 없으며 해군의 과도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대북 공세작전을 전개하는데서 전투기나 헬기 등 각종 항공기들이 보다 신속하게 발진할 수 있는 조건에서 이지스함은 전투 서열의 후순위에 놓이거나 불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허구성

- 남한은 해군력에서 북한에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남한 해군력은 함정 240척에 총 21만 7000톤, 북한 해군력은 함정 770척에 총 11만 1000톤으로 남한이

북한을 총 톤수에서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우위에 있다(『일본 방위백서 2019』 ; 『밀리터리 밸런스 2019』). 이에 남한은 북한과 전면전이나 국지전에서 현재의 전력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지스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방부 주장은 터무니없다.

- 더욱이 “북한의 해군은 동·서로 분할되어 있어 융통성 있는 작전이 제한되고,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해 작전 능력이 제한”(『국방백서 2014』)되기 때문에 연근해 작전을 위주로 하는 남한 해군에게 기본적으로 8,000톤이나 되는 대형 이지스구축함이 필요하지 않다.

•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독도와 이어도 등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광개토-Ⅲ Batch-II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은 군비경쟁과 주변국과의 적대관계를 전제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일본이 이를 공격한다는 것은 한일 간 전쟁을 상정하는 것인데, 아무리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하나 이는 현 국제 정세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 중국, 일본과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이어도는 수심 4.6m에 위치하여 해양법상 ‘수중 암초’로 공해다. 섬이 아닌 ‘수중 암초’는 접속수역, 영해, EEZ, 대륙붕 같은 해양수역을 창설할 수 없어 한 국가의 영유권 대상이 될 수 없다. 때문에 만일 한·중·일이 이어도에서 관할권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외교와 협상이 아닌 이지스 구축함 등 대형 함정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은 주변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설령 물리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군이 아니라 해경이 나서야 할 문제다.
- 그런데도 주변국과의 분쟁에 대비해 수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대형 함정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 일본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군비경쟁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 『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GDP가 각각 13.5조 달러, 5.07조 달러로 1.66조 달러에 불과한 남한 GDP의 8.1배, 3배에 달한다(2018년 기준). 국방비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2090억 달러, 457억 달러로 359억 달러의 남한의 5.8배와 1.3배에 달한다(2017년 기준). 한국은 중국, 일본과 군비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만약 한국이 중국, 일본과 무한 군비경쟁을 벌이게 되면 국가 경제는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②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 구축함 사업의 숨은 목적은?

• 미 MD 편입과 한미일 MD구축을 통한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포위망 구축 우려

- 국방부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 대 탄도탄 요격능력이 개량된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결국 SM-3 요격미사일을 도입하여 일본이나 미국, 괌, 하와이 등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데 의도가 있는 것이다.
- 한미 양국은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자산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4D 작전개념에 합의했다.
- 한반도 유사시 대북 미사일 방어 작전에서 한국군 전력 보다 양·질적으로 월등한 미국 미사일 방어 자산을 포함한 대북 핵·미사일 대응 작전의 수행은 한국군 미사일 방어 체계와 자산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와 자산을 보완하는 하위체계로 편제되며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 서로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과 한국군이 국내 개발 MD 자산보다 사드, SM-3처럼 미국이 개발한 미사일 방어 자산을 도입해야한다는 뜻이 된다. 이는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MD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밝힌 문재인 정부의 ‘3NO’ 정책과 달리 미일의 대중 포위망에 한국이 끌려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광개토-III Batch-II의 이지스 함은 탄도탄 요격기능이 추가되고 탐지·추적거리, 동시 추적, 추적 속도 등 탄도탄 대응능력이 기존 이지스함에 비해 2배 이상 향상된다고 한다. 2017년 9월 합참이 해상탄도탄요격미사일 작전요구성능(ROC)을 고도 100km이상으로 결정한 것은 SM-3 요격미사일 도입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에 합참의 작전요구성능(ROC)을 변경하지 않는 한 SM-3 도입과 한국의 미 MD참여를 공식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이후, 또 한일 지소미아 파기 선언 이후에도 일본이나 미국으로 날아가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한국의 이지스함이 탐지해 일본, 미국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한국은 이미 미·일 MD작전에 참여하고 있다.

- 한국은 이지스함을 동원해 하와이 인근과 동해, 남해 등에서 미국을 겨냥한 북, 중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한미일 훈련에 참가함으로써 미 MD에 참여하게 된다.
- 향후 광개토-III Batch-II의 이지스함에 해상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게 된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는 상층 방어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던 국방부의 종전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 되며 미국 MD에 참여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다층 방어체계 구축을 고려해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 장착을 결정했다”는 합참의 국회 국정감사 보고에서도 확인된다(연합 2018. 10. 12). 그러나 SM-3 요격미사일 도입으로 한국형미사일 방어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주장은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고작 3~5분 이내로 매우 짧은 한반도 지형에서 탐지 - 식별 - 결심 - 타격의 과정을 2번씩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허구적 주장임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 한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으로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가 현재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변경될 경우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된 SM-3는 미 본토나 괌, 하와이 등을 겨냥한 북, 중의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떠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 미사일 방어 자산과 부대는 미국 MD 체계의 일부가 됨으로써 미 MD에 참여하게 된다.
- 한국의 이지스 함들이 BMD요격 능력을 갖출 경우 미·일의 이지스 함들과 함께 원거리 발사(LOR), 원거리 교전(EOR)과 같은 한미일 연합 MD작전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한미일 삼각 MD가 구축된다. 그리고 이들 이지스 체계들은 대부분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남한 방어보다는 미·일 방어에 쓰이게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미일을 방어해주는 한편 한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되어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것이다.

• **해상 수송로 보호 명분하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을 뒷받침해주려는 의도**

- 해상수송로는 주지하다시피 “석유나 군사, 무역 물자가 통과하며, 침략 경로로도 사용된다”는 캐스퍼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 주장에서 보듯이 미국의 해양 패권을 지키기 위한 보급로이다.
- 한국이 불요불급한 대형 구축함을 도입하려는 것은 미국의 대중대결과 세계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해주고 이에 편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미국 국방부가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 6. 1)는 중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구축하려는 수정주의 국가 또는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국가로, 러시아를 되살아난 악성국가로, 북한을 핵과 생화학무기 및 재래식 전력의 증강으로 생존을 보장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량국가로 지목함으로써 과거 부시 행정부의 소위 ‘악의 축’ 개념을 되살리는 한편 더 나아가 부시 행정부를 능가하는 대결적 자세와 패권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통해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유사시 및 미국 유사시’로 확대하려는 미국의 노림수는 한국군을 미 본토방어와 대중 포위 봉쇄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수행에 동원 하려는데 있다.
-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INF)에서 탈퇴한 직후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중국을 겨냥한 자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한국 등을 자국의 대중 패권전략의 희생양으로, 한반도를 그 전초기지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일본의 안보법 제·개정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미·일 함정이 전개하는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연합작전에 한국 함정도 공동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미·중, 일·중 갈등에 한국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크다.

• 전형적인 해군의 몸집 불리기

- 해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 광개토-Ⅲ의 이지스 구축함을 주력으로 하는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여 원해 해역에서 주변국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응작전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9. 10. 10).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북 작전,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해상 수송로 보호 등의 허구적인 명분을 들어 대형 함정을 도입하려는 것은 해군의 전형적인 몸집 불리기다.
-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노 정부의 국방정책을 조율했던 황병무는 당시 해군의 기동함대사 창설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3개 해역 함대사령부로 해역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해군의 기동함대사 창설 계획을 비판한 바 있다(2008. 7. 9 신동아 586호).

③ 막대한 추가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

-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2028년까지 3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요격미사일 도입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SM-3 미사일은 한 발 당 가격이 SM-3블록IB의 경우 200억 원, SM-3 블록Ⅱ A의 경우 343억 원(평통사, 미 국방예산 기준)으로 요격미사일 도입에만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SM-3블록IB는 미 해군의 퇴역 결정에 따라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SM-3블록IIA의 경우 미 의회는 재설계, 소프트웨어 실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광개토-Ⅲ Batch-Ⅱ 사업은 목적이 허구적이고 타당성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가 그동안 부정해왔던 한국의 미 MD 가입이나 미국의 대중 대결 및 세계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이 커 우리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요격 미사일 도입 등에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총 사업비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5. 삭감요구액

- 이에 2020년도 예산 5554억 59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

확산탄

1. 2020년 국방예산 중 확산탄 관련예산 현황

<표1> 2020년도 확산탄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 원)

No	구분	항목	내용	2020년 예산액
1	전투예비탄약	육군 전투예비탄약	155밀리 DP-ICM BB	164,506
		육군 전투예비탄약	40밀리 중목적고폭탄	1,166
2	230mm급 무유도탄(R&D)			13,811
3	230mm급 다련장	육군	유도분산탄	94,073
4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해군		24,412
합계				297,968

자료출처 : 방위사업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9. 9)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전투 지속일수 00일 미만의 저수준 탄약 중 고위력 장사정탄 및 작전계획 수행에 긴요한 탄약을 우선 확보함으로써 군의 작전지속능력을 보장
- 적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 군단 사단의 대화력전 수행 및 종심타격능력 보강, 적 중심지역의 지상군 병력 및 장비 등의 표적을 효과적 타격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확산탄이 없더라도 전쟁 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 국방부는 전쟁 지속능력의 보장을 위해 확산탄의 지속적인 생산과 비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산탄은 국제법으로 금지된 탄약이기 때문에 이를 전쟁 수단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 확산탄을 전쟁 수단에서 완전히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전쟁수행 능력은 약화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적의 장사정포 위협,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에 대한 타격 능력 향상을 통한 무력화”를 위해 확산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남한의 무기체계는 넘쳐난다. 한국군은 육군의 K-9 자주포와 MLRS, 공군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레이저 유도폭탄(GBU-24), 중거리 GPS 유도키트 폭탄(KGGB), 전술지대지유도탄, 탄도미사일 현무 등 북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대화력전 체계를 오래전부터 구축해 왔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정보·타격 등의 대응 체계가 현재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윤광웅 당시(2004년) 국방장관은 240mm 장사정포는 6분 이내, 170mm 장사정포는 11분 이내에 격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차/장갑차도 남한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대부분 구형이며 비교적 신형전차(T-62, T-62 개량형)도 400~800대뿐이다. 반면 현재 남한이 보유한 신형전차(K1 1,000대, K1A1 484대, K-2 100대)는 1,584대로(『2019년ミリ터리 밸런스』, 284쪽) 북한의 전차 전력을 압도한다. 더욱이 남한의 공군력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의 지상군 및 전차/장갑차에 대한 충분한 타격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확산탄이 없더라도 전쟁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 뿐만 아니라 120개국 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한 사실이나 2019년 현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35개국 이 ‘확산탄금지협약’에 따라 비축 확산탄을 전량 폐기 처분(150만 개의 비축 확산탄과 1억 7800만 개의 자폭탄)한 사실은 이들 나라가 확산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② 확산탄은 방어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불법 무기다.

- 확산탄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어 목적의 무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국 영토 침입이나 공격에 효과적인 무기로 개발되었다. 우리 군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유엔헌장에서 인정되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서 확산탄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하다.
- 확산탄을 사용하는 무기체계는 대부분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3축 체계’를

뒷받침하는 무기체계다. 판문점·평양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3축 체계’ 명칭을 바꾸긴 했지만 3축 체계의 세부적인 작전 및 전력은 유지하기로 했다. 육군의 230mm 다련장(천무)과 공군의 정밀유도확산탄(CBU105) 등은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을 위한 핵심무기체계다. 이지스함에 탑재되는 전술함대지유도탄은 사거리 1,000km 이상의 함대지 순항미사일과 잠대지미사일과 더불어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해상 킬체인 전력의 하나다. 사거리 200km의 전술함대지유도탄은 북한의 지대함 사거리 밖에서 해병대 상륙 작전에 앞서 북한의 연안은 물론이고 북한 중심지역의 지상군 병력이나 장비를 표적으로 하는 전형적 공격무기다. 전술함대지유도탄 수직형은 함정의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360도 전 방향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공세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 대북 (선제)공격을 위해 확산탄을 비축, 생산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나라의 헌법(5조 1항)에 위배되며 선제공격과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불법이다. 또한 이는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북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대북 체제보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한 싱가포르 성명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 지금까지 전쟁예비탄약의 비축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나 근원적으로나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데도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대북 전면전에 대비한 장기 전쟁예비탄약 비축 관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제법적으로 불법인 확산탄을 비축, 생산해서는 안 된다.

③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비인도적 불법 무기다

-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탄약으로,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다.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들이다.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9%가 민간인이며 이 중에서 52%가 어린이들이다(『Cluster

Munition Monitor 2019』, 2019. 8. 29, Cluster Munition Coalition).

-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고 살상하는 확산탄은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이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군사적 공격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무차별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2)항과 제2추가의정서 제13조 (2)항,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4)항)
- 확산탄은 ‘확산탄금지협약’ 발효로 국제적으로 불법화된 지 오래다. 2008년 사용·생산·비축·이전을 전면 금지하고 재고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확산탄금지협약’이 채택되었으며, 2010년 8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 2019년 7월 31일 현재, 총 120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했고 이 중 106개국이 발효(당사국)했다.
- 한국은 세계 2위의 확산탄 생산국이자 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확산탄을 수입하고 있는 최대 수입국가이기도 하다.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구실로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군사위협이 소멸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가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이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산탄의 생산, 수출, 수입 및 저장, 사용이 합법이라 할 수 없다. 국제 인도법의 관습은, 불법한 현상의 규정은 비가입 당사국의 행위에도 규정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이재승, 2010. 10. 16)
-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획득연구센터 하광룡, 박지원 연구원은 “확산탄금지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의 사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주간국방논단 제1434호,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한국국방연구원, 2012. 10. 29). 실제 2017년 ‘확산탄금지연합’과 그 회원 조직인 PAX는 확산탄 제조 기업인 한국 풍산에 대해, 풍산이 생산하는 미가공 동전 구입 중단을 촉구하는 세계적 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왕립 화폐 주조청은 “풍산은 국제법상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제조업체”라며 풍산의 미가공 동전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예멘에서 확산탄을 사용한 사우디에 확산탄을 수출한 미국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하자 미 의회가 사우디에 확산탄 수출을

법적으로 금지(2016. 6)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④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량을 미국이 인가하는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해야한다

- 확산탄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조약으로 금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이 이를 계속 전투예비탄약으로 비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여서가 아니라 미국이 확산탄 전투예비탄약 비축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은 당초 2018년 말까지 전량 폐기하기로 한 확산탄을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집속탄을 계속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군의 남침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뉴데일리, 2018. 10. 31)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한 것으로 미국이 확산탄을 유지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 1974년 체결된 ‘한미 재래식 탄약 보급에 관한 합의각서’(살스케이, SALS-K)는 2항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군 20개 사단 규모의 병력에 대한 미국이 인가한 기준의 45일분을 확보하는데, 한국 소유 재고의 부족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미국 소유의 재래식 탄약을 한국 내에 저장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또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부대구조와 미국이 인가한 보급률(US approved supply rates)의 수정사항을 적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1일까지 한국군의 전투예비 부족량을 검토할 것에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의 종류와 비축량을 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군이 반인도적인 대인지뢰나 확산탄을 계속 비축, 보유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이 대인지뢰금지협약이나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전투예비탄약에 대한 미국의 인가제도가 주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살스케이’는 주한미군 7사단이 닉슨 독트린에 따라 한국에서 철수(1971년)하면서 자신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한 미 육군 소유 탄약을 한국이 대신 저장·관리하도록 한, 또한 미국 내에서 남아도는 수명이 다한 노후탄약을 한국으로 옮겨 보관하기 위해 체결된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 불평등한 살스케이 합의각서를 폐기하고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⑤ 과잉전력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 남한이 북한의 지상군, 장사정포, 야포, 전차, 장갑차 등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확산탄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불필요한 과잉 전력이다.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진전되어 남북이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게 되면 확산탄은 우선적 군축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낭비 사업이다.

- 또한 이미 과잉전력인 전술함대지유도탄을 수직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복사업으로 국민혈세 낭비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남북, 북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했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남북 간 일체의 적대행위가 중지되었다. 비록 남북,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있고 과거의 대결로 회귀하게 되더라도 남북, 북미 간 합의는 되살려지고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한편 확산탄 폐기 문제는 정세와 무관한 인도적인 문제로 정세의 개선이나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확산탄 사업의 중단은 확산탄의 개발, 사용, 수출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에 국회는 전투예비탄 중 육군 전투예비탄약 155밀리 DP-ICM BB, 40밀리 이중목적 고폭탄, 230mm급 무유도탄(R&D), 203mm급 다련장 유도분산탄, 해군의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등의 확산탄 예산을 전액 삭감해 모든 확산탄의 생산, 비축, 사용을 중단시키고 나아가 전면 폐기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삭감요구액

- 확산탄 관련 예산 2979억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128) F-35A (2433-300)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556,150	1,795,734	239,584	1,795,734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사업 목적> 고성능전투기 F-35A를 국외(FMS) 구매로 확보하는 사업
- ② <향후 기대효과>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고성능 전투기 F-35A 도입 목적의 허구성, 위험성, 불법부당성

• F-35A 사업 목적의 허구성

- 국방부는 북한 핵·WMD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비하려면 F-35A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한다(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 2019. 8. 14 ; 국방부, 국방개혁 2.0 소개 e-book). 북의 영공을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F-35A의 스텔스 기능과 첨단정밀타격이 가능한 무장력을 이용하여 유사시 북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이다.
-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해 대북 핵·WMD 억제가 성립하려면 반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북

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도의 정찰감시 자산과 첨단 정밀무기를 동원하더라도 핵능력이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 파괴하기란 불가하다.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검토했던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군사공격으로 북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동아일보, 2013. 2. 19)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선제공격으로 북의 핵능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F-35A를 동원한 선제공격은 오히려 북의 즉각적인 핵 보복 공격을 자초해 우리 안보를 더욱 위협에 빠뜨릴 뿐이다. 따라서 F-35A 도입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은 허구이자 기만이다.

• F-35A 사업 목적의 위험성

- 한미 양국이 도입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먼저 공격하는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위기를 촉발하는 전략이다.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바로 F-35A는 전략표적 타격(옛 ‘킬 체인’)의 핵심 타격 전력이다. 국방부가 기종 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F-35A의 도입을 강행한 의도는 유사시 또는 개전 초기 북한의 대공망을 제압하고, 북한 최북단의 핵·미사일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에 있다. 한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으로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가 현재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변경될 경우 미국은 괌, 하와이, 미 본토를 겨냥한 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공격하는 임무를 한국 공군의 F-35A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듯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F-35A로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한반도 핵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 F-35A 사업 목적의 불법성

-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평화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4조와 5조,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불법이다.

• F-35A 사업 목적의 부당성

- 북한 핵·WMD 위협 대응을 내세워 강행된 F-35A 도입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9·19 평양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

축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또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F-35A 도입은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군사적 신뢰조치 및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위배된다. 북은 F-35 도입을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면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9. 7. 11).

② 고성능 전투기 F-35A 도입은 과잉전력으로 국민혈세만 낭비

•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주장은 사실 왜곡

- 국방부는 애초 공군 보유 구형 전투기 도태로 인한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되어 차기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 2010. 9).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 없다.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남 640대, 북 550대로 남한이 양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ミリ터리 밸런스』 역시 남측의 전투기는 525대로, 465대를 보유한 북한에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 전투기는 대부분 3~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1950~19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질적으로도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따라서 2025년~2030년대의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이다.
- 질적 측면에서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MIG-29 18대(『2019년ミリ터리 밸런스』)뿐이다. 북한은 SU-25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행 속도가 아음속으로 공중전에는 매우 취약하다. MIG-29는 F-35는 물론 F-15K와 비교해도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KF-16과 비교해서도 공대공 교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무기체계 양적, 질적 평가』, 한국 국방안보포럼, 2010. 10 17, 17~18쪽).
- 또한 양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FA-50 양산 사업으로 60대의 로우급(Low)급 전투기가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하였다. FA-50 실전배치로 남한 공군의 로우급 전력은 훨씬 향상되었다. 또 국방부는 F-4 팬텀은 2025년, F-5 타이거는 2030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KF-X 사업 지연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나 이는 국방부가 그 동안 운영 가능한 기종의 도태시기를 앞당겨 전투기의 수량 부족을 과장했다는 사실을 말해준

다. F-16, KF-16 등 미디엄(Medium)급 전투기도 공대지 무장과 전자장비 등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미디엄급 전투기의 전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총 사업비 8조 8304억 원을 투입해 120여대의 미디엄급 다목적 전투기(KF-X)를 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F-35A도입 목적이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 **북한 핵 위협을 구실로 한 F-35A 도입은 과잉전력**

- 국방부는 2014년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고 록히드 마틴사의 F-35A를 선정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된 작전 운용성을 만족시키는 항공기는 F-35A가 유일하다는 것이다(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재검증, 2014. 3).
- F-35A는 최첨단 스텔스 성능과 고성능의 레이더 시스템 및 정밀무장 운영이 가능하며 기상 악화나 야간에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고성능의 F-35A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북한 중심지역에 대한 은밀한 침투와 대공 제압 및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 임무수행이 가능한 하이(High)급 전투기 전력을 구비 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스텔스 기능은 만능이 아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2013. 9)고 밝혔으며, 전 미 해군 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레이더 기술 속에서 스텔스나 레이더 회피 기술의 가치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도 “대스텔스 기능이 확산되어 전투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2014 QDR, 7 쪽)고 지적하고 있다.

③ **주변국 잠재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

- 주변국을 잠재위협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이다. 우리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십 수 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일본 역시 육군 전력은 남한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항공 전력에 있어서도 남한을 공격해 승리

할 만큼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남측이 F-35A를 대 주변국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과의 대결을 자초해 한국의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스스로 가담하는 결과를 불러와

- 또한 F-35A 사업의 계속은 동맹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국, 러시아 등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스스로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포린 폴리시는 F-35의 글로벌 배치는 중국-러시아에 맞선 미국의 배타적 연합전선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교하여 미국판 '공중 일대일로'라고 분석하고 있다(포린 폴리시, 2019. 7. 12). 미국이 동맹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자국에게 의존하게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F-35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대중 대결과 세계패권전략에 가담해 얻을 것이라고는 대미, 대일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를 강대국 패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만들며 국민혈세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으로 갖다 바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④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절충교역 내용

- F-X 사업 기종 선정 과정에서 방사청은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소위 4대 핵심기술을 포함해 타 기종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한 F-15SE를 부결시켰다. 또 작전요구 성능에 스텔스 성능을 추가하여 사실상 F-35A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방식도 공개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어 F-35A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F-15SE 선정 시 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2019. 5. 21), 7조 7천억 원 규모의 F-35 40여대를 구입하는 대가로 21개의 첨단군사기술 이전, 군통신위성 설계·제작·발사, 중소기업 제품 2000억 원을 구매하기로 한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 조건마저도 방사청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군 통신위성의 설계·제작·발사에 대해 마치 절충교역으로 무상 이전을 받을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유상 구매한 것이다.
- 10월 29일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 478대(2020년~2022년까지 인도 물량)를 340억 달러에 도입하기로 록히드마틴 및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78

대에는 미군에 공급될 291대, 공동개발 국가들에게 공급될 127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구매 국가들에게 공급될 60대가 포함된다(아시아 투데이, 2019. 10. 31). F-35A의 대당 가격은 F-35A Lot 12 생산분(2020년 인도분)을 기준으로 하면 8240만 달러(962억 4320만원)다. 향후 2년 동안 기존 대비 15% 낮아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됐다는 지난 6월의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F-35A 가격은 이후에 더 낮아질 수 있다.

- 이에 F-35A 한 대당 최소 249억 원의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입가격을 낮추지 못한 채 대당 약 1211억 원을 지불해야한다. 절충교역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이 기체 가격 하락분을 돌려받는 대신 위성 설계·제작·발사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록히드마틴 측과 합의하면서 대당 가격을 고정했기 때문이다(3차 절충교역수정 합의각서, 2016. 11). 이에 우리는 F-35A 40대 기준으로 최소 약 99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 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록히드 마틴이 예상보다 실제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면서 1년 반 이상 군 통신위성 사업을 지체시켰음에도 300억 원에 달하는 지체 배상금도 물리지 못했다. 이런 굴욕적 결과는 스텔스 기종 도입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불법 부당한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 F-35A의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분야에서 대일 종속 가능성의 현실화

- 국방부는 F-35A 도입 협상에서 F-35A의 조립과 부품생산, 창정비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F-35 기체의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MRO&U)'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했다. 창정비와 장비 업그레이드 권한이 없는 한국은 일본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 창정비를 맡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F-35A의 운영을 일본에게 의존해야 하며 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게 지불해야 한다. 국방부는 일본에서 창정비를 맡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남태평양 지역 창정비 권한을 획득한 호주에서 창정비를 받는 것은 이로부터 오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 한국군의 F-35A가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최근 일

본의 행태로 볼 때 일본이 F-35A의 부품 공급과 창정비를 자국의 또 다른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F-35A의 기체·엔진 정비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 미국이 한일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해 F-35 엔진 정비 등을 일본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 9. 16)도 한시라도 빨리 F-35 도입을 중단하는 길만이 대미, 대일 종속을 막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35 사업의 지속은 한일 지소미아 및 한일 악사 체결로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바라는 미국에게는 이를 강제할 지렛대를 쥐어주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호기를 안겨주며, 우리에게는 대일 군사 종속을 자초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⑥ 장비 유지를 위한 연평균 1000억 원이 넘는 후속 군수지원 예산 소요

-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F-35A의 후속 군수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듯 과잉전력인 F-35A를 유지하기 위한 후속 군수지원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금액이 대폭 증가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가중시킨다. 합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김종대 의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20년간 1기 운영유지비에 2500억 원이 소요되며 4~5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 스텔스 도료비용은 추산조차 불가능하다(한국의 무기구매 이대로 괜찮은가? 2019. 5. 21). 이에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 분명한 F-35 도입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길 만이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고 국익을 지키는 길이다.

<F-35A 후속군수지원>

(단위 : 억 원)

구분	'19	대상기간					
		'20	'21	'22	'23	'24	계
예산	3	948	1,423	1,431	1,433	2,401	7,636

(출처 : 국방부, 2020-2024 국방중기계획, 41쪽)

⑦ 계속되는 심각한 기술 결함, F-35A 인수를 거부하고 도입 철회해야

- 2018년 6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F-35에서 966개의 공개 결함(open deficiencies)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 이런 지속적인 성능결함으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의 인수를 2018년 4월, 잠정 중단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1개월 동안 인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F-35 첫 추락 사고는 연료 관 제조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19년 6월 13일, 군사전문 디펜스 뉴스는 자체 입수한 관련 문서들을 인용해 미국의 최첨단 F-35 전투기가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조종사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카테고리 1)¹⁷⁾ 결함 13개를 공개했다. 디펜스 뉴스는 이들 주요 결함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미 국방부의 ‘최첨단 최고가 무기 프로그램’의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F-35 프로그램이 핵심 이행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기술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9. 6. 14).
- 이처럼 지속적인 성능결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군은 지금까지 F-35A 8대를 인수하였으며 2021년까지 총 4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FMS 계약방식으로 수입되는 미국 군사무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양산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치명적 성능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F-35A의 인수를 거부하고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 결함투성이 F-35에 공군 조종사들의 생명과 국민혈세를 희생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어 선제공격용 F-35A의 도입은 주변국과의 대결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에 역행하는 무기다.

17) 카테고리 1은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의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전투기나 장비의 손상 또는 손실을 가져오는 주요 문제들이다(The Hidden Troubles of the F-35, Defense NEWS, 2019. 6. 12).

- F-35A는 남북 군축 협상이 일정에 오를 경우 최우선 군축 협상 대상으로 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공세무기 도입은 삼가야 한다.
- F-35A는 도입 과정에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계약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의 심화와 대일 군사적 종속을 자초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심각한 결함 발생으로 그 성능 발휘와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F-35A 인수 거부와 함께 도입 결정을 철회하고 지금까지라도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는 것만이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5. 삭감요구액

- 2020년도 F-35A 도입 예산 1조 7957억 3400만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128) F-X 2차 (2432-301)¹⁸⁾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신규		240,358	240,358	240,358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사업 목적> F-X 2차 사업 (고성능전투기 F-35A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¹⁹⁾
- ② <향후 기대효과> 주변국 잠재위협 대비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고성능 전투기 F-X 2차 사업 목적의 허구성, 위험성, 불법부당성

• F-X 2차 사업 목적의 허구성

- 국방부는 북한 핵·WMD 위협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비하려면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하는 F-X 2차 사업은 필수라고 주장한다(국방중기계획 보도자료, 2019. 8. 14 ;

18) F-X 2차 사업은 신규 사업이다. 방사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자료』 자료에는 F-X 2차 사업 목적 등에 대한 설명자료 없이 2020년도 예산안 만 기재되어 있다.

19) F-X 2차 사업의 기종은 F-35A 또는 F-35B가 거론된다. 그러나 LPX-Ⅱ 전력화시기를 고려하면 F-X 2차 사업 기종은 F-35A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가 주장하는 F-X 2차 사업 목적과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은 F-35A 도입사업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국방부, 국방개혁 2.0 소개 e-book). 북의 영공을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F-35의 스텔스 기능과 첨단정밀타격이 가능한 무장력을 이용하여 유사시 북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겠다는 것이다.

-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해 대북 핵·WMD 억제가 성립하려면 반격이 불가능할 정도로 북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고도의 정찰감시 자산과 첨단 정밀무기를 동원하더라도 핵능력이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완전 파괴하기란 불가능하다. 1994년 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검토했던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도 "군사공격으로 북한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동아일보, 2013. 2. 19)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처럼 선제공격으로 북의 핵능력을 제거한다는 것은 허구이다. F-35를 동원한 선제공격은 오히려 북의 즉각적인 핵 보복 공격을 자초해 우리 안보를 더욱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따라서 F-35 도입으로 핵·WMD 대응을 위한 전략적 억제능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은 허구이자 기만이다.

• F-X 2차 사업 목적의 위험성

- 한미 양국이 도입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먼저 공격하는 전략으로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위기를 촉발하는 전략이다. '킬 체인'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는 수단이며, F-X 2차 사업을 통해 들여오는 고성능의 전투기는 전략 표적 타격(옛 '킬 체인')의 핵심 타격 전력이다. 국방부가 1차 사업에서 기종 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F-35의 도입을 강행한 의도는 유사시 또는 개전 초기 북한의 대공망을 제압하고, 북한 최북단의 핵·미사일 전략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에 있다.
- 한편 '한미동맹 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으로 한미연합 위기관리 범위가 현재의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 유사시'로 변경될 경우 미국은 괌, 하와이 미 본토를 겨냥한 북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전에 공격하는 임무를 한국 공군의 F-35A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렇듯 북한이 핵·미사일 사용 징후만 보여도 F-X로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한반도 핵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 F-X 2차 사업 목적의 불법성

- 대북 선제공격을 포함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평화통일을 천명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

법 4조와 5조,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을 발동하도록 한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불법이다.

- F-X 2차 사업 목적의 부당성

- 북한 핵·WMD 위협 대응을 내세워 지속되는 F-35 도입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9·19 평양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그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 또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F-35 도입은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군사적 신뢰조치 및 단계적 군축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위배된다. 북은 F-35 도입을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증강을 전면중지하기로 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보면서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2019. 7. 11).

② 고성능 전투기 F-X 2차 사업은 과잉전력으로 국민혈세만 낭비

- 구형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주장은 사실 왜곡

- 국방부는 애초 공군 보유 구형 전투기 도태로 인한 심각한 전력 공백이 우려되어 차기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조사, 2010. 9).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주장은 근거 없다.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남 640대, 북 550대로 남한이 양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ミリ터리 밸런스』 역시 남측의 전투기는 525대로 465대를 보유한 북한에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남한 전투기는 대부분 3~5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북한 전투기는 75% 이상이 1950~1960년대 만들어진 2세대 구형 전투기로 질적으로도 남한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따라서 2025년~2030년대의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이다.
- 질적 측면에서 북한 전투기 중에서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4세대 전투기는 18여대의 MIG-29 18대 (『2019년ミリ터리 밸런스』)뿐이다. 북한은 SU-25를 보유하고 있지만 비행 속도가 아음속으로 공중전에는 매우 취약하다. MIG-29는 F-35는 물론 F-15K와 비교해도 표적 탐색능력, 무장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저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KF-16과 비교해서도 공대공 교전 능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북한 무기체계 양적, 질적 평가』, 한국 국방안보포럼, 2010. 10. 17, 17~18쪽).

- 또한 양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FA-50 양산 사업으로 60대의 로우급(Low)급 전투기가 2017년까지 60대를 전력화하였다. FA-50 실전배치로 남한 공군의 로우급 전력은 훨씬 향상되었다. 또 국방부는 F-4 팬텀은 2025년, F-5 타이거는 2030년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KF-X 사업 지연에 따른 결정이라고 하나 이는 국방부가 그 동안 운영 가능한 기종의 도태시기를 앞당겨 전투기의 수량 부족을 과장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F-16, KF-16 등 미디엄(Medium)급 전투기도 공대지 무장과 전자장비 등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미디엄 급 전투기의 전력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총 사업비 8조 8304억 원을 투입해 120여대의 미디엄급 다목적 전투기(KF-X)를 연구개발로 획득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F-35도입 목적이 구형 전투기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 **북한 핵 위협을 구실로 한 F-X 2차 사업은 과잉전력**

- F-X 1차 사업 시 국방부는 차세대 전투기로 보잉사의 F-15SE로 결정했다가 이를 뒤집고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선정하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수정된 작전운용성능을 만족시키는 항공기는 F-35A가 유일하다는 것이다(한국국방연구원, 사업타당성 재검증, 2014. 3).
- F-35A는 최첨단 스텔스 성능과 고성능의 레이더 시스템 및 정밀무장 운영이 가능하며 기상 악화나 야간에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가 이와 같은 고성능의 F-35A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북한 중심지역에 대한 은밀한 침투와 대공 제압 및 북한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 임무수행이 가능한 하이급 전투기 전력을 구비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스텔스 기능은 만능이 아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도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2013. 9)고 밝혔으며, 전 미 해군 참모총장 조나단 그리너트도 “급속도로 발전하는 레이더 기술 속에서 스텔스나 레이더 회피 기술의 가치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도 “대스텔스 기능이 확산되어 전투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2014 QDR, 7쪽)고 지적하고 있다.

③ **주변국 잠재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업 목적의 위험성**

•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

- 주변국을 잠재위협으로 보는 관점은 우리 스스로 주변국을 적으로 돌리는 무모한 발상

이다. 우리는 주변국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지 않다. 이들 국가가 남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없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십 수 개의 나라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제한되어 있다. 일본 역시 육군 전력은 남한에 비해 크게 열세이며, 항공 전력에 있어서도 남한을 공격해 승리할 만큼 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남측이 F-35를 대주변국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군사 강국들과의 대결을 자초해 한국의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스스로 가담하는 결과를 불러와

- 또한 F-X 2차 사업은 동맹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국, 러시아 등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스스로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포린 폴리시는 F-35의 글로벌 배치는 중국-러시아에 맞선 미국의 배타적 연합전선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비교하여 미국판 '공중 일대일로'라고 분석하고 있다(포린 폴리시 2019. 7. 12). 미국은 동맹국과 지역 파트너 국가들을 자국에게 의존하게 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F-35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의 대중 대결과 세계패권전략에 가담해 얻을 것이라고는 대미, 대일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반도를 강대국 패권 경쟁의 희생양으로 만들며 국민혈세를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으로 갖다 바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④ 굴욕적이고 기만적인 절충교역 내용

- F-X 사업 관련 2014년 방사청은 AESA 레이더를 포함한 소위 4대 핵심기술을 포함해 타 기종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한 F-15SE를 부결시켰다. 또 작전 요구 성능에 스텔스 성능을 추가하여 사실상 F-35A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상 방식도 공개경쟁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꾸어 F-35A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F-15SE 선정 시 KF-X 개발 사업에 필요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기술 이전이 무산된 것은 예상된 결과였다.

-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2019. 5. 21), 7조 7000억 원 규모의 F-35 40여대를 구입하는 대가로 21개의 첨단군사기술 이전, 군통신위성 설계·제작·발사, 중소기업 제품 2000억 원을 구매하기로 한 록히드마틴과의 절충교역 조건마저도 방사청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군 통신위성의 설계·제작·발사에 대해

마치 절충교역으로 무상 이전을 받을 것처럼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유상 구매한 것이다.

- 10월 29일 미 국방부는 F-35 전투기 478대(2020년~2022년까지 인도 물량)를 340억 달러에 도입하기로 록히드마틴 및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78 대에는 미군에 공급될 291대, 공동개발 국가들에게 공급될 127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구매 국가들에게 공급될 60대가 포함된다(아시아 투데이, 2019. 10. 31). F-35A의 해당 가격은 F-35A Lot 12 생산분(2020년 인도분)을 기준으로 하면 8240만 달러(962억 4320만원)다. 향후 2년 동안 기존 대비 15% 낮아진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게 됐다는 지난 6월의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F-35A 가격은 이후에 더 낮아질 수 있다.
- 이에 F-35A 한 대당 최소 249억 원의 도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입가격을 낮추지 못한 채 대당 약 1211억 원을 지불해야한다. 절충교역 협상 과정에서 방사청이 기체 가격 하락분을 돌려받는 대신 위성 설계·제작·발사 비용으로 갈음하기로 록히드마틴 측과 합의하면서 대당 가격을 고정했기 때문이다(3차 절충교역수정 합의각서, 2016. 11). 이에 우리는 F-35A 40대 기준으로 최소 약 996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
- 뿐만 아니라 방사청은 록히드 마틴이 예상보다 실제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로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하면서 1년 반 이상 군 통신위성 사업을 지체시켰음에도 300억 원의 달하는 지체 배상금도 물리지 못했다. 이런 굴욕적 결과는 스텔스 기종 도입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불법 부당한 맹목적 정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⑤ F-35의 창정비와 부품 조달 등의 분야에서 대일 종속 가능성의 현실화

- 국방부는 F-35 도입 협상에서 F-35의 조립과 부품생산, 창정비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 F-35 기체의 '정비 및 장비 업그레이드(MRO&U)'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했다. 창정비와 장비 업그레이드 권한이 없는 한국은 일본이 생산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 창정비를 맡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F-35의 운영을 일본에게 의존해야 하며 부품 수입과 창정비에 소요되는 운영유지비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에게 지불해야 한다. 국방부는 일본에서 창정비를 맡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남태평양 지역 창정비 권한을 획득한 호주에서 창정

비를 받는 것은 이로부터 오는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 한국군의 F-35가 일본에서 창정비를 받게 되면 우리 공군 전투기의 운항기록 등 작전 결과에 대한 데이터도 고스란히 일본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최근 일본의 행태로 볼 때 일본이 F-35의 부품 공급과 창정비를 자국의 또 다른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F-35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다.
- 미국이 한일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ACSA)을 체결해 F-35 엔진 정비 등을 일본에서 하기를 바란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 9. 16)도 한시라도 빨리 F-35 도입을 중단하는 길만이 대미, 대일 종속을 막고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35 사업의 지속은 한일 지소미아 및 한일 악사 체결로 한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바라는 미국에게는 이를 강제할 지렛대를 쥐어주고, 호시탐탐 한반도 재침략을 노리는 일본에게는 호기를 안겨주며, 우리에게서 대일 군사 종속을 자초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⑥ F-35의 계속되는 심각한 기술 결함

- 2018년 6월,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 현재 F-35에서 966개의 공개 결함(open deficiencies)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하는 게 어렵다고 한다. 이런 지속적인 성능결함으로 인해 미 국방부는 F-35의 인수를 2018년 4월, 잠정 중단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1개월 동안 인수를 거부한 적이 있다. 2018년 9월에 발생한 F-35 첫 추락 사고는 연료관 제조 결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 2019년 6월 13일, 군사전문 디펜스 뉴스는 자체 입수한 관련 문서들을 인용해 미국의 최첨단 F-35 전투기가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연말 시한을 앞두고 조종사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카테고리 1)’²⁰⁾ 결함 13개를 공개했다. 디펜스 뉴스는 이들 주요 결함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미 국방부의 ‘최첨단 최고가 무기 프로그램’의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F-35 프로그램이 핵심 이행

20) 카테고리 1은 전투기의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의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거나 또는 전투기나 장비의 손상을 가져오는 주요 문제들이다(The Hidden Troubles of the F-35, Defense NEWS, 2019. 6. 12).

단계에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기술적 결함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19. 6. 14).

- 이처럼 지속적인 성능결함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군은 지금까지 2021년까지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하는데 이어 총 사업비 약 3조 9000억 원을 들여 20여대를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연합뉴스, 2019. 10. 7). FMS 계약방식으로 수입되는 미국 군사무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양산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치명적 성능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F-X 2차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결함투성이 F-35에 공군 조종사들의 생명과 국민혈세를 희생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방어수요를 훨씬 뛰어넘어 선제공격용 F-35의 도입은 주변국과의 대결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 구축에 역행하는 무기다.
- F-35는 남북 군축 협상이 일정에 오를 경우 최우선 군축 협상 대상으로 될 것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초공세무기 도입은 삼가야 한다.
- F-35는 도입 과정에서 미국과의 불평등한 계약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대미 군사적 종속의 심화와 대일 군사적 종속을 자초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심각한 결함 발생으로 그 성능 발휘와 조종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F-X 2차 사업을 중단하는 것만이 국익을 지키는 일이다.

5. 삭감요구액

- 2021년도 F-X 2차 사업 예산 2403억 58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

(115) 상륙기동헬기 (2432-307)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 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 (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134,076	248,916	114,840	248,916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

- ① 한국형 기동헬기를 기반으로 상륙기동헬기로 개조 개발하여 해병대 입체고속 상륙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으로 운용
- ② 상륙기동헬기의 국내양산 추진으로 해상운용기술의 해외 의존 탈피와 막대한 해외 구매 비용 절감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① 입체고속 상륙작전능력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불법부당성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해병대를 입체고속 상륙작전, 전략도서 방위가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작전이 가능하도록 정보·기동·화력이 보강된 상륙사단으로 개편하고 상륙기동헬기와 상륙공격헬기로 구성된 해병항공단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국방일보, 2019. 9. 18).
- 상륙작전은 “함정, 주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해군과 상륙군이 해양을 통하여 적 해안

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공격작전”(『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합동참모본부, 2004. 12)이라는 설명에서 보듯이 전형적인 공격작전이다.

- 또한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미 해병대의 초수평선 상륙작전(OTH)의 한국판이다. 초수평선 상륙작전은 적의 강력한 방어망을 뚫기 위해 수평선 너머 먼 바다에서 발진한 뒤 해상과 공중을 통해 육지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이다. 이 작전을 한반도 전구에 맞도록 재해석한 게 입체고속 상륙작전이다.”(중앙일보, 기관포 단 공격헬기 도입 … ‘악으로 깡으로’ 해병대 변했다. 2019. 10. 20) 곧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적이 발견하기 어려운 초수평선 해상에 위치한 함정으로부터 고속기동과 회피기동 등을 통해 곧바로 육지의 작전 목표지역을 직접 공격”(국방논단 제1415호 『상륙작전 발전 동향과 상륙기동헬기의 역할』, 2012. 6. 18)하는 작전개념으로 공세성이 더욱 강화된 상륙작전이다.
- 해병대의 입체고속 상륙작전은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지시로 합참이 수립한 ‘신 공세적 작전개념’의 구성 부분이다. 그런데 ‘신 공세적 작전개념’은 그 초공세성으로 말미암아 청와대가 정치적, 전략적으로 폐기시킨 개념이다. 그런데도 ‘신 공세적 작전개념’은 해병대의 입체고속 상륙작전처럼 군과 작전적 차원에서는 그대로 살아 있는 반통수권적, 반문민적 작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와 긴장 해소를 약속하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통해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에도 위배된다.
- ‘신 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할 경우 “미국은 한국군 단독 공수작전은 초기 피해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앙일보, 2018. 8. 26). 이는 공군에 의한 북한 방공망 제압(SEAD)과 제공권 장악 없이 북한 내륙으로 진격할 경우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전개할 때는 피해율이 이보다 더 클 것이다. 또한 공군이 ‘근접항공지원(CAS)’ 작전을 전개할 때 (공격)헬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 작전은 더 높은 고도에서 기동하는 공군 전투기의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고도에서 작전하는 (공격)헬기가 아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입체고속 상륙작전을 전개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상륙기동헬기의 무분별한 도입에 나서고 있는 해병대의 욕심은 무모하고 한참 지나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는 이러한 초공세적 작전 수행을 위해 36대의 기동헬기와 24대의 공격헬기를 도입해 항공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해병대의 공세적인 입체고속 상

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은 독도함에 이어 마라도함을 전력화할 예정이고, 나아가 중항공모함급의 대형수송함-II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전력 측면에서 보더라도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의 헬기전력은 680여 대(육·해·공 보유)로 290여 대의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실제로 입체고속 상륙작전이 전개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은 여기에 소요되는 공격헬기 등을 지원할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60여대의 상륙 기동/공격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고 항공단까지 창설하겠다는 것은 군과 해병대의 과욕이며 극단적인 자군이기주의의 발로다.
- 또한 해병대가 전략도서 방위를 명분으로 상륙기동헬기 등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다. 서북도서 점령 등 북한의 국지도발은 성공하기 어렵다. 해군력과 공군력에서 크게 열세인 북으로서는 기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서해 5도에 다다르기도 어렵지만 상륙을 하더라도 점령할 수는 없다. 북한은 서해 5도에 주둔하고 있는 남측 병력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남측 해·공군의 지원 사격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다.
- 애초 상륙기동헬기에 대한 소요는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소탕 임무 등 장거리 해상작전에 투입할 다목적 수송헬기가 없다”는 데서 시작된 것이다. “해군은 상륙기동헬기를 확보해 장거리 해외파견 작전이나, 림팩 훈련 등의 대규모 해외군사훈련에 활용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이다(「해병대 차기 공격헬기 사업 보고서」, 『군사연구』, 2016. 3. 21). 결국 한국 해병대의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 도입 및 항공단 창설은 독도함, 마라도함, 중항공모함 등의 해군전력과 결합해 미국의 인도-태평양에서의 패권 전략 수행과 제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 등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보다도 활발하게 미군과 연합연습/훈련을 벌이고 있는 군이 바로 해병대다.

② 양산 전에 추락사고 진상규명과 성능결함 원인부터 밝혀야

- 2018년 7월 17일, 정비시험비행을 위해 이륙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이 추락했다. 이로 인하여 탑승한 6명 중 5명이 목숨을 잃었다.
- 마린온은 이륙 4초 만에 회전날개가 동체에서 통째로 분리되면서 추락했다. 사고 원인

에 대해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헬기 메인로터(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 ‘로터 마스트’의 결함 때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2018. 12. 21).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때문에 로터 마스트가 끊어지며 메인로터(프로펠러)가 날아가고 헬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로터 마스트 소재 제작사인 오베르 듀발사는 동일조건에서 생산된 로터 마스트 4개를 자체적으로 보완 조치를 취해 납품했지만 결국 이 중 3개가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1개가 사고 마린온에 장착되고 나머지 2대는 수리온에 장착됐다는 것이다. 2019년 봄 군은 모든 수리온 로터 마스트에 대한 정밀검사와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정상 운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수리온 부품 결함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상륙기동헬기인 마린온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조한 것이다. 수리온은 2차례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한 성능결함과 비행 안전성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왔다. 2017년 감사원은 수리온을 기반으로 한 상륙기동헬기, 의무수송헬기 등에 대해 “비행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양산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 77쪽, 2017. 7).
- 마린온 사고 직후 하태경 의원 등은 수리온 기어박스의 설계 오류 가능성도 제기했다. 마린온 추락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냈던 노르웨이 헬기 슈퍼 푸마(수리온의 베이스 설계 모델)의 사고조사위원회가 기어박스 재설계를 에어버스에 권고했다며, 수리온 기어박스 설계도 같은 권고 대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방위사업청 한국형 헬기 사업단장 유육상은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는 시정이 안 된 상태”라고 인정했다(제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
- 올해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도 2016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동일한 기종(슈퍼 푸마 EC-225)으로 확인됐다. 이 헬기의 기어박스는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재설계를 권고한 것으로 수리온과 마린온의 기어박스와 동일한 대상이다.
- 정종섭 의원은 기어박스 설계의 오류 문제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은 “메인 기어박스를 완제품 형태로 들여와서 조립을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져오려면 그것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와 그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 라며 기어박스 설계 오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사례는 기어박스는 유럽제, 메인로터는 국산, 엔진은 미국제 등으로 여러 국가의 기술이 적용된 수리온이 구조적으

로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반면 핵심부품의 결함 여부를 우리 기술로 판정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언제 또다시 기체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그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도,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 수리온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개발된 데 비하여 상륙기동헬기 마린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체계개발이 착수돼 2015년 1월 19일 첫 비행에 나서는 등 개발에 걸린 시간이 채 3년도 되지 않는다. 이미 만들어진 제품에 기반 한 모델이라고 해도 헬기를 개조하는 데 들인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헬기로 평가받는 아파치 헬기를 보면 초도비행은 1975년에 이뤄졌지만 약 10년 이상의 시험기간을 거쳐 1986년에야 도입됐다.”(비즈니스포스트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사고는 무리한 개발일정 때문인가’ 2018. 7. 18). 마린온의 경우 짧은 시간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했고 추락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수리온은 심한 기체 진동도 문제였다. 기체 진동이 심해 윈드 실드(앞 유리)가 자주 파손되고, 프레임에 금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번 마린온 사고 기체도 진동이 심해 여러 차례 정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린온 추락사고로 숨진 고 박재우 상병의 유족이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에 보낸 마린온 사고의 심층 조사와 후속 조치 마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에서 마린온의 진동 문제와 관련하여 “매뉴얼에 의하면, IPS(진동 허용 기준치) 0.5 이상에서는 이륙이 불가하고 정비 시행 조치가 돼야 한다고 쓰여 있지만 사고 헬기는 0.55에서 이륙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연합뉴스, 2018. 10. 15).
- 전문가들은 마린온이 지난달 25일 있었던 해병대 독도 상륙훈련에 투입되지 않은 사실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독도 상륙훈련 당시 “해병대는 마린온 대신 육군의 대형 수송헬기인 치누크에 탑승해 독도로 이동했다. 조사위가 밝힌 대로 마린온 부품 결함이 최종 결론이라면, 이미 그 결함을 보완해 훈련에 투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뭔가 다른 결함이 있다는 방증 아니냐”(조선일보, 2019. 9. 7)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마린온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이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수사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요청(2019. 1)했지만, 당시 검찰은 KAI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KAI 사장으로 추락 사고에 책임을 져야 할 현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 철저한 수사 없이는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도 어렵다.

- 한편 포항 동해·청림·제철동 주민들은 ‘해병대 헬기부대 격납고 건설 공사 전면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해 5명이 숨진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기종이 운영되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대구신문, 2019. 8. 20)며 마린온의 안정성을 우려하고 있다.
- 마린온은 추락사고 이후 운행이 전면 중단됐지만, 올해 4월 해병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로터 마스트’ 부품을 교체한 이후 관찰비행을 실시했으며, 점검이 끝난 항공기부터 시험비행과 교육훈련비행을 재개하고 있다. 해병대는 향후 작전비행 가능 시점을 검토해 비행을 전면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성능결함의 원인 규명 없이 비행 재개를 강행하고 마린온을 계속 도입하는 것은 제2, 제3의 사고를 부르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이며 국민혈세 낭비다.

③ 상륙기동헬기 국내양산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기대 효과의 허구성

- 현재 상륙기동헬기 사업은 불필요한 과잉전력에 성능결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인명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명피해로 인한 손실은 그 어떤 경제적 수치로 따질 수 없는 문제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로 “경제적으로 수출 사업화,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이익 상승효과 발생”(방위사업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등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는 희망사항일 뿐이며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 마린온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조, 개발한 것인데 수리온은 성능결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수출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13년부터 수리온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한 건도 성사하지 못했다. 2017년 한 국가와 수리온 수출계약 체결이 눈앞까지 갔으나 방산비리 수사로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비즈니스 포스트, 2018. 9. 18), 2018년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수리온에 직접 탑승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수출이 가시화됐으나 그해 7월 마린온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필리핀 수출은 최종 무산되었다(동아일보, 2018. 12. 12). 수리온과 똑같은 기술적 결함을 안고 있는 마린온이, 수리온이 안고 있는 기술적 결함을 극복하고 수출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수리온의 소방헬기 수주를 위해 2014년 국토부에 “방사청 형식증명(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관련 기관의 증명)도 인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이 민간용인 국토부 인증을 받으려면 설계부터 다시 해야 한다. 안정성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항공안전법을 개정해 수리온도 형식증명에 준하는 ‘제한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시·도 소방본부는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수리온을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다(한국경제, 1조 3000억 원 들여 개발한 '수리온'의 눈물 … 시·도 소방본부 구매 외면, 2019. 8. 21). 방위사업청의 기대효과와 달리 수리온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외수출은 고사하고 국내 판매도 어려운 현실이다.
- 또한 수입 대체를 통한 외화 절감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마린온 헬기의 모체인 “수리온의 핵심장치는 기술이전이 안 돼 전량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뉴시스, 2019. 10. 26) 생산할수록 수입 유발과 외화 낭비가 커지는 것이다. 게다가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 실패로 156억 원의 예산도 낭비됐다(감사원,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차)」 2015. 10). 방위사업청의 해외 의존 탈피와 막대한 해외구매 비용 절감이라는 사업 목적이 허구임이 드러난 사례다.

4. 결론 및 건의 사항

- 상륙기동헬기 사업은 남한 헬기 전력이 북한의 헬기 전력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 아니다. 추락사고 원인과 성능결함 규명 등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상륙기동헬기를 양산하는 것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또한 상륙기동헬기의 사업은 목적 자체가 초공세적 대북 작전을 위한 것으로 남북, 북미 합의에 반한다. 이에 상륙기동헬기 양산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5. 삭감요구액

- 2489억 1600만 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

(116)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2432-308)

1. 개요

(단위 : 백만 원)

소관	사업성격	2019년 예산(A)	2020년 예산안(B)	증감(B-A)	삭감 요구액
방위사업청	계속	670,114	641,948	-28,166	641,948

2. 국방부가 주장하는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 ① 군이 운용중인 현용헬기(UH-1H, 500MD 기본기) 노후화에 따른 대체전력으로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를 확보하는 사업
- ②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되고, 기동성 및 생존성이 향상된 주/야간 작전수행 능력을 보유한 한국형 기동헬기 확보 필요

3. 국방부 주장의 문제점과 삭감 이유

- ① 노후 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 우려되어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주장의 허구성

- 남한 헬기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2018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680여 대(육·해·공 보유)를 보유해, 불과 290여 대를 보유한 북한에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국방부가 노후화되어 대체가 필요하다고 보는 UH-1H 및 500MD 헬리콥터는 모두 230대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남한이 보유한 헬리콥터는 450대(육군만 342대)로 북한보다 많으며,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헬기 전력

의 남북 격차는 한층 커진다. 남한이 보유한 UH-60, CH-47, 수리온 등 189대의 중·대형 다목적(기동, 수송, 탐색·구조) 헬기는 북한이 보유한 67대의 Mi 4/8/17/26 등의 다목적 헬기에 비해 수송 능력과 항속거리에서 월등하게 앞서 있다는 점에서도 국방부의 전력공백 주장은 근거 없다.

- 더구나 남한은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대형 공격용 헬기까지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의 노후헬기 도태에 따른 전력공백 우려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남북 헬기전력 비교>

구분	북한		한국(육군)	
	기종	대수	기종	대수
공격			AH-1F 코브라 AH-65E 아파치	60 36
다목적	500 D/E	80	500D, MD-500(대전차 공격)	130 45
기동 수송 기타	대형	Mi-26 4	CH-47D 시누크 MH-47E 시누크	31 6
	중형	Mi-4, Mi-8 / Mi-17 48 15	KUH-1 수리온 UH-60 블랙호크	65 87
	소형	Mi-2 139	Bell UH-1H Bo-105	100 12
합계		286		572

(출처 : 『2019년 밀리터리 밸런스』)

<북한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평가 보고서>

구분	북한		한국	
	Mi-2	Mi-4	UH-60	CH-47
수송능력	800kg/8명	1,740kg/11명	3,630kg/11명	12,000kg/40명
항속거리	170km	250km	600km	1,207km

(『한국국방안보포럼』, 2010. 10)

- 일반적으로 헬기나 전투기 등 항공기의 노후화는 사용 연한이 아닌 운용시간으로 결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헬기의 기준수명과 운용수명을 넘기더라도 실제 운용을 적절히 조절해 헬기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도태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전력 공백 문제도 크지 않다.”(‘KMH 개발 불구 노후 헬기 문제 심각’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4. 1.14)고 밝힌 바 있다.
- 국방부가 도태 대상으로 제기하는 500MD는 운용시간이 “2만 시간 중 평균 6천 시간으로 향후 2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고 국방부 스스로 밝히고 있다. (국방뉴스 2018. 11. 1, 윤현수 기자의 방위산업 보고서 : 500MD 헬기, <https://youtu.be/KYhVyHXJ9vk>)
- UH-1H 제조사 벨(BELL)사도 UH-1H 헬기 기체 수명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무제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육군 항공기 정비단 민영화 타당성 검토 및 추진 방향」, 항공우주정책연구원, 2012. 1. 10). “UH-1H 헬기는 생산량이 많아 다른 노후 기종과 달리 부품 확보에 큰 애로가 없”(서울경제, 2018. 7. 12)다는 점도 국방부의 UH-1H 도태 결정과 수리온 개발양산에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㉔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는 헬기의 작전운용에 적합하지 않다.

- 기본적으로 헬기는 공격용 헬기든 다목적/지원 헬기든 자체 방호력이 취약해 지대공 공격에 쉽게 노출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산악지형이 80%에 달하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막강한 지대공 요격 능력을 고려하면 남한 헬기의 생존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2001년, 미국 보잉사가 한반도에서 공격헬기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워게임(war game)에서 아파치 헬기는 100% 격추당했다(아시아투데이, 2011. 4. 15).

㉕ 기동헬기 양산은 대북 공세적 입체기동작전과 이를 위한 ‘신속대응사단 창설’에 대비하는 것으로 평화정세 진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서 육군을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하겠다고면서 “군단별로 1~2개 기갑여단과 공격 및 기동항공 지원이 가능한 항공단 등을 편성해 전투수행능력을 대폭 향상하고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전후방 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신속대응사단을 창설”하겠다고는 입장

이다(국방일보, 2019. 9. 4).

- 신속대응사단은 “공중기동 능력을 갖추고 원거리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뉴시스, 2019. 10. 11)하며, “항공기로 최단시간에 적진 중심 지역 깊숙이 침투해 요충지 점령과 핵심 부대 격멸 등 전략·전술작전을 수행한다. 개전 초기 적 심장부에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침투시켜 치명타를 가해 조기에 전쟁을 종결짓는 역할”(이데일리, 2019. 4. 16)이라고 한다. 또한 “(수리온 양산과 관련해서) 2020년대 초반 4차 양산 이후 추가로 130여대를 생산해 새로 창설될 신속대응사단에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서울경제, 2019. 6. 4)고 한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군은 “대화 무드 속에 북한을 자극할 우려 등 때문에 폐기됐다고 봐도 된다”(조선일보, 2018. 7. 28)는 보도에서 보듯이 정치적, 전략적 차원에서는 ‘공세적 신작전개념’을 폐기해놓고도 ‘신속대응사단’ 창설과 기동헬기 도입 등 작전적 차원에서는 ‘공세적 신작전개념’ 수행을 위한 부대구조와 전력구조를 갖춰 가고 있다.
- “미국은 한국군 단독 공수작전은 초기 피해율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중앙일보, 2018. 8. 26). 이는 공군에 의한 북한 방공망 제압(SEAD)과 제공권 장악 없이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할 경우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군에 의해 북한 방공망을 제압하고 제공권을 장악한 뒤에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한다면 이때는 이미 신속대응이라는 군사적 효용성이 사라진 뒤다. 따라서 개전 초기에 ‘신속대응사단’을 투입하는 것은 아군의 생명을 볼모로 잡는 무모하고 맹목적인 작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공군이 ‘근접항공지원(CAS)’ 작전을 전개할 경우 (공격)헬기에 의한 ‘근접항공지원’ 작전은 더 높은 고도에서 기동하는 공군 전투기의 ‘근접항공지원’ 작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낮은 고도에서 작전하는 (공격)헬기가 아군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량의 (공격)헬기 도입이 전체로 군의 전투수행능력을 높인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도 수리온 헬기의 무분별한 도입에 나서고 있는 육군의 욕심은 한참 지나치다.
- 한편 초공세적 작전개념을 수행하는 부대를 창설하고, 이 공세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수리온 헬기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평양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반한다.

④ 추락사고와 성능 결함 등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

- 수리온의 성능 결함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감사원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3차 양산이 진행되는 지금까지도 성능 결함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수리온 운용·유지상 주요 문제점>

문제점	내용	
	발생 횟수	원인 및 진행 경과
방빙 장치 관련 엔진 결함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빙 장치 고열로 인한 공기흡입 유도깃 레버가 고착 - 엔진 교체(2EA), 4호기 추락으로 대파
중앙 동체 프레임 크랙 발생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동 흡수기 장착을 위해 보강한 더블러 끝단 장착부에서 응력 집중과 반복된 하중으로 하부 프레임에 균열 발생 - 비행 안정성 및 원인 검토 후 추가 후속조치 예정
윈드 실드 파손	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착륙 또는 상공 비행 시 윈드 실드 파손
주회전 날개와 전선절단기 충돌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주 이륙 도중에 주회전 날개와 전방 동체 상부에 부착된 전선절단기 충돌 사고 발생
기체 내부 빗물 유입	모든 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체 결함 불량 또는 외부 환경 노출에 따른 실런트 마모 등 추정 - 생산 단계 실링 작업 보완 및 검사 강화 추진 중
유압변환기 작동 불량 및 타이어 파손	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업체(이탈리아의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의 유압변환기 조립 공정 불량으로 추정 - 조립 검사 공정 강화, 수락시험절차 강화 등
착륙 보조장치 조기 마모	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륙 보조장치 지면 마찰로 조기 마모 발생 - 마모방지패드 장착 예정
매인 컴퓨터 부팅 실패	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내부 펌웨어(Firmware) 오류 - 부팅 시 내부 타이밍이 최소 100ms 필요하나 1ms로 설정됨
화물 인양 고리 작동 시 기체 간섭	27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인양 고리 사용 시 교범에 명시된 운용범위(30°)를 초과하여 기체 간섭 발생
충돌 방지등 작동 불량	2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 방지등 미점등 및 간헐적 미점등, 충돌 방지등 점멸 불가능 - 전원공급기 회로카드 재설계 필요
연료량 표시장치 에러코드 시현	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EMI/EMC 시험 시 신호처리장치(SCU) 및 연료량 측정막대 간 알루미늄 호일을 적용하여 부적합한 EMI/EMC 시험 실시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 보고서』, 감사원, 2016. 10)

- 게다가 방위사업청은 수리온의 결함을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수리온의 전력화를 강행해 왔다. 감사원은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비행 안전성 등 감사 결과」(감사원 보도자료, 2017. 7. 16)에서 수리온 개발과 전력화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주요 부분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동체 상부에 설치된 ‘전선절단기’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규격서 및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처리됨. 2014년 수리온 16호기가 활주이륙 도중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전선절단기’ 충돌로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전선절단기’ 설계 변경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활주이륙 시 성능을 제한하는 내용(사용 출력을 60%로 제한)으로 ‘사용자 교범’만 수정하고 종결 처리됨. △2015년 1월과 2월, 수리온 12호기와 2호기가 비상착륙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2015년 12월 4호기 추락 사고를 초래. △2016년 3월, 수리온의 체계결빙 성능시험 결과 101개 항목 중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하여 체계결빙 성능이 ‘국방규격’에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리온을 계속 전력화함. △미국 연방항공청 감항인증기준인 ‘FAR 29(회전익 항공기에 대한 기술 기준)’ 등 국제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리온 감항인증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비행안전성이 저하되고 민수용 전환에도 불리하게 됨 등이다.
- 그러나 이후 방위사업청과 육군은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조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18년 김도읍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리온 관련 감사 결과 이행관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7월, 감사원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등에 수리온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27건에 대해 처분(조치)을 요구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1년이 지난 2018년 7월 시점까지도 27건 중 9건(33%)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항목은 △한국형 기동헬기의 활주이륙성능을 유지하고, 메인 로터 블레이드와 동체 상부 전선절단기 충돌로 인한 엔진 정지 현상방지 대책 마련 △결빙환경에서의 운용능력과 관련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방안 △수리온이 결빙환경에서 운용능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안전관리대책 △엔진형식 인증 획득 지원방안 △양산단계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방안 등이다(중앙일보, 2018. 7. 20).
- 2018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는 계속 발생하는 수리온 결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무마해 온 방위사업청의 안일함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마린온 추락 사고에 대해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헬기 엔진에서 동력을 받아 프로펠러를 돌게 하는 중심축인 '로터 마스트' 결함 때문이라고 최종 발표했다(2018. 12. 21).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균열 때문에 로터 마스트가 끊어지며 메인로터(프로펠러)가 날아가고 헬기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로터 마스트 소재 제작사인 오베르 듀발사는 동일조건에서 생산된 로터 마스트 4개를 자체 보완 조치를 취하고 납품했지만 결국 이 중 3개가 균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 중 1개가 사고 마린온에 장착되고 나머지 2대는 수리온에 장착됐다는 것이다. 2019년 봄 군은 모든 수리온 로터 마스트에 대한 정밀검사와 시험비행을 마쳤으며 정상 운항을 재개하였다. 그러나 수리온 부품 결함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 마린온 사고 직후 국회에서 하태경 의원 등은 수리온 기어박스의 설계 오류 가능성을 제기했다. 노르웨이 헬기 슈퍼 푸마(수리온의 베이스 설계 모델)의 프로펠러 탈각으로 인한 추락 사고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유럽항공에 기어박스에 대해 재설계 권고를 했으며, 수리온 기어박스 설계도 같은 권고 대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한국형 헬기 사업단장 유옥상은 “현재는 시정이 안 된 상태”라고 인정했다(제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
- 10월 31일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헬기도 2016년 노르웨이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동일한 기종(슈퍼 푸마 EC-225)으로 확인됐다. 이 헬기의 기어박스는 노르웨이 사고조사위원회가 재설계를 권고한 것으로 수리온과 마린온의 기어박스와 동일한 대상이다.
- 정종섭 의원은 수리온 기어박스 설계 오류 문제를 우리가 판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국방기술품질원장 이창희는 “이것은 메인 기어박스를 완제품 형태로 들여와서 조립을 하는 형상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져오려면 그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와 그런 것들을 줘야 되기 때문에 … ”(제20대 국방위 362회 3차 회의록, 2018. 7. 25)라며 기어박스 설계 오류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사례는 기어박스는 유럽제, 메인 로터는 국산, 엔진은 미국제 등으로 여러 국가의 기술이 적용된 수리온이 구조적으로 결함 발생 가능성이 큰 반면, 핵심 부품들의 결함 여부를 우리 기술자들이 판정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을 뜻한다. 언제 또다시 기체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며,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도, 책임소재를 묻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 안정성 문제는 조종사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최우선적 고려 사항이어야 한다. 한국형 기동헬기의 성능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를 양산, 도입하는 것은 또 다

른 사고를 불러와 군인들의 생명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⑤ 뒤죽박죽 사업 추진으로 혈세낭비만 초래

- 감사원의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차)」(2015. 10), 「군수장비 획득 및 운용관련 비리 기동점검」(2016. 10), 「군용기 인증 및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실태」(2017. 7) 보고서는 수리온 개발과 전력화 과정의 혈세낭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계획 실패로 156억 원의 예산이 낭비 됨.
- 미국과의 기술이전 협의도 없이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를 추진하다 미국 정부의 기술이전 승인을 거부당해 18억 여 원의 소프트웨어 설계비 낭비.
- 체계결빙 규격 미달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개선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 없이 전력화를 재개함으로써 한국항공에 수리온 전력화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약 4,571억 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됨. 또한 미전력화 된 물량의 개선비용 약 207억 원을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수리온 2대(12호기, 2호기)가 훈련 비행 중 엔진 결함에 의한 엔진 정지로 비상 착륙한 사고가 난 후 엔진 교체 비용 24억 원이 낭비됨.
- 수리온 4호기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해 194억 원의 손실 비용이 발생함.
- 2015년 12월 발생한 수리온 4호기 추락 사고에 대해 정부가 엔진 결함 때문이라며 수리온 제조사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 에어로우 스페이스(구 삼성테크윈)에 17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1심에서 패소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9. 9. 10).
- KAI는 2013년부터 수리온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해외 국가들과 협상했으나 아직 성사된 곳이 없다. 2018년에는 필리핀 대통령이 수리온에 직접 탑승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지난해 7월 마린온 추락 사고에 따른 안전성 문제로 필리핀 수출은 무산되었다(동아일보, 2018. 12. 12).

4. 결론 및 건의사항

- 한국형 기동헬기 사업은 남한 헬기 전력이 북한 헬기 전력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시급하고 긴요한 사업이 아니다.

- 국회는 수리온의 전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제기된 성능 결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한다.

5. 삭감요구액

- 2020년 한국형 기동헬기 예산 6419억 4800만 원 전액 삭감해야 한다.